第 43·44·45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 43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94. 11. 25.~11. 2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994 • 11 • 통권 제40호

Ⅰ.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Ⅱ.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7

Ⅲ.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33

Ⅳ. 부 록

1. 의사일정(안)..... 93

2.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95

3.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03

4.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121

5.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131

6. 영동도서관이전계획안.....141

7.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51

8.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191

9.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199

V. 별 책 부 록

1.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책1

第43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第 1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4년 11월 25일 (금요일) 14시 00분

議事日程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6.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7. 영동도서관이전계획안
8.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94.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10. '9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5.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6.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제안설명
7.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제안설명
8. 영동도서관이전계획안 제안설명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1. '9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2.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3.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00분 개식)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4시 01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14시 02분)

● 의사과장 강인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 11월 17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에 관하여 같은날 교육위원회 공고94-11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 및 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 관한 고시개정안 3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8일 이송하여 12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95년도 충청북도특별회계 예산은 11월 9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제 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상정돼 있으며 11월 14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충청북도에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처리하실 안건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11월 17일 제출된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 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23일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제천도서관, 보은도서관, 영동도서관 이전계획안 및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그리고 이상일위원외 3인으로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04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시 제출된 의안의 처리와 추가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도서관 이전에 관한 안건들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11월 26일은 소위원회활동을 위하여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 05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상일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이상일

이상일교육위원입니다.

본인외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수는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때인 11월 28일과 29일 각 11시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청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일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7.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8. 영동도서관이전계획안

(14시 08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 및 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도서관이전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증등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증등교육국장 박춘용

증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 실습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 산업기계의 공동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향상을 도모하고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충북공업고등학교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교육부 교육기관설치 승인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덧붙임에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예산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이 7억 3,418만 5천원이고 자체예산과 운영비를 '95년 예산에 1,3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증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둘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 충북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된 공동실습소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넘겨서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란에 충북공업고등학교가 주가되고 거기 주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666번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충청북도 중앙도서관의 토지병합으로 번지를 변경하였으며 증평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증평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시에 소재한 도서관 및 야영장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중앙도서관의 번지중 613번지의 8을 38번지의 6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도서관을 신설하였으며 충주도서관의 위치중 중원군을 충주시로 하고 부칙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은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별표1의 위치난중 중원군을 충주시로, 제천군을 제천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 그리고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덧붙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휴관일,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 단 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별표1의 위치난중 중원군을 충주시로 개정하고 제천군을 제천시로 한다.

4쪽입니다. 별표1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명칭및 위치, 도서관명 난에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위치난의 충북 청주시 사직2동 38-6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중원도서관 충북 충주시 주덕면 신중리 130-3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산도서관 하단에 밑에 증평도서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44번지의 2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신구 대조표 1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은 현행대로입니다.

중원학생야영장에 중원군을 충주시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천학생야영장위치난에 제천을 제천시로 개정하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증평도서관 설치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도서관을 설립하는 사유는 괴산군에는 읍지역이 괴산읍과 증평읍이 있으며, 괴산읍에는 도서관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증평읍은 괴산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8,327명의 학생과 31,939명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명칭은 증평도서관입이다.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44-2에 설치를 합니다. 증평국민학교 구내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부지가 992평방미터이고 건물의 면적은 총 1038.51평방미터입니다. 건물구조는 2층으로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설현황은 열람실이 4실, 서고가 1실, 시청각실이 1실,관리실이 2실이 되고 기타 부속이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수는 75,00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도서관의 착공일은 '94년 7월 6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4년 12월 31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석은 200석 규모입니다. 개관예정일은 '95년 1월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원 확보계획은 현재 계산한 것이 5명이

소요되는데 자체정원을 조정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확보계획을 보면은 부지에 충청북도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증평국민학교에 건축을 하게되는 것이고 건축비로는 798,421천원이 되는데 국비가 220,000천원이고 도비가 578,421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95년도 당초 예산에 94,871천원을 계상하였고, 설립방법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유 토지에 증평출장소가 건물을 신축을 한 후에 충청북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지적도나 건물평면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 별첨3

(끝에 실음)

다음은 제천도서관 이전계획안과 보은도서관 이전계획안, 영동도서관 이전계획안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특기한 사항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도서관 이전계획안, 이전할 이유는 둥그라미 두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제천도서관은 제천시 소유 제천문화회관의 3,4층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회관의 각종 행사시 소음이 심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현관 사용이 통제되는 등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제천도서관을 '95년 3월 1일 폐교되는 청전국민학교 부지에 이전 신축하여 제천지역학생 및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제천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시기는 '95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위치는 충북 제천시 청전동 470번지의 현 청전국민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존도서관 활용계획은 제천시에서 '95년도 예산으로 매입토록 협의가 이루어져 제천시에서 매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 도서관 시설현황은 420석 규모입니다.

이전 도서관 시설계획은 부지가 2,600평방미터이고 건물 총면적은 2,561.43평방미터가 되며 좌석규모는 537석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기존 정원 10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원이 소요되는데 '94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6억원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전후 기대효과,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

다.

첨부된 도서관의 위치 약도등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 별첨4
(끝에 실음)

다음 보은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도서관은 역시 동그라미 두번째입니다.

현재의 보은도서관은 보은읍 외곽지역에 위치한 구 보은교육청 건물로써 건물이 낡고 구조가 부적합함은 물론, 인근 도로에 조명시설도 없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늘어나는 이용 희망자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서관으로써의 기능 및 역할수행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으므로 이전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전시기는 '95년 10월로 예정을 합니다.

이전위치는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4번지, 현재 삼산국민학교 부지내에 건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도서관은 역시 매각을 해서 신축하는 경비에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180석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전할 도서관시설계획은 부지면적이 1,650평방미터이고 건물 총 면적이 3층에 지하를 포함해서 1,650평방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약 500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원 운용계획은 현재 4명이 있는데 교육부에 정원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대로 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부득이하며는 자체 정원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소요재원 확보계획은 총 소요예산이 10억이 필요한데 '94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추가경정 때에 3억 8천만원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전후의 기대효과, 10번에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 별첨5
(끝에 실음)

다음 영동도서관 이전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영동도서관 역시 구 교육청 청사 일부로 규모가 작고 건물의 노후가 심해서 구조가 부적당하고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늘어나는 이용 희망자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서관으로써의 기능 및 역할수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시기는 '95년 11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위치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번지 현재 영동농공고등학교의 실습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서관은 활용계획은 매각 처분해서 이전신축비 일부에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현황은 122석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전도서관 시설현황은 부지 5,200평방미터에 건물은 1,650평방미터, 지하를 포함해서 3층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을 넷을 포함해서 좌석수는 500석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운용계획은 현재 3명이 있습니다만 10명이 소요되는데 역시 교육부에 정원요청을 하고 부득이하며는 자체자원으로 조정을 해서 운용하겠습니다.

소요재원 확보계획은 총 소요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 중에 '95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계상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전후 기대효과나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동도서관이전계획안 : 별첨6

(끝에 실음)

● 의장 김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으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직접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이전계획안도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11. '9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30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학교신설, 학과개편, 학교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폐지, 택지개발지구의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도·농복합형태의 시·군통합을 사유로 교명 및 주소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5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제안근거로는 교육법 제82조 및 동법 제85조와 '95년 국·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의 별표1,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도·농복합형태의 시군통합으로 인한 위치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청풍고등학교는 '95학년도 재학생의 졸업학년도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하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별표1 고등학교,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별표3 중학교, 1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의 별표4 국민학교의 명칭과 위치설명은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페이지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5년 3월 1일 개교 예정학교는 신설학교 4개교로써 청주시에 충북공업고등학교, 용암중학교, 수곡국민학교이며 제천시의 용두국민학교가 신설됩니다.

둘째,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변경 학교는 제원고등학교를 제천공업고등학교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셋째, 학교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학교는 교동국민학교로 청주시 수동 180번지에서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지번은 추후 부여될 예정입니다.

넷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는 제천의 대전국민학교를 비롯 10개교가 되며 본교 폐지학교는 청풍고등학교와 양화국민학교, 선림국민학교, 부상국민학교 등 4개교이며 분교장이 폐지되는 학교는 충주시의 성남국민학교 둥신분교장을 비롯 28개 분교장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다섯째, 제천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폐지되는 학교는 청전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21학급에 850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95년 3월 1일 개교되는 용두국민학교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택지개발지구에서 지번이 부여되어 주소가 변경되는 학교는 충주의 연수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정부의 시·군통합 방침에 따라 본도에서도 중원군이 충주시로 제천군이 제천시로 통합됨에 따라 중원군 제천군내에 초·중·고등학교의 주소를 충주시, 제천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9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의 신·구대비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이복식수업 29개교, 삼복식수업 2개교가 해소되면 예산은 약 30억 9천여만원의 절감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또한 통폐합되는 31개교 910명의 학생들의 통학 편리를 위해서 30개교는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1개교는 기존의 통학버스를 이용토록 해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조례개정후에 '95학년도 공립학교 현황으로 국민학교는 본교가 292개교에서 12개 학교가 감소된 280개교이며 분교장은 66에서 18이 감소된 48개교입니다.

중학교는 91개교에서 1개교가 증가된 92개교가 되며 고등학교는 금년과 같이 50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7

(끝에 실음)

다음은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제천 의림여자중학교시설 결정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 160평방미터는 1987년 8월 4일 제천시 하수동 도시계획 정비시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소유자의 매수 요구에 따라 매입하여 교육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 별첨8

(끝에 실음)

다음은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회기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1995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하였던 모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와 일부 감액 재산매각수입등 자체수입과 기타재원의 증감요인 발생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기정예산 5,101억 3,600만원보다 52억 8,400만원이 감액된 5,048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특별교부금 14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4,500만원, 청원도서관운영비 전입금 2,000만원, 예성여고 도로편입 보상금외 29건의 재산수입 14억 3,400만원, 충주농고 생산물매각대 4,100만원, 산업체특별학급운영비 부담금 인상분 4,000만원 등 3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부 사업조정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원, 진천삼수국 토지 및 건물매각대 82억 5,700만원,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응시수수료 1,200만원 등 83억 1,4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2억 8,400만원이 감액된 5,048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청주 맹학교 교사 증·개축비 4억 5,000만원, 제천중 및 음성 수봉국 강당 건축비 10억원 등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고 2+1체제 운영지원비 3,500만원, 후보선수육성지정학교 지원비 1,000만원 등 4,500만원을 증액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경비 3,000만원, 국민학교아동중식지원비 500만원 등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입금 사업으로 청원도서관 장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제천, 보은도서관 이전신축비 9억 2,800만원, 의림여중 사유지매입비 4,900만원,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보전비 100만원, 소규모학교 운반급식시설비 7,000만원등 4개 사업에 10억 4,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사업계획의 조정으로 진천 삼수국 이전비 82억 2,900만원,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경비 1,000만원, 일반직공무원 연수경비 6,100만원, 예산업무전산화에 따른 일반수용비 1,300만원 등 4개 사업에 83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설비중 공기가 부족되는 제천중 강당신축외 17건의 소요사업비 84억 7,500만원을 명

시이월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참조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 별첨9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충북의 교육발전과 건전한 교육재정운용을 위하여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1994년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교육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도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2.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로 사전에 합의한 바대로 이상일, 이재희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위원님등 다섯 분을 위원으로 하여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45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재희, 김광수 두분 위원님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모두 "좋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재희, 김광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 산회후 회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제43회-제1차]

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상찬,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별첨2

○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별첨3

○ 제천도서관 이전계획안 : 별첨4

○ 보은도서관 이전계획안 : 별첨5

○ 영동도서관 이전계획안 : 별첨6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별첨7

○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 별첨8

○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 별첨9

※ 부 록

○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책1

第43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第 2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4년 11월 28일 (월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1. 경과보고

(11시 00분)

● 의사과장 강인형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11월 25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금일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산회후에는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시 01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발언시간 20분 범위내에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위원님들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되 지역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일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이상일

이상일교육위원입니다.

교육행정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난번 언론기관에 보도된 바 있는 청주중학교 야구선수의 진학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듣기로는 청주중학교 3학년 야구선수 3명이 세광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했으나 교육청에서는 청주기계공고로 진학하도록 강요하여 문제가 발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은 학교 선택권을 주장하며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진로문제는 학부모와 협의하여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청주중학교 야구선수 진학에 있어서는 학부모와 선수인 학생들의 뜻에 반하는 학교배정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서 이와같이 학교배정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택지개발지 학생수용문제에 관해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주시 남쪽에 용암지구에는 5만여명을 수용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지난 10월부터 일부 아파트는 입주자가 이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주택과에 의하면 이번에 2천여세대가 입주할 것이라고 하는 바, 그곳 문제는 이곳의 학생수용대책입니다.

예정대로 '95년 3월 1일 교동국민학교를 이전개교한다해도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이곳으로 이주해온 학생들을 전학할만한 학교가 마땅치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동국민학교 이전만으로 학생수용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여기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남동 수곡국민학교 역시 '95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은데 아파트 준공시기와 관련해서 학생수용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곡국민학교가 창신국민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구문제로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지난 25일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에서 대충 어떤쪽으로 얘기가 결

말이 됐는지 그 결과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사립학교 학생선발권에 대하여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서울에서 교육개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방안 공청회에서 사립학교를 자립형,지원형, 관리형으로 구분해서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 선발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 본도에는 자립형 사립학교로 육성시킬 학교가 있는지 또한 교육개혁위원회의 이와같은 결정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학생선발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하는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일 좌석으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이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이재희**

이재희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세가지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5학년도 3월달에 단행되는 교장 인사이동에 문제점은 없을런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 인사는 만사다" 이래서 상당히 그 인사이동이 어려움이 있고 또 본인들의 희망이라든지 또는 되도록 생활근거지에 배치한다는 이런 원칙도 있지만 우선 학교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사가 있는만큼 내년도 인사이동에는 학교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인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북부지역 제천, 단양, 또는 남부지역 영동 이런 산간 오지에는 늘 교장선생님들이 신임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아주 약빠른 사람은 1년, 좀 못한 사람은 1년 반이면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교장임기제로 8년동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주시내 교장 그 근무년수를 제한해서라도 벽지 오지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장기간 우대받을수 있는 이러한걸 좀 강구해 주시기를 특히 부탁드리고 특히 제천시내지역 한 학교에 30크라스가 넘고 1,500명이 넘는 이런 큰 학교에 신임교장이 발령되지 않도록 특히 지역민들이 불평이 아주 높으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언제가 제가 제천상고부지를 기증한 이양남 할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같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양남 할머니는 제천상고부지 5천평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약 40억에 상당하는 그러한 사재를 몽땅 기증을 했고 또 제천

어느 인사는 10억 상당을 제천시에 기증을 했는데 제천시에서는 의림문화재행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3년동안 감사장, 표창장, 또는 훈장 이런 것을 수여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어떤 그 독지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이 과연 교육계에 기꺼이 희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우리 교육에 많은 헌신을 한 분들을 1년에 간담회형식이라도 한번씩 가져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또 교육행사의 홍보도 해주시는 것이 어떨런지, 지난번 이양남 할머니가 별세해서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뤘습니다마는 교육감님조사 하나가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거는 조금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예산잔액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는 아주 적은 액수 불과 책 몇 백권도 좀 이것이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잔액은 어떤 경우에는 수억원씩 추경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상당액수 많은 금액은 추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1억이상 그 예산이 예산잔액 사용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례를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예산잔액을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그 방법도 아울러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 좌석으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에 이재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복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복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김응복**

김응복 교육위원입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 자문위원회가 설치돼서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몇가지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이 목적에 보다 접근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혼이 들어야만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도 혼이 들어야만 국제사회에서 행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을 형성한다는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 그리고 행정 맡은 집행부 모두가 생각하면은 참말로 전신의 혼을 쏟아 넣어서 교육을 교육하고 집행해야만 이 교육 총체적인 위기시대를 구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 시점에서 왜 학교운영 자문위원회라는 걸 설치하도록 됐느냐 하는 면입니다.

그전에도 사친회라는 게 있었고 육성회라는

게 있고 뭐 별개 다 있었어요.

사실은 생각하면 PK같은 제도야 그야말로 참말로 좋은 제도가 그대로 조령모계식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데 그 배경을 생각한다면 은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시대다 이런 얘깁니다.

특히 도덕성, 인간성의 타락을 개탄하고 있는 시점이요, 또 한가지는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학교경영을 모색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더욱이 숨은 목적의 하나는 종전의 학부형들은 학교에 학교운영에 일방적인 협조, 비판적인 참여가 아니라 감시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교 편의에 맞도록 협조해왔는데 요번 학교운영 자치위원회 설치의 숨은 목적의 하나는 확실히 학부형들이 감시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관여하고 동참해야겠다 하는 점이 강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각급학교에 학교운영 자문위원회라는 설치목적 그 뜻이 대단히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문위원 선정은 종전에 자문위원회라는 구실의 각급 기관의 자문위원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구실 뭐 했습니까?

내가 교장이라도 나 편리한 대로 내가 거식한 대로 그냥 무해무득한 인사위촉하면 그만이지 하는 식밖에 안됐어요.

따라서 학부형 대표로써의 학교운영에 접근할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자문위원을 학부형 총회에서 선출할 용의는 없는지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하나 묻고싶고요.

가령 육성회라든가 자문회라든가 학교운영 체육회진흥회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상치되는 거가 많아요.

야 육성회장 따로있고, 자문회장 따로있고, 무슨 체육진흥회장 따로 있고, 야 자문위원회 위원장 따로있고, 사실은 학교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단체라면 이런 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법하다 이거여 응, 자문위원 일정수가 육성회도 맡고, 자모회도 맡고, 뭐 회원들 이렇게 해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일원화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제 각학교 단위별만 똑 떨어져서 할 게 아니라 각급학교에 자문 학교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차출된 시·군단위의 연합회가 지금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근데 시·군단위는 현재 행정이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장 위촉하에, 그것은 아무런 유목적적인 의식화에서 한다기보다는 뿌리가 없는겨, 뿌리가 그러니 시·군단위 행정자문위원회가 됐든 또 혹은 시·군단위 각급학교 학교운영 자문위원회가 됐든 시·군단위로 말하자면 현재 형성된 행정자문위원회에 대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사항으로,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퍽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해요.

학력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에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학부형의 감시기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 교육감에 교육감님에 항상 강조하는 동시에 학부형들이 교육권자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육자로써의 부도덕한 점, 학교운영에 참말로 비생산적인 점, 혹은 학력제고를 부르짖으면서도 직접 일선의 교단에서는 선생님들의 어떠한 나태성, 이런 것을 감안하실 때에 집행부에서는 어떻에 이 기구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셨는지, 또 세웠다면은 어떠한 내용인지, 안세우셨다면 앞으로 어떠한 개혁을 보다 침투시켜서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은 학부형 재교육,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인쇄물 25만부 뭐 이렇게해서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어느 의미에서는 유목적적인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라기 보다는 지금 실속있고, 말하자면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각급학교에 지금에 임원 학교운영 자문위원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집행부의 의도를 이 학부형들이 알 수 있고 어느 의미에선 제고하는 뜻에서 하도이러한 중점적인 교육을 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형적인 면에서는 비교적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교육은 무형적인 무한대적인 뜬구름 잡는 식이라고 해서 그 효과가 기십년 후에 나타난다 이래만 자꾸 핑계대지 교육개혁에 상부지시보다 내일로 생각하고, 혼을 집어넣어서 교육하고, 뭔가 했다면은 교육개혁에 또 교육효과에 기대하는 공이 있을 건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교육자가 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복위원 좌석으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 김응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해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박병해**

박병해 올시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몇가지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첫째번에 '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115쪽을 참고한다고 하며는, 학교기본운영비 및 교육과정운영비가 57대 43으로 배분하였으며 금년부터 과학교구비를 별도 지원하지 않으므로 교급당경비 중에서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각급학교에서 이 비율은 꼭 지켜야 되는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확인도 할 것인가, 또 '95년도에 교육과정운영비

43%중에서 과학교구를 구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래도 57대 43의 비율이 타당한가, 그 다음에 교육정상화가 되려면 도서확보나 교재·교구를 만들고 구입해서 최소한 기준령이라도 준수해야 될텐데 요전번 교장선생님들의 교재·교구구입 현황을 볼때 전도가 걱정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섭이나 교재·교구비를 해마다 별도 계획적인 수립을 해서 교재·교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결단의 방법을 촉구합니다.

그 대책을 심도있게 답변 바랍니다.

둘째번에 1995년도 교육시책연설문중에서 7쪽 14행, 8쪽 3행을 보면은 "학교단위의 특별재능교육프로그램 개발, 지도와 특별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방과후 특수재능교육을 실시하며 국민학교 별설유치원 운영의 내실과 유아교육자료의 개발보급, 유아교육 교재·교구의 제작, 전시 그리고 유아원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활동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원운영 내실을 위해서는 교재의 개발, 교재·교구의 제작, 보급이 강조되어 있는 바, 중복료의 교재개발 교재·교구의 제작이 성의가 없는 현실을 이대로 둘 것인가 만일. 이런데에도 성의를 베풀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 대책이 있다고하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외의 특수기술과 기능이 있는 인사나 학부모를 학교내로 영입해서 같이 취미활동도 하고 교사들이 지능이 있는 곳으로 학부모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 학부모, 학생, 다같이 한데 어울린 특별활동 소위 학교개방화교육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째번에는 11쪽 8행을 참고하면은 실업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반을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문계고등학교의 직업반에 한해서 '93, '94 요 두학년도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어느 직장에서 실시하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취직한 자, 또 '93, '94년도에 학교나 기타에서 추천을 받고 무시험으로 취직한 자 이 숫자를 알고 있다고 하며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직업반에 교육과정이 그 실적으로 본다고 하며는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는가, 직업반 학생들한테는 실기위주의 지도가 대부분이고 이렇다고 할 때에 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을 거쳐야 어느 곳이고 취직을 한다고 하면은 인문계고등학교를 그냥 공부하고 응시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이것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네째번에는 작금의 국내 청소년

들이 범법이 악랄화 되어가고 있는 범죄행각을 감안할 때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본도에 교외생활지도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 제자를 사랑한다든가 도덕성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한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없도록 구출한다는 뜻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이 있다고 하면은 알고자 합니다.

이상 네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번 질문을 할 때에 질문을 다섯가지를 하면은 답은 두가지밖에 못 듣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첫째질문은 답이 네가집니다.

둘째질문은 답이 세개입니다.

세째질문은 답이 두개입니다.

네째질문은 답이 두개입니다.

이 숫자까지 아주 알려 드리니까 소상하게 빠짐없이 답변해 주십사 부탁을 올립니다.

(박병해위원 좌석으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 박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풍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권혁풍**

권혁풍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한된 시간내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질문에 저는 유형을 세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순수하게 몰라서 사실을 몰라가지고 하는 질문은 답변이 한번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사석에서 얼마든지 물어봐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번째는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의를 하는 건의성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시책이라든가 방법이 좀 시정을 요한다 하는 것으로써 그 시정성 건의 요렇게 세가지로 저는 유형을 하는데, 첫째 몰라서 하는 질문은 참 한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그러나 두번째, 세번째에 대한 질문은 이건 반복이 어쩔수가 없이 됩니다.

즉 건의를 해 봐야 되도 않고 시정도 안되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하고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반복을 하게 되고 하는 가운데, 반복질문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듣다보면 우리가 교육위원이 할 수 있는 정책질문은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정책에 대한 관여는 이것까지 축소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좀더 관대하게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주시고 반복질문이 혹시 있더라도 이건 몇 유형에 속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미리 고려하셔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질문은 먼저 우리 예산을 내놓으시면서 예산안을 내놓으시면서 '95년도 교육감님께서 교육시책연설을 하신 게 있습니다.

10월 20일날, 이거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4학년도를 신뢰받는 교육의 해로다 정해서 여섯가지 주요한 시책을 펴왔다 이렇게 얘길 하시면서 골자를 보니까 첫째가 학교운영을 전환시켰다, 학교운영의 전환.

두번째는 교사상을 확립했다.

세번째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왔다.

네번째는 환경 및 자연교육을 철저히 해왔다.

다섯번째는 도덕심 배양을 위한 교육을 했다.

여섯번째는 쾌적한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여섯가지 주요골자를 가지고 '94년도를 이끌어 오셨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와 관련이 된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 첫째는 제가 교육자치제실시 전후에 교육현장은 어떻게 변했느냐, 교육자치제가 실시된지 벌써 3년이 지나 임기가 끝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자치제를 실시해서 이것이 교육현장에까지 침투가 되어서 3년만에 어떤 커다란 가시적인 효과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한 얘깁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3년여동안에 어떤 변화의 싹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여섯가지 구분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학교장의 자치권이 어느만큼 신장이 되고 명실상부하게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전후비교를 해주시고 또 이제 이것이 아까 김응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회와 관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교사의 참여도 교사로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최고 학부를 나오신 분들로써 모든 의식이 다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만한 의식수준에 도달한 분이라고 봅니다.

그럴때 교사가 누가 시켜서 한다, 타율적인 교육행정을 한다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사정도 되면 누가 시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모든 교육활동을 하고 잘못됐을 때는 결과를 문책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교사의 참여도가 교육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누가 시켜서 교장이 시킨다든가 교육감이 시켜서 한다든가 할 때는 그 효과는 마이너스효과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는 모든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자기가 할 때 교육효과가 100% 날 것이다 하는데 있어서, 현재 교육자치제가 되면서 교사의 참여도가 어느만큼 변했느냐?

세번째는 교육과정운영입니다.

우리가 늘 교육과정운영 말만 나오면 전인교육 찾습니다.

백년하청입니다.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은 항상 교육과정은 뒤로 밀어놓고 입시위주교육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집행부 여러분도 계시다시피 아마 어느만큼 이걸 교정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교육과정운영 늘 정상화 시킨다, 정상화 시킨다, 전인교육 시킨다. 입만 벌리면 그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어느만큼 3년동안 변했느냐, 아 교육과정운영을 제대로 할려면 평가부터가 잘돼야 할텐데 평가방법을 좀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성적만 보지않고 행동발달 사항이라든가 특별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까지도 다 이것을 산입을 해서 그 사람의 그 성적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서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는 특활 및 진로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인교육의 핵심이라고 전 봅니다.

특별활동시간만 있지 그 시간에 다른 주요과목 수업으로 대체하는 게 비일비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라면 눈감고 아웅이고 이렇게 할라면 항상 우리가 떠들어 봐야 헛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의 본질로 한시바삐 돌아설라면 학생들의 소질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소질이 한가지씩 있습니다.

그 소질을 빨리 찾어서 그거를 신장시켜 주는 게 교육인데 말만 나왔다 하면 전인교육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 이게 3년여동안 얼마동안 변했는가, 그 다음에 보충수업실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수업의 본질과 영 거리가 먼 그런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의 희망에 의하지 않고 어떤 그 반 강제성이라든가 혹은 두시간할 거를 3학년이라고 해서 3시간,4시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간의 성적경쟁을 시켜가지고 어느학교가 몇등, 몇등 이거를 비밀로 붙인다고 하면서도 공개된 비밀이 돼가지고 이게 막대한 그런 그 역효과를 일어내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뭔가 개선점이 있었는가 그동안, 마지막으로 주민의 참여도 저도 며칠전에 참 자문위원회에 위촉을 받아서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전혀 인식이 부족합니다.

무관심하고 관심이 있다면 오직 자기아들, 자기딸이 어떻게 좀 점수가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학교 전반에 걸친 관심, 인식이 전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주민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3년동안에 해서 뭔가 3년동안에 변화가 와서 주민들이 내 학교, 내 지역사회의 학교는 내학교다 하는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할 때 바로소 교육자치가 된다고 보는데 그게 3년동안에 얼마나 과연 됐는지,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두번째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그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즉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학사감사까지도 일반직이 감사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말하는 전문성, 전문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학사를 전문직이라고 하고 그외에 일반직이라는 말을 붙여서 전문직, 일반직을 구분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전문직이 할 그 영역에 속하는 학사감사까지도 일반직이 해야 된다. 이거 정말 저희가 여기서 질문을 하면서도 일반직이니, 전문직이니 이걸 구별을 딱해서 올타리를 쳐서 이건 네거, 내거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같은 우리 교육가족으로써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어떻게 하면 교육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가족으로, 다만 기능상 맡은 일이 서로 다르다뿐이지 다같은 교육가족으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떼서 배타적으로 이건 네거니까 이것만 해라, 이건 내거니까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해를 잘해 주셔서 그런 그 교육전체를 위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직, 전문성이 말을 학사감사, 학사할 것같으면 전문성인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전문직이라고 말만 붙여놨지 아주 일반직 아무나 할 수 있는게 학사다. 이게 말을 거꾸로 붙여야 할 지경입니다. 현재, 전문직하고 일반직을 거꾸로 전문직은 일반직으로 하고 일반직은 전문직화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만의 후진적인 교육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서 하여간 전문직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으면 붙여준 대로의 제자리를 찾아 줘야 됩니다.

제자리를 못찾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인지 몰라요.

물론 자기가 찾아먹을 밥그릇을 제대로 찾아 먹는 전문직이 책임이 있는 건지, 혹은 일반직이 과다하게 관여를 하는 건지 어쩔수 없는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설명을 해서 병원에는 의사가 할 일이 있고 원무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근대 원무과에서 할, 원무과 직원들이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거

나 마찬가지다. 비유를 한다면 어디까지나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행위인데 여기에 원무과가 가서 이것은 치료를 잘못했느니 약을 잘못 썼느니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찾아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영역을 지켜가면서 감사를 해줬으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실례를 든다면 감사반이 조직된 답니다.

저 제가 질문하는 건 저 혼자의 머리가 아닙니다.

다 제가 듣고서 하는 얘깁니다.

여기저기 다 전화도 걸어보고 실제 다 보고 듣고 하는 얘긴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반이 있어가지고 감사반장이 인제 감사단원을 여럿 거느리는데 그 밑에는 인제 장학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문직이,

그러면 감사반장이 통제를 하겠죠 그렇게되면은 그 밑에 장학사로 보면은 나이로 치면 50, 60에 가까운 분들 마치 은사가 되는 수도 있고, 또 선배가 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새파란 참 감사반장 밑에서 그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그 감사를 받는 교사들도 거기에 통제를 받고 더구나 정년에 가까운 노인교장들이 그 감사반에 의해서 통제를 받다보며는, 그야말로 굽신거려야 되고 그냥 교권이 자기도 모르게 추락되는 물론, 교권이 어떤 거냐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주장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구체화되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교권은 상당한 손상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일때 이걸 좀더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즉 전문직으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갔다면은 작전을 짜는 게 전문직입니다.

교육을 전쟁으로 비유할 때, 그리고 직접 총을 쏘는 게 교사들입니다.

그럼, 일반직은 뒤에서 이거 보급을 대주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전쟁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해서 어디까지나 뒤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전문직이 앞에서 뛰면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못한 것이 없는가, 혹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뭐를 도와줄까 하는 이러한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볼때 뭔가 우리 현장에는 개선될 점이 뚜렷하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절대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어떤 그 평소에 구안이 있으시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학교시설의 실태입니다.

먼저번 교육감님 답변을 관련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학생수용시설을 위해서 기본적

인 투자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수용시설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떤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약 한 10%정도는 그쪽으로 증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에서 그야말로 수영장도 만들고, 강당도 만들고 하시는 거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는 그야말로 교실도 부족하고 또 특별실이 부족해서 특별활동을 못하고 휴게실, 자료실까지도 부족해서 한교실을 두개, 세쪽으로 나눠서 쓰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러한 기본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론 장기적으로 볼때는 학교가 학생이 줄어들고 해서 자꾸 너무 투자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학교가 현재 학생이 증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생의 기본수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이것을 해 주셔야지 하는 의미에서 교실과, 특별교실과 강당, 체육관을 구분해서 기준수와 보유수, 과부족수와 철거대상,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직원 정원현황실태도 마찬가집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교직원 정원현황 관계는 공립 사립간에 정원이 차별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공·사립의 차별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립에는 상대적인 그런 부담감을 더 느끼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지어서 교원과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교감승진후보자 과목별 차출실태가 문제점입니다.

이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육현장에는 스승벌되는 사람은 평교사고 그 제자벌, 후배벌되는 사람은 교감이 됐는가 교장이 되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위화감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교직이라는 걸 천직으로 볼때 무조건 교감, 교장으로만 자꾸 올라갈려고 하는 그러한 팽배된 인식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평교사를 지키는 사람들의 그러한 자세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질서의식이 좀 없어진다든가, 혹은 위화감을 느낀다든가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미술, 음악, 교련같은 그런 과목

은 참 빨리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는데 그렇지 못한 국어과라든가, 사회과, 과학과같은 이런 일반교과는 상당히 쳐져가지고서 교장에 승진 여러가지 연령으로 본다든가, 경력으로 본다든가, 충분히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떨어져 가지고서 되지 못해서 그 참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위화감이 된다든가, 그래서 그걸 아마 극복키 위해서 미술, 음악, 교련같은 컴퓨터교육을 실시좀하자 그러는 것도 같은데 물론 요거와는 다른 얘깁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그 심각한 현장의 문제점, 이거를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떠한 새로운 대안이 스지 않으면 않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번째 교장, 교감승진이 임용후보자의 명부서열 공개실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누구는 몇번째 교감이 된다. 몇번째 교장이 된다. 근데 이거는 자기 본인만 아는 부분공개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수 있게 완전공개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입니다.

임시교사 대우실태입니다.

종전까지는 임시교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담교사로 대치를 해서, 뭐 예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임시교사를 발령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감사때 질문을 들어 보니까 앞으로 임시교사를 보내야겠다. 한데 그 대우가 과연 말을 듣자니까 타시도와 비교해서 열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긴데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실태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아까 말씀드린거와 관련이 되는 전문직의 전문성제고 대책입니다.

지금 장학사들이 전문직이라는 그런 미명을 하여서 정말 자기들이 장학업무를 제대로 하느냐 하면은 이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같습니다.

교직의 전문성을 그야말로 교육활동하는데 가장 최고로 요구되는 겁니다.

즉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가지 범죄문제라든가, 혹은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혹은 여러가지 건강문제, 환경문제, 이런 그 범죄문제라든가 질병문제들이 모두가 다 우리 교육자가 교육할 활동을 조금만 제대로 잘했으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교육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교육자로 하여금 전문성을 길러서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교육활동을 했다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사후에 터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이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갖다가 막지 못 해가지고 범죄가 나고

질병이 터지고 해서 가래로도 못막고 쟁기로도 못막는 이러한 잘못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교직의 전문성, 전문직의 더구나 전문성 이거는 교육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하든지 일선 장학사들이 늘 그 서기나 무슨 뭐 저기처럼 그냥 공문서나 발송하고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더 책을 보고, 읽고, 연구를 해서 현장에 침투를 시키는 그러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달라 그래야만이 교육이 살아난다. 이게 바로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그런 말에 적응되는 얘기 아니냐 늘 뒤에서 일이 벌어진 뒤에가서 해결할려고 하니까 돈도 더 많이 들고 더 어렵고 합니다.

미리 호미로 막았으면 될 일을 자꾸 가래로 막을려고 하니까 더 힘듭니다.

아, 그 다음에 에, 아까 관련한 거와 통해서 시간이.....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불란서를 갔다왔을 적에 느낀점은 불란서의 11년 담임제, 한 교사가 학생을 11년을 계속 끌고 올라가며 담임을 한다. 여기에 참 교원에 혹은 그 교권의 전문성은 신성불가침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교권이 나오고 여기서 교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같은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교권 올라가지 않고 따라서 교육은 백년하청이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서, 아까 그 전문직과 일반직과의 관계에 관련된 말씀으로써 일반감사는 그런 얘기가 돕니다.

일반감사는 적당히하고, 그래서 이런 행정같은 것도 제대로 못막았지 않느냐, 학사감사같은 것을 너무 엄하게 하고 해서, 교장이 그냥가서 머리를 굽히고 사정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좀더 즉, 그 각 그룻의 행정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막는 그러한 대책에 감사에 즉 핵심을 거기다가 좀 쏟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기까지만 하고 몇가지 또 질문을 한 몇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몰러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재에 그 재교육시설이 단재교육에 잘돼 있는데 일정강습을 교대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물론 특별실이 없는 거라고 양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특별실 음악이라든가, 미술교육같은 것은 거기서 하더라도 그 좋은 시설을 만들은 단재교육에서 시설에서 해서 젊으신 훌륭한 그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싶어 하는데 교대에서 한다고 한데 대해서 좀 실망을 갖는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학교의 복지시설로써 휴게실이라든가, 탈

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여긴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무원 연금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아울러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풍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권혁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질문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준비를 위하여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예결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산회후에 다시 회동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상찬,
시설과장 박성근.		

第43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第 3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4년 11월 29일 (화요일) 10시 02분

議事日程 (제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4.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5. 영동도서관이전계획안
6.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94.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8. '9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5.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6. 영동도서관이전계획안
7.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94.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9. '9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기타안건 처리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1. 경과보고

(10시 01분)

● 의사과장 강인형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이재희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과 함께 질의, 토론을 거쳐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사수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사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김사수

교육위원 김사수입니다.

조례안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충북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된 공동실습소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시행일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개정, 신설되는 부분은 별표중 충북공고공동실습소 설치에 관한 사항뿐이므로 두개의 시행일을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조례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충북공고가 개교되는 '95년 3월 1일부터 이며 '95년 2월 20일까지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충북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된 공동실습소는 삭제하여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변동일이라서, 구 조문에 충북공고외에 변동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 충청북도 도서관설치 및.....

● **의장 김영세**

예 그거는 이따가 말씀하시죠.

● **위원 김사수**

예 예

(김사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우선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침묵)

예 그러면은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분이 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김사수위원님께서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두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의 기존의 공동실습소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의미를 갖는 것은 기존의 공동실습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기존의 공동실습소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북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3월 1일 이후에 개교가 되기 때문에 개교와 아울러 공동실습소는 효력을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러한 의미에서 구분을 해서 부칙을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두번째 질의이신, 기존의 공동실습소에 대해서는 하등의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조금 기다리십시요.

박춘용 중등교육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사수위원 납득이 되셨습니까?

● 위원 김사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이상일

제가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영세

예 이상일위원

● 위원 이상일

제 생각에는 그냥 말이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래 놓으면은 지금까지의 개정이 필요가 없는 구공동실습소는 그때까지 자동적으로 효력이 가는 거 아닙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별표의 개정이 전문을 개정했기 때문에 삽입했기 때문에

● 위원 김사수

아, 별표를 개정합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별표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때에, 4쪽에 충북공업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가 추가되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 의장 김영세

지금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별표가 개정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충북공고설치조례만 가지고 한다면은 두개의 공표일이 필요가 없는데, 집행청의 대답은 충북공고 공동실습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별표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 위원 김사수

아, 별표가 수정이 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별표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두개의 공표일을 갖는다, 시행일을 갖는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 위원 김사수

예

● 의장 김영세

이상일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 위원 이상일

예

● 의장 김영세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더이상 어떻게 질의 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도서관 이전계획안

5. 보은도서관 이전계획안

6. 영동도서관 이전계획안

(10시 10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도서관이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사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김사수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시행일의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서관 또는 야영장의 위치, 명의개정은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근거가 있으므로 동법의 시행일인 1995년 2월 1일을 개정조례의 시행일로 정하는 것이 법리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서관의 휴관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가 바뀌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사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 모두 침묵)

예 그러면은 집행청의 대답, 역시 중등교육국장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김사수위원님께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부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문안을 냈는데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면은 어떠냐 이런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또는 도의회를 거쳐서 의결되는 시기를 예측을 하고 또 공표하는 날을 1월 1일을 기해서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한 '95년

1월 1일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더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바꿔 말씀드리면 만일 1월 1일을 기해서 공포를 못할 경우는 그후에 공포될 때에 역시 물의가 없는 그런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방금 중등교육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앉아서 하시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김사수**

이것을 이미 법에서 1월 1일이라고 공포일, 그 시행일이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월 1일에서 변동을 한데도 이걸 어떻게 변동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변동이 됩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이 돼 있으면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법령으로 맞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김사수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은 하위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갖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공포를 못했을 경우 그럴때를 저희들은 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김사수**

이거가지고 조례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거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1월 1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개관에 대한 그 휴관일 변경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 내용 역시 공포한 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휴관일을 정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사수**

아니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중간에 12월달에 뭘하는 것보다도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공포되기 이전에는 현행대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 **위원 김사수**

아 글쎄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하는데, 시행하는 날짜를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명년이 되고 바뀌고 하니까 낫지않느냐, 이 얘깁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일에 1월 1일 공포를 못할 경우, 그럴때는 약간의 문제성

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사수

아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예 알았어요. 예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 의장 김영세

김사수위원 질문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집행부 대답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법의 효력이 좌우되는 거는 아닌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대로 이해가 되시죠.

● 위원 김사수

예 예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도서관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도서관 이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도서관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은도서관 이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동도서관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도서관 이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침묵)

예 질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94.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10시 21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9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3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재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재희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이재희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5인위원이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고 28일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심사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개요를 살펴보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5,101억 3,677만 2천원보다 52억 7,887만 7천원이 감액된 5,048억 5,7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 감소된 바, 그 주된 이유는 진천 삼수국민학교 이전 계획이 부지매입의 곤란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에 학교이전과 관련하여 계상하였던 현 학교의 부지와 건물 매각대 82억 5,703만 5천원을 세입예산에서 감액하였고 이전 예정지의 부지 매입비와 교사건축비 82억 2,919만 6천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14억 5,530만 7천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부담수입 2천만원, 주민부담수입 3,992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감액 67억 9,410만 4천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에는 특히, 청주 맹학교 교사 증·개축과 제천중학교 및 수봉국민학교 강당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14억 5천만원을 배정받은 바, 본도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외 재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세출예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청 3억 8,079만 4천원, 지역교육청 감액 61억 6,039만 6천원, 예비비 5억 72만 5천원으로 편성된 바, 성질별로 구 분해 보면 교육행정비 2천만원, 교육사업비 감액 8,067만 6천원, 학교비 1,147만원, 사학지원비 4억 5,129만 3천원, 시설비 감액 61억 8,168만 9천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청주맹학교 교사 증·개축 등 2개 사업에 1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고 2+1체제 운영교 지원 등 3개 사업에 5,063만 8천원을 증액하는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등 2개 사업비에서는 3,533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청원도서관 장서구입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제천 및 보은도서관 이전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4,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계획의 조정에 따라 진천 삼수국민학교 이전 등 4개 사업부문에서 83억 1,370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수영장 신축공사 등 18개 시설사업에 84억 7,502만 9천원은 공기가 부족되거나, 관련시설 사업과 시기를 맞추어야 하는 사유 등으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

한 바, 그 명세는 유인물 뒷부분에 첨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사업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고 자체 재원을 투자하여 제천 및 보은도서관을 이전하는 등 지역 문화공간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진천 삼수국민학교 이전계획 연기와 관련하여 사업예산을 적시에 조정하므로써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며, 소규모학교 아동들에게 까지 급식범위를 확대하고자 괴산교육청에서는 급식운반 시설비로 7천만원을 투자한 바, 이와 같은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적극 권장할 만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도의 부족한 교육재정 현실로 볼 때 국가로부터 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히 작성되었다는 데에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이 모아져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여러분!

본 소위원회 5인 위원이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재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다섯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세입, 세출 각각 5천 48억5,789만 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31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정회를 약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계관별로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의석에서 앉은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교육감,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관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정인영

본인은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문제와 교장의 인사에 관한 분야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상일부의장께서 사립학교 희망하는 사립학교의 고등학교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거와 관련된 문제는 그것은 그 국한된 문제라기 보다도 전반적인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개정에 관련된 문제때문에 고교입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자주 발표되는 내용 가운데에서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사립학교만 별도로 희망하는 사립학교로 인해서 또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서 고등학교학생들을 학교별 선발권을 인정해준다. 이와 같은 것들이 교육부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난 11월 26일날 대전교육원에 개원이 있을 때도 전국의 교육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장관도 참석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부 예산심의 관계로 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고 교육부장관이 그 문제에 관한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달라고 교육감 협의회의 회장인 서울교육감한테 의뢰가 돼서 그 자리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각 시·도교육감의 순서대로 각자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 11개 시·도교육감이 다들 한결같이 그 문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문제다. 이렇게 다 뜻을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만 그와 같이 학교별 선발권을 인정을 해 준다면은 기타 공립고등학교나 또는 일부 국립고등학교에서도 반발을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이것은 전부

반대하기로 이렇게 하고, 다들 15개 시·도교육감들이 한결같이 고등학교 입시문제는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당연히 중·고등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감에게 그 권한이 위임돼야만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에서도 가장 고등학교별로 선발권을 인정하여 주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를 제가 그 자리에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요 문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때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현안과제로다가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6차 교육과정이 개정돼서 '96학년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고등학교에 교과과목이 총 29개 과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필수 교과목이 10개 교과목입니다. 즉 34%가 됩니다. 그 이외에 교육감이 17개 과목, 또 각 고등학교 교장이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선택교과가 교육감이 선택교과를 17개 교과목을 교육감이 선택할 수 있다. 해서 교육감 마음대로 너희 학교는 뭐뭐뭐를 선택하라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각 고등학교에다가 교육감이 선택할 교과목과 또 각 고등학교 교장이 선택할 교과목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은 그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하게 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이와 같은 방향을 취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감이 여기 앉아서 어떻게 영동의 항간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선택교과목을 잘 알수 있을 것이며, 단양에 단산고등학교나 또는 기타 북부지방의 여러 고등학교의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최대한도로 교육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교과목 17개 교과목도 각 고등학교 교장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을 택할까 합니다.

이렇게 되기로 말하면 '96년 3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별로, 각 고등학교별로 4과목내지 5개 과목이 서로 상치되게 틀리게 이렇게 교과목이 편성되게 됩니다.

청주시내도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청주시내에 여러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도 4내지 5개과목의 상치되는 교과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며는 현재와 같이 청주시내에서 평준화제도하에서 너는 어느 고등학교 가라, 이렇게 추첨결과에서 배정을 하면은 우리 교육시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교육의 근본정책에도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교과목을 강제로 배당된 학교에는 선택의 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엉뚱한 교과를 배우는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제 6차 교육과정이 개정돼서 적용되는 시기에 맞춰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개설돼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권리는 이건 당연히 보장돼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들어서 15개 교육감들이 한결같이 이 고등학교 입시문제는 어디까지나 지방교육자치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에게 위임을 하면은, 위임 맡으면은 교육감들은 더 책임있게 책임을 느껴가지고 보다 소신있고 지역에 여러가지 여건을 다 마련해서 또는 많은 의견들도 수렴해서 이렇게 수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장관에게 서울 교육감이 대표로다 건의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교장의 인사에 있어서는 교장 개개인의 여러가지 생활여건이나 이와 같은 문제도 존중돼야 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을 위한 인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하시면서 좀 교장이 한 학교에 비교적 장기간 근무하도록 그리고 제천지방에 시내에 신규교장을 임용을 억제해 달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좋은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교장이 한 학교에 부임해서 학교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름대로 그 학교,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육개혁을 개발을 해서 교육활동에 내실을 기하자며는 최소한도 4년, 5년은 한 학교에 근무해야 된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나, 우리 도에 이와 같은 교장들의 생활상태를 볼 때 거개가 청주, 충주나 이와같은 대도시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지나 외떨어진 먼 거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또 그래도 여러가지 생활에 불편이 생겨서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이와 같은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장의 개인적인 생활도 좀 편리를 제공해 주고 또한 그 학교를 한번 부임한 학교에서 오래동안 성실하게 여러가지 지역이나 학교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실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그와 같은 기회도 주는 이 두가지를 잘 조화있게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에서 교장임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내에 승진 초임교장을 발령을 억제해 달라는 이와같은 말씀은 그렇게 당연히 그 지역에서 여론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와 같은 좀 대규모 학교, 시내에 위치한 대규모 학교에는 보다 성실하고 교육행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발령을 합니다.

물론 교장경력이 오래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살려서 새로 부임하는 학교에서 보다 더 발전된 학교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또 그 반면으로 생각되는 것은 새로 승진된 그 의욕으로다가 내가 처음 부임하는 학교를 보다 알차게 해 보겠다 하는 새로운 참신한 기운도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진 임용제는 이와 같은 교장이 좀 규모가 큰 학교에 임용할 때에는 그만한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용을 했고, 앞으로도 이재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가장 적임자를 그 지역에 발령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삼아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 **의장 김영세**

교육감님한테 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희위원 "됐습니다."하고 말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김광수**

가만 있어봐요

● **의장 김영세**

예

●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 그 말씀에 질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아까 건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몰라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 교육청에서는 교장, 교감, 평직원까지도 인사에는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고지 우선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는 교장이 근무지에 발령을 받고서 몇년 재직하므로써 인사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교장은 몇년이고, 교감은 몇년이고, 평교사는 몇년이고, 또 오지와 도시에 그런 차별화가 있는지, 이건 사실상 인사담당자가 말씀해도 되는 건데, 이 교육감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 **교육감 정인영**

교장이나, 교감이나, 또는 전문직의 경우는 저희들이 무슨 어떤 규칙을 정해 놓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 직장에 2년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할 때에는 1년, 또는 1년반 이내에 전직시키는 그와 같은 전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나 벽지 오지지역의 교장 근무 제한년한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 의장 김영세

어떻게,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하고 말함)

예 그러면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감)

부교육감님 나오세요.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박동기

부교육감 박동기입니다.

저는 박병해위원님께서 본도 교육감께서 '95년도 교육시책을 보고드릴 때에, 그 내용 중 일부를 질의하신 세가지를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권혁풍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일부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세가진데 '95년도 교육시책연설 중에서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에 내실과 질 향상계획이 여기에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과 또 하나는 방과후에 특수재능교육을 실시하는 그 방향과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세번째로 중등교사들이 근간 학습자료제작에 열의가 부족한 감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 세가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질의하신 가운데 요목을 열거를 하셨는데 다시한번 열거를 하면은 '95년도 교육시책에 관한 설명 중 학교단위 특별재능 프로그램 개발지도와 특별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방과후 특수재능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설명은, 그거를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95년도 교육시책을 보고드린 그 내용은 교육감이 보통교육을 담당한지라 여기는 국·중·고등학교가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단위라 하는 것은, 유치원이나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인 각급학교의 단위를 굳이 명시를 안하더라도 그 용어 중에는 내포돼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못 유치원에 대해서 좀 강도있게 강조한 것은 평상 전례로 봐서 유치원에 조금 등한을 한 건 아닙니다만서도 조금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는 바로 국민학교에 직결되는 것이 유아원 교육입니다.

그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좀 강도있게 '95년도에는 유치원 교육에 심혈을 더 기울여 보겠다는 뜻에서 강조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별로, 구체적이고 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요체를 추출을 해서 다시금 이 프로젝트를 세울 때에는 각급학교 세부 추진계획이 바로 '95년도 장학계획에 수립할 때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방과후 특수재능교육을 실시하는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달릅니다만서도 국민학교는 대체로 수업이 끝난 다음 그 방과후에 여가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습시설과 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개인의 소질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능력을 고려해서 특별활동을 반을 조직을 해서 운영 해보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한정된 교원이고, 교원이 있고 그 교원에 능력에 한계가 있는 지라 또 학생들의 희망과 소질은 다양합니다.

그것을 그 조직 구성돼 있는 그 조직을 그 범위내에서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유능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그 학교실정에 맞도록 끔 운영,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교과별 예를 들면은 즉 국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악전공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영어라든가 그리고 일어라든가 또는 한자지도라든가 또 회화, 그림이라든가 컴퓨터, 이러한 좀 특별한 학생들에게, 소질을 가진 아이들에게 만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으로써는 충당을 못하고 그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점은 뭔고 하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그냥 건거깽이로 지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수익자 부담으로써 그저 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끔 서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지도기록카드를 작성을 해서 국민학교는 중학교에 올라갈 때,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에 이관해서 연계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중등교사들이 학습자료 제작에 열의가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은 사실로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부터 우리 교육감님의 특별시책에 의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휴가 중에 각급학교, 초·중·고를 망라해 놓고 그 교원들이 학습자료를 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또 오버 헤드 프로젝트 투시자료라든가 그리고 영상자료라든가 사진자료, 스크랩북, 그 다음에 아이들의 창작품, 발명품, 또는 간이 시험기구 등등, 요즘에 과학전람회고 또는 발명품 경시되고 그 모든 자료가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창작품, 이런 것을 방학 공간기를 이용을 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이 끝난 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제출돼 있는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각급학교 교원들이 어느 분야를 망라해 놓고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거에 궤도를 작성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다른 슬라이드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가시적으로 요런 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조금 고차원적인 이런 학습자료를 많이 개발해서, 이건 강제는 아닙니다. 한사람 앞에 하나씩 다 만들도록 끔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우수한 작품을 제작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자기 표창 관계도 있고 하니까, 상당수가 전시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 성황리에 전시회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 자아실현은 물론이려니와, 그 학교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문제인데, 학사사항을 일반직이 감사하는데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걸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초중등장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장학협의 내지는 장학활동의 개념과 그리고 감사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활동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단위학기의 교장의 철학과 교육관과 소신과 그 능력을 발휘를 충분히 해서 그 단위에 학교를 현대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 역량을 잣대에 재서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참모역할을 하는 교무활동의 교감과 그 다음에 일반직인 서무에 그 역할기능을 주어진 그 책임범위 내에서 잘 소화있게 운영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측정을 하는가 하면은 각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별 교사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직역을 기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주역이 될 이 학생들의 인간교육 차원에서 보다 더 지혜롭게 가르치냐 하는 이런 것을 잣대에 재는 이런 담당활동이 바로 장학활동이며 장학협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각교과별로 목표가 설정이 되겠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교육내용이 진지하게 성실히 이루어져야겠고 또 자기가 지도한 그 내용이 잘 이해돼 있고 또 행동화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평가라고 볼 때 이것을 리마인드(remind)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교과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칭해서 장학활동이며 장학협의고 전문적인 장학진이 아니면은 수행하기 어려운 이런 여건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물론 교육내용은 아니고 그 감사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하면은 교육내용이 아닌 운영에 기준적용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는 분석이라든가 또는 이에 대한 기록, 이런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계수화 돼 있는, 계량화 돼 있는 수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라도 능히 그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첵킹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육내용화 해가지고 같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골을 타놔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학진이 꼭 같이 동참을 해서 감사를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저희들 도의 감사기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자체감사 기구의 조직현황을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4182호입니다.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어서 편성, 조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에 1개과 2계를 두고 계별로 사무관 한명, 주사, 주사보해서 5명씩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감사계는 청주, 충주, 제천, 시 소재지는 감사계가 있고 기타 구분은 서무계에 감사업무를 병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전문직은 정원관리상 감사요원으로 저희들이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전문직의 정원을 확보 못하는 그 원인도 누차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문직의 감사요원 선발할 때에는 학교 계열별로 즉 농업학교를 가느냐, 공업학교를 가느냐, 상업학교를 가느냐, 일반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중등장학과 장학진, 또는 과학기술과 전공한 장학진과 같이 동반해서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감사수행시 감사반 편성 및 사무분장은 행정감사규정 제5조 2항이건 감사의 주기입니다.

그리고 제15조 감사반 편성, 요런 근거를 가지고 반장은 물론 1계, 2계 사무관이 계장이 반장이 됩니다.

또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날짜를 조정합니다.

사흘하느냐, 나흘하느냐, 이틀하느냐, 그리고 또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네명이 가느냐, 세명이 가느냐,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는데 이 부분감사는 지방감사하고 같이 동

시에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종합감사는 3기 3주기, 3주기에 한번씩 실시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년만큼 한번씩 돌아온다. 그리고 전문직에는 전문직이 갈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계량화 되어 있는 계수의 체킹과정에서 그 내용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학사가 전부 주되게 사무분장을 맡아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감사를 하다보면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이런 거는 개선해야 하겠다 하고 하는 그 방향이 잡히곤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감사가 온다 라고 하면은 괜히 긴장하게 되고 또 인맥, 학맥이 있는지라 요새 흔히들 얘기하는 적당주의로 흐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겁니다만서도, 저희들 도에는 교육감님 이하 전직원이 강력하게 공정하게, 엄정하게 처리지침을 받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양태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못 좀 아쉽다고 하는 생각드는 것은, 첫째가 감사반의 아까 말씀드린 전문직, 전문직이 좀 없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좀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되도록이면은 그 감사요원들의 에티게트, 예절 문제입니다.

요즘에 권위원님 질문하실 때 패패 젊은사람이 아버지벌 되고, 선생님벌 되는 사람에게 불손하게 대한다. 불손하게 대하는 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시시비비를 가릴 때 억양상 조금 큰소리가 나올뿐이지 우리 동양예의지국가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아버지벌, 선생님벌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저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순화, 사무를 집행하다 보며는, 좀 공손한 말로 얘기할 때와 조금 때에 따라서는 조금 지나친 얘기를 해서 책무를 완수해야 할 경우가 간혹 파생이 됩니다.

이런거는 좀 깊이 통찰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정한 감사라든가 또 공정한 결과, 처분이 되도록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조금만 부교육감님 기다려 주시죠

부교육감님한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거수)

예 박병해위원 말씀하시죠.

● **위원 박병해**

질문보다도 부탁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 **부교육감님 박동기**

예

● **위원 박병해**

부교육감님 답변을 듣자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해 지고 왜 이런 걱정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대화를 해 본다든지 학교를 신방해서 본다든다든지 하는, 그런데서 제가 걱정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걱정이 안돼도 괜찮을 건가 하는, 바로 그 해소가 안될 것 같아요.

● **부교육감 박동기**

예 예

● **위원 박병해**

그래서 '95학년도 교육계획에 세부계획을 할 때에, 지금 답변해 주신 논제는 좀 소상하게 정말로 실천에 옮겨 질 수 있도록, 가령 방과후에 특활관계 이런 것도,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박병해**

인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지방에 인사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상세히 조사한 근거도 있도록,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박병해**

이렇게 해야 이게 될 걸로 아는데 거기 수반된 예산도 자그만치 꽤 될 걸로 이래 예상이 됩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박병해**

그렇다고 하며는, 보다 실천에 가까운 어떤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혁풍**

부교육감님 친절하게 답변해 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권혁풍**

감사를, 학사감사를 할 때 일반직이 하는데 그 대상감사가, 대상은 교육내용이 아니고 운영의 기준을 적용한다든가, 혹은 분석을 한다든가, 이미 기록된 것을 착오가 없는가,

● **부교육감 박동기**

그렇죠.

● **위원 권혁풍**

예 이런 것. 혹은 모든 것이 계량화 돼 있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예

● **위원 권혁풍**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답변을 해 주

셨습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권혁풍

그 제가 질문드렸을 때,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문직이 해도 가능한 것을,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해도 가능한 거라면, 구태여 왜 그 학사감사를 전문직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객관적인 그런 수치라든가 그건 계량화 된 거니까,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권혁풍

구태여 그 에티켓이라든가 혹은 그 운영상의 여러가지 휴유증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일반직한테 이걸 맡겨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가, 다시 말하면 전문직이, 물론 인원이 부족하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까지 인원이 부족하다, 또 감사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전문직이 물론 부족하지마는 전문직 중에서도 좀 감사기법을 좀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차출을 해가지고 서로가 기능상의 학사나, 혹은 학사감사가 아닌 일반감사나 이렇게 구별을 해서 좀 더 감사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직으로 하여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내용을 하면은 별다른 탈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위원님 말씀이 우리 전문직을 옹호하고 전문직의 기능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의 티오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그리고 일반직이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법이라든지 기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익히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떠한 그 평가처리결과를 한번 감사를 한다고 할 때에 정답표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정답표로 채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가시적으로 계량화 돼 있는 객관성이 있는 이런 것을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또 안따라 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엉켜있는 골을 따놓는 방법이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전문직하고 같이 호흡을 합해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요즘에 나이를 많이 자신 분들이 희소합니다.

요즘에 뭐 고시합격자를 보면은 그 분포가 20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무관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뭐 중앙부서에 가면은 지방보다는 더 역시 그 차가 극심합니다.

이런 것은 현대사조 조류에 따라서 이끌어 나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권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혁풍**

그럼 부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권혁풍**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인저 물론 감사를 누가해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직이 하나 전문직이 하나, 마찬가진데 전문직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아니겠습니까?

● **부교육감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권혁풍**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절대로 그 휴유증이 나지 않도록,

● **부교육감 박동기**

예 예

● **위원 권혁풍**

그 감사 에티켓, 그 분위기를 참 교권을 옹호라기 보다, 교권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권혁풍**

아주 분위기를, 그 뭔가 아주 저항감이 나지 않도록 그 기법있게 해 주시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나 전문직이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기능을 일반직이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권혁풍**

그렇죠?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권혁풍**

절대로 대신을 못합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예

● **위원 권혁풍**

아이들을 어떻게 일반직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역시 교사 전문직이 부족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라고 할까, 그 분들의 고유의 권한이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이라는 거를 특별히 인식하셔서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절대로 저항감이 나지 않도록 존중해 주시기 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권혁풍**

예 이상입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장충호위원님 질문하세요.

● 위원 장충호

부교육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장충호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여름하고 겨울방학 중에 학습자료를 많이 전시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장충호

그 전시하는 장소가 어딘가, 도교육청인가, 아니면 딴 장소인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그 여러 전시품 중에 가장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누군가, 담당교산가, 교육청에서 정하는 건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충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 부교육감 박동기

예 예

● 위원 장충호

에, 불교 육장경에도 일월 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네

● 위원 장충호

하나의 달을 보는데도 있어가지고 세배에서 탄 사람이 보면 다 각기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장충호

그러면 그 보는 사람의 마음과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장충호

그런한 점이 궁금해서 전시하는 장소와 평가를 누가 하는가, 요걸 알고 싶습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전시한 장소는 금년도에 청원군 교육청 전시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평가는 영역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교원끼리 해도 안되는 거고, 또 교장선생님을 이용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추호도 의심없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장충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시죠.

(초등교육국장 발어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먼저 권혁풍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교육자치제 실시 전후의 교육현장의 변화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서 답변요지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교육자치 개막후에 3년이 됐고, 또 저희 자신도 이 자치시대의 해를 맞아서 일선학교 현장이 어떠한 가시적인 변화가 오느냐, 그것을 장학활동이라든가 각기 일선학교를 순방할 때에, 이것이 많이 관심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 시점이 개막하고서 3년 된 이 시점에 일선학교의 변화가 어떻게 초래됐느냐 하는 문제는 좀 진단이 진단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시대에 학부모들의 의식전환이 어떻게 전환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방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학부모는 거기 위원님들께도 노나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교육자치시대의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학부모는 교원들에게 교육할 권리를 위임을 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일선학교를 도와줘야 되겠다. 거기에 아울러서 학부모가 학교를 관찰하고 학교를 통제하고 학교를 평가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교육자치시대에 학부모의 의식전환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이렇게 학부모가 교육할 권리를 위임을 시켜줬는데 과연 교사의 그 책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느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느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학부모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내 책임을, 교육할 책임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게 돼야 되겠다. 또한 지역사회의 학부모들이 기대와 욕구를 충족해 주는 이런 교사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막 3년째 되는 때에 일선학교에 어떻게 변화를 초래했느냐

는 문제는 참 진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전제해 드리고 굳이 가시적이나 잠재적으로 현재 어떤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며는, 그 밑에 권위원님 한테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권위원님이 어제 여섯가지 쪽 구분을 하셔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 학교장의 자치권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전후를 말씀드리면 그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변화상태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려 보면은 전에는 지시에 의존하던 이런 학교경영이 오늘날에 와서는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경영에 전환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자치권에 있어서 과거에는 소규모학교에서만 도급경비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행정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도급경비제 확대로 학교장의 재정권을 보장해 줬다. 그 말씀을, 다음에는 교사의 참여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학교장의 주도하에 학교경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학교경영에 교사가 참여하는 또 참여할라는 의욕은 교육자치시대 이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드려 보면은 학교경영에 교사 참여기회가 이건 아주 가시적으로 눈에 띌만큼 이것이 확대됐는데 거기에 한가지는 인사자문협의회입니다.

학급배정은 모두 교사들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학교장에게 자문을 하고 또 업무담당문제라든가, 또 표창업무 추천이라든가 등등, 학교 교무 전반에 걸쳐서 인사자문회의 역할이 확대가 되고 그것이 현재 저희가 평가를 해 볼 적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세째번에 교육과정운영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 문제는 뭐 6차 교육과정이 내년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가 충청북도 교육청 교과서도 바뀌기 때문에 이건 더 자세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이라든가 진로지도문제, 이것도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이런 진로지도를 한다든가 학생의 희망을 존중해서 전일제로, 하루종일 방과후에 특별활동을 한다. 그런 기쁨이 역력히 보이고 저희도 그런 시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보충수업실태는 이건 교육자치 전에나 지금이나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도록, 오늘날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실시하는데 희망학생과 희망교과를 중심으로 실시를 한다든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1,2학년에 자율학습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변화가 왔다. 이건 전에도 교육자치 전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고, 지금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참여도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다. 주민이 학교를 관찰하고 통제하고 평가하려는 그러한 기운이 점진적으로 점증하고 있다. 이런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학부모들의 이런 의식이 전환이 돼야 되겠다. 그래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굳이 3년 됐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정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 둘째번에 권혁풍위원님께서 교장, 교감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실태와 문제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제 힘주어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는 완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통지도 하고 완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언제하느냐, 그 말씀 드려보면은 '94년 2월 16일자 동양일보, 중부매일, 조선일보, 서울신문, 4개 신문에 그게 명단까지 공개돼 있어요. 문제점은 없고 아주 그 승진 예정자들이 앞으로 내가 금년에 교장나간다, 교감나간다. 이걸 알고서 교장학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언제 나간다는 걸 아니까 마음의 자세를 취하고 대비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건 성공적인 이런 시책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풍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 이 전문직의 전문성제고 대책, 장학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므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장학업무를 제대로 못한다 하는 문제, 이건 인력측면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손이 모자라지 않는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전문직이 장학사의 자질을 어느정도 구비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저는 인력하고는 이건 인력이 부족하다 라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마는 장학사의 장학사의 자질측면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장학사들의 자질은 저희들이 훌륭하게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초등전문직 수가 101명입니다.

중등전문직 수가 113명입니다.

그러면 초등의 전문직 101명이 초등교원 5,401명 중에서 101명이 뽑혀온 사람들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며은 1.87%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서 2명 뽑은 셈입니다.

중등으로 말하면은 5,337명 중에서 113명이 전문직으로 발탁이 돼 있는데 거기는 2.12%입니다.

그러다보면은 그것도 백명 중에 두사람 꼴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교육장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형규정에 의거해

서 전형을 해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직의 자질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 얘기할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고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 감사기능에도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인력문제는 인력증원은 국가적 차원의 그런 억제지침에 의거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 국민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단재교육원에서 해 오다가, 왜 이걸 청주교육대학으로 옮겼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설립할 적에 학생수련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연수기관입니다.

또 청주교육대학은 이건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원, 초등교원 연수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재에서 하다가 교대로 옮겼느냐 하는 문제는 이 1급 정교사라면은 국민학교나 중학교로 봐서 이건 중견 간붑니다.

그 중견간부를 양성하는 1급 정교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강습입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에는 교과교육을 전공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수자원을 우리가 이 중견간부 양성하는 이 1급 정교사, 이 연수에 투입을 시켜서 좀더 수준높은 이러한 일정 강습을 시켜볼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걸 교육대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에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초등교육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

예, 권혁풍위원 질문하세요.

● **위원 권혁풍**

제가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교육자치제실시 전후를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냐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은 취지는 3년동안에 엄청난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물은 겁니다.

즉 그래도 3년이라면 짧은 기간은 아닌데 엄청난 변화는 기대할 수 없어도 어떤 그 변화의 조짐만은 있지 않느냐, 바람이 부는 그 어떤 풍향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 하는 걸 물었는데, 왜 물었느냐 하면은 일선교육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교육자치제가 되면서부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효과가 없는 그런 그 역기능을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반응이 엿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건가, 이 교육자치법이 잘못돼서 그런건가, 아니면 운용이 잘못돼서 그런건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제가 탐색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여러가지 여섯개 항목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이 잘 돼가고 있다. 상당히 반가운 얘깁니다.

과거에는 지시일변도였던 것이 학교장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다는 기회가 되어 졌다는 게, 이게 커다란 변화라고 봅니다. 네 그 참 좋은 얘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문이 나는 것이 학교장의 특성을 살려야 될텐데 학교장의 특성을 살림으로써 그 학교의 특색이 사라집니다.

그 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교장은 누군데 이 분의 특성은 이러니까 이런 게 엿보인다 하는 정도로 뭔가 능력이 발휘되고 또 그 효과가 드러나야만 학교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될려면은 현재 참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장을 1년있다 보내고, 2년있다 보내고 이런식 가지고는 될 수가 있느냐, 적어도 학교장이 어느 학교에 부임이 되면 4내지 5년정도는 거기서 근무를 해야 그 학교의 특색을 학교장의 개성대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어떻게 1년만에 하고 2년만에 가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학교장 중심이 되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거기 인사 교장의 인사에 대한 그 어떤 측면에 자격이 있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사의 참여도가 아주 지금 활발이 전개되고 있다. 상당히 반가운 얘깁니다.

참 교사쯤 되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성인들입니다.

누가 시켜서는 안합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너무나 시켜서 위에서 시킴으로써 오히려 거부가 되고 역기능이 발휘되고 이러한 결과가 됐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좋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 사례 한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수업실태를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현장과 다릅니다.

현장에는 희망학생과 희망교과, 이게 에 희망학생은 어떤지 몰라도 희망교과 여기까지가 과연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말씀이었지 사실은 이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 이게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시돼야만 될텐데 그렇치 못한 현실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의문시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참여도에 관해서 이거 명예교사제 운영이 이거에 나왔는데 제가 참저 음성군 삼성국민학교를 가봤습니다.

열린교실 운영을 한다고 해서 초청이 왔길래 가봤더니 정말 명예교사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골도 농촌도 그 어머니들이 조금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머니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명예교사가 있어서 삼성국민학교도 한 4-50명의 명예교사가 활동을 하고 계신 걸 보고서 평소에도 정말 이렇게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고 계시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나와서 발표하시는 것도 참 잘 하시고, 아주 삼성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참 명예교사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다른 학교도 그렇게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걱정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또 묻는 것은 그럼 이렇게 참 학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이렇게 잠자고 있던 잠자고 있다면 좀 모순이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침체돼 있다든가, 침잠돼 있는 학교분위기가 활성화돼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좋은 조짐으로 3년동안에 보이고 있다는 거, 참으로 우리 교육자치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구나 물론 여러가지 이 참 그 이외에 좋치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이 많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그 자치제에 관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은, 그러면 학교평가를 하고 계신데 물론 행정통제상 학교평가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자치의 실태 이것이 학교평가에 어느만큼 반영되고 있는가 그 학교를 평가할 때 이런 자치의 정도를 어떻게 여기다가 반영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장승진 임용후보자는 완전 공개를 신문에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참으로 이건 참 개방화시대의 서막이다. 뭐 참 좋다고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언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출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누구나 이건 환영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인력 측면에서는 이건 국가의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질 측면에서는 자신을 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인력 측면에서도 아까 감사할 때도 좀 될수 있으면 학사감사를 인력을 좀 장학사 전문직에 그 감사기법을 좀 교육을 시켜서 될수 있으면 학사감사를 전문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는 커녕 참 인력부족으로 장학업무까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가에서 어떤 교육에 대한 시책을 말로만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장학사가 장학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인력을 준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학사가 그냥 일반 서기처럼 공문이나 발송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이런 정도라면은 절대로 교육은 발전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교육에 있어서 가장 엘리트 지금 1.8%. 2.1%하는데 가장 엘리트로서 교육의 첨단을 걷는 첨병이 바로 전문직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교육은 발전 가능하다가 아니고 발전 불가능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의나 어떤 대책이 서계셔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지금 저 권혁풍위원님 저 보충수업 희망실태는 중등교육국장한테 답변을 받으시죠.

● **위원 권혁풍**

예

● **의장 김영세**

중등교육국장님 준비해 주세요.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 **의장 김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에, 권위원님 보충질문을 지금 여섯가지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장의 특성과 학교의 특색과는 이건 참 높은 상관이 있다. 그렇다면은 학교장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이게 4년내지 5년은 학교에 둬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 는데 역시 장기간 있다보면은 역시 교장의 특성, 이것이 즉 학교교육의 특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4년내지 5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우리 충청북도의 실정으로 봐서 근무를 이렇게 요구를 한다. 교육부 인사관리규정에도 보면은 5년간 5년을 주기로 해서 순환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4년내지 5년을 교장을 이렇게 교장 장기근무를 이렇게 할 적에 생활근거지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또 고향인 교장선생님들 즉 영동, 옥천, 충주, 진천, 이쪽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은 뭐 5년, 5년을 거의 다 채우시고 또 이 제천이나 단양이나 이렇게 좀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2년이상 2년 이내에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보를 지금 억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을 권위원님께서 이렇게 요청을 해 주셨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4,5년씩 이렇게 장기근속을 억제한다 하는 것은 참 여러가지 또 인사업무상 어려움도 있겠고 최저 2년 이내는 안하겠다. 또 시군 형편에 따라서는 자기 생활근거지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5년을 채우고 그 시군에서요. 5년을 채우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번에 교사의 그 학교경영에 대한 참여도의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일전에 청주시에 모 국민학교가 이전됨으로써 그 학교의 역사 자료관을 하나 만들은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 학교가 6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인데 내년 3월 1일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61년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 학교경영의 문헌자료라든가 또는 상패라든가 또는 학적부, 문서자료를 등등해서 전부 모을대로 모아가지고서 전시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서 보고서 참 이게 교장선생님 한분이 이걸 감내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 교장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61년 전까지도 일정시대때, 그때 자료까지도 그때의 졸업증서까지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걸 보고서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학교의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참 제가 너무 선생님들이 오히려 혹사를 당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심정이 들을 만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우수사례는 제가 권위원님께 학교경영의 우수사례를 자료로 이렇게 저 제출해 달라면은 뭐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문제는 중등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주민의 참여도, 이것도 한번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며는, 아까 박병해 위원님께서 그 세부계획을 세울 적에는 특별활동에 대해서 자원 인사를 초빙할 적에는 그 기초조사, 어떤 자원이 있느냐 그런 걸 잘 조사를 해서 예산까지도 수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원군에 오석국민학교라고 거기 있습니다.

그 금가면, 금가면인데 거기에는 그 공군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60세대가 공군부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 학부모들 중에서 60세대 학부모 중에서 대학출신자가 26명입니다.

이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유아교육과 출신이 여섯, 또 회화과 출신 넷, 또 음악가 출신 뭐 다섯, 이렇게 해서 컴퓨터 전산학과 전공 넷, 이렇게 해서 26명이나 되요. 학생수가 121명인가 되는데 그런 자원이 있습디다. 그걸 교장선생님이 전부 명단을 가지고서 거기에 알맞는 이러한 컴퓨터, 또 거긴 회화를 합니다. 회화, 또 회화하고 컴퓨터하고 그러면 그 자원인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래 앞으로의 학교 교육과정 작성에 있어서 자원인사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사의 명단 기초조사는 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우리가 교육적으로 초청해다가 도움을 받을 거냐 하는 게, 계획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평가 교육자치실현 정도를

이 학교평가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뭐 제가 평가하는 항목이 전체가 잘 되면은 이건 교육자치가 잘 된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항목내준 것이 다 우수한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면은 이건 참 교육의 본질 측면이나 교육자치 측면이나 이건 뭐 만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떤 항목 하나는 이건 교육자치를 잘한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사 공문처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졌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장학사 있을 때도 역시 공문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반직이 각과에 있어서 학사계가 있습니다.

또 장학과들은 그 장학과에 그 학사계 직원들이 일반직들이 있어서 뭐 장학사의 공문처리하고 어떤거는 그런 것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공문서 처리에만 억매이는 그런 실정은 지금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권혁풍**

그럼 조금만 더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에 제대로 질문을 못드린 건데 그 평가부분에 관해서 그 서울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아, 혹은 특별활동, 특별활동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봉사활동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평가부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봉사까지도 그 평가대상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대학에 그럼 그 기숙사가 있어서 교사들을 기숙을 시키면서 하는 것인가, 또 한가지는 교육자치라는 그런 유인물을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학교운영자문회의 운영에 관해서 그 기능에 자문과 정보와 지원등을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원까지도 협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청주 예술고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참 우리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개인연습실이 없는 실태입니다.

좀 있어도 부족한 실태, 전연 부족한 실태다. 예를 들어서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전공까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이 어디가서 노래를 부를 때가 없어서 운동장 귀퉁이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웃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혹은 그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 그 자기 연습실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든가 혹은 겨울에 그 난방 시설이 안돼 가지고 추워서 바이올린을 켜야 할텐데 손이 참

곱아가지고 바이올린을 못 켠다든가, 이러한 실정에 있어가지고서 정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할까, 그 학부형으로부터 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자청의 얘기가 있어도 교장선생님이 이게 겁이 나서 어떤 그 제재를 받을까봐 이건 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지원까지도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하면은 가능한 건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예산이라고 하면,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서 미쳐 우리가 못봐 주고 있는 그런 그 시설을 학부형들이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도 가능한 것인가, 요것도 한번 물어보겠고 또 한개는 교장선생님께서 그 지역사회의 학교로써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지역의 그 조정역할, 혹은 선도역할 해서 과거에는 참 어떤 그 기관장 회의를 해도 교장선생님이 저 뒤에 가서 그냥 시끈뜨끈만 오고 하는 그런 사례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 지역의 현안들을 조정해 주고 선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 사회봉사 활동한 것을 우리가 교육성적으로다가 평가를 해 줄 것이냐, 특별활동 교육성적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11월 18일날 이 법정 장부인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서식이 이게 바뀠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역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쪽으로 그 서식이 대폭 글로 전환이 됐드라고요. 예를 들면은 석차란을 없애 버렸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석차란이 아주 없어졌어요. 그리고 서술식으로 쓰도록 돼 있고 또 그 생활기록부 취급요령에 보면은 특별활동란에 사회봉사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취급요령에 아주 못이 박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기록부 이 개정으로 말미암아 이 특별활동이라든가 이 생활기록부에 교육성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 위원 권혁풍

점수화 될 수 있단 말씀이죠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점수화가 아니라 서술식으로 이렇게, 지금 뭐 점수화는 거의 지양하고 있습니다.

석차가 없어졌어요. 예 국민학교 측에서는 석차가 없어졌어요. 몇등에 얼마다,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강조가 될 걸로 알고 있고 교대 기숙사는 그 거기에는 1급 정교사 자격강습에서는 저희가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자문협의회 여기서 자문협의회에서 그 학교 지원까지도 그 협의 대상이 되

겠느냐 또 교장의 지정에 지역이, 조정역할까지도 이걸 어떻게 하는거냐, 그런 말씀인데 이거 김응복위원님이 학교교육 자문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게 있으십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문협의회에서는 이 학교를 지원하는 문제가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뭐 이 문제는 거기서는 지금 현재 기부금 통계로 봐서 이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걷어서 이 학교를 지원해 주자 하는 문제는 협의를 못할 걸로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좀 잘 알아서 개별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 **위원 권혁풍**

고맙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 **의장 김영세**

더 보충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우리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예 지금 답변해 주실 분이 여섯분인데 이제 세분 마쳤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루하게 됐는데 우선 먼저 시간이 지루했기 때문에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개시에 말씀드리겠지만서도 보충질의는 10분 안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요점위주로, 이렇게 부연을 달지 마시고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해서 10분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권혁풍위원님께서 보충수업에 대한 시정성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충수업은 희망자 희망교과에 한해서 지도 운영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누차 저희들은 원칙대로 하도록 지도 강습을 하고있고 학교의 사정은 예를 들면 중학교에 3학급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 3학급짜리는 정원이 10명입니다.

교과별로 각 1명밖에는 정원 배정이 안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영어를 시간표를 만든다 할 때 1,2,3학년 세사람의 영어 교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리하게 다른 교과를 희망하지 않는 교과를 삽입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일선에 대해서 더 강도깊은 지도 강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부형 자문협의회에서 재정지원이 협의되고 논의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명칭 자체로는 논의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 중에서 독지가가 있다며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역의 교장들이 지역현안 문제를 주도하고 해결하는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각 교장의 역할,능력 수단 그런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에 중등교육국장 소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더 답변이 있어요.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 **의장 김영세**

에, 계속해서 하세요.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먼저 이상일위원님께서 청주중학교 야구부 학생 학교배정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세광고등학교로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근거는 체육특기자는 교육법시행령 112조 11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 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을 또 정원을 교육감이 지정을 해서 배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우리 본도의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기준을 정하고 그 거기에 의해서 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배정된 내용에서 계열별 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배정을 하도록 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는 청주중학교 졸업생은 청주기계공고로 세광중학교 졸업생은 세광고등학교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축구같은 경우, 대성졸업생은 청주상고로, 운호중학교 학생은 운호고등학교로 배정을 하는 개요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주중학교 재학생이 세광고등학교로 배정되지 못한 이유는 개요를 준수하는 체육특기자 심사위원의 적극적인 찬성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야구 발전을 위해서 또는 다른 종목의 안정과 학생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계열별 진학이 필요하

다. 이러한 결정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배정과정이 들으시고 싶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시간관계상 배정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취할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법과 제도와 규정의 범위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는 면을 학부형에게 충분히 이해하고 또 특기자 배정에서 탈락된 학생을 학부형이 그들의 진로를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몇차례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교육자문협의회에 대해서 네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학교교육 자문협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나눠 드렸기 때문에 목적이나 취지나 기구의 구성 여러가지 면에서는 생략을 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문협의회의 위원을 육성회 총회에서 선출할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육성회에서 학생들 자문협의회 위원을 선출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형편을 보면은 육성회가 3월에 정기총회를 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참석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육성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육성회나 어머니회 등 여러가지 회합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일원화할 의사는 없느냐 그런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각기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성격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들이 그 육성회나 어머니회에 임원을 겸하는 그런 면에서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학교교육 자문협의회를 시·군별로 연합회를 구성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행정자문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이나 학교의 규모나 성격이나 여러가지 면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도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학교자문위원회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 되고 그런 시기에 가서는 검토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학교운영에 대해서 감시적인 기능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감시적인 기능보다는 그거는 간접적인 면이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학교자문교육협의회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서 교장을 돕는 자문역할을 하는 또 지역사회의 학부형들의 교육욕구에 의해서 즉 교육고객에 대한 교육자와 협의가 되어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반의 취업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첫번째 질문은 '93년, '94년 직업계에 입사시험에 의해서 합격된 취업자수와 두번째 '93년, '94년에 무시험 추천에 의해서 취업된 수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93년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25개 학교입니다.

자체운영하는 학교가 12개고 입학교육을 하는 학교가 19개 학교입니다.

여기에 자체운영을 하는 학교는 전부 상업계열에 속합니다.

학생수는 659명이었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484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입사시험에 의해서 합격을 한 학생은 12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무시험에 의해서 취업을 한 학생의 수는 363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484명 모두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입학교육을 한 19개 학교는 공업계열 학생입니다.

여기에 학생은 502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수는 489명인데 여기는 입사시험에 의해서 취업하는 학생수가 전혀 없고 무시험 추천에 의해서 489명 모두가 취업이 되어서 100% 각기 취업이 되었습니다.

'94년도 금년은 아직 현장실습 중에 있기 때문에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11%정도는 현장실습한 직장에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비율을 받고 있는 학교가 19개인데 여기에도 역시 454명 모두가 희망을 하고 있지만은 역시 전문기관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 취업이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직업과정을 운영을 해서 기능인력에 다소나마 충당하는 그러한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번째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폭화 되고 있는데 학생 교외생활지도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도록 도덕성회복의 대책은 무엇인가하고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사회지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소상히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학교 담임위주의 생활지도를 하고

다음에 1학생 1교사 결연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고 또 학교자체의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고 또 지역별로 교외생활 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고 특히 청주시내는 16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이 경찰과 동사무소, 연계해서 특별지도를 가하고 있고 또 마을 명예교사제도를 위촉을 해서 협조를 받고 있고 각종 진로문제나 청소년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원봉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입시교육이나 가치관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졸업발표제를 실시를 해서 그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최대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갖은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 동원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생활지도문제가 야기되기는 합니다만 이제 우리 사회는 학교만의 교육으로서는 그 한계를 넘었다 라고 자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각 학교가 되어야 하는 즉 사회의 학교화를 저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도 지금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개탄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첫째로 기본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문제학생에 대해서는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각종 청소년 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학생 1단체 가입, 그리고 간부학생 수련활동, 또는 생활관 교육, 또는 명상의 시간 운영, 효행의 날 운영, 가정의 달 운영, 충청문화 답사, 조국의 순례대행진, 전방시찰 등등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인간성을 회복하고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또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년말 중에는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유교문화 시절에는 이와 같이 심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외래문화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전통적인 윤리가 손상 당하는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유교문화 우리가 온고지신하는 그러한 자세로써 인본주의를 찾는 이러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을 위촉하고 개발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심보감이라든가 소학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사서오경이 중요한 우리 예절교육을 가르치는데 좋은 자료들을 발췌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일선

에 보급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립 정원의 차이에 의해서 사립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동일한 사립학교에 동일한 규모의 공립학교 정원과 비교할 때 사립학교는 공립의 91.6%에 미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94.1%로써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보면 93.2%에 미치고 있습니다.

약간의 수업부담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95학년도에 약간의 정원을 계획하고 있고 '97년도까지는 공사립이 동일한 수준의 정원 배정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번째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과목별 차출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또는 대책은 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차출실태는 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교원연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에 의해서 교과목별 교감자격취득 기회의 균등을 유지하거나 교과목별 교육전문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할 때는 계열별로 응시대상자를 명부를 만들어서 차출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차출기준은 저희들이 하고있는 기준은 연수대상자의 과반수 2분의 1을 교과별로 관계없이 최고 득점자 순으로 지명을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관리직 그리고 교과목별 비례에 의해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교과간에 지명되는교사의 경력의 차이가 좀 나타난다 하는 거하고 다음에는 연수를 한 후에 연수후보자 명부작성 때와 달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은 그때에 순위가 달라져서 전년도에 연수를 했지만은 금년도에 연수를 한 사람보다 순위가 뒤쳐지는 일이 간혹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일부 교과에서 평정점이 상당히 높지마는 지명을 못하는 선생님이 다소 불만을 표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책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을 때 순위가 바뀌서, 연세의 상대가 뒤쳐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다 년도별로 선연수자는 년도 순위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먼저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승진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중등국장님 장시간 답변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일

아까 국장님께서 야구부 학생들 진학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체육특기자는 그들의 진학문제가 관계법과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이 없는 겁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특기자 선발과 배정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형이나 학생의 선발권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개별적으로 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법시행령 112조나 또 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각한다면은 계열별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그런 면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원의 범위내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는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정원이 모자랄 때 다른 학교에서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광고등학교에서는 지난 8월 29일에 저희들에게 어느 학교에 누구를 세광고등학교로 입학을 시키겠다. 배정을 요구한다 하는 영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12명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특기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그 시기에 17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명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17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도가 2명이 있고 야구가 15명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 계획에서 12명 누구누구를 받겠다. 이렇게 제한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데서는 갈 학생을 저희들이 숫자가 없습니다.

다만 청주중학교 졸업생이 있다는 것은 계열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정원을 12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심사 당시에 15명을 선정을 했지마는 조정을 해서 정원을 12명으로 배정했습니다.

그후에 이제 원서를 받고 보니까 청주중학교 졸업생 3명이 세광을 지망하여 정수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특기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세광중학교 졸업생 12명만 세광고등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청주중학교 3명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라도 청주중학교 야구부는 기계공고로 진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정입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일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새로 청중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야 계열별로 기계공고로 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 학생들은 청주기계공고로 배정을 된다는 걸 모르고 야구를 시작한거 아닙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그거는 학교를 통하고 또 부형들하고도 기회있을 때마다 통보를 해서 홍보가 되고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 이상일

그러면 아까 답변해 주실때 해결방안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라도 이 학생들이 도저히 야구부는 못하겠다 해서 중도포기하는 사태를 예측해 보셨는지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그걸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가 돼냐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그 방안에 대해선 학부형들이 양해를 하고 취해야 할 그런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구제를 할테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 위원 이상일

앞으로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 의장 김영세

다른 보충질의 예, 김웅복위원.

● 위원 김응복

제 질문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취급한 것 같고 이렇게해서 좀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잘하세요. 학교만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왔다. 학교교육의 사회화, 사회학교화,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 학교운영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제정토록 된 것이 바로 국장님이 지적하신 이것 때문에 이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선 육성회서 자문위원회를 선출한다는 거 이건 얘기가 안되죠. 학부형대표로써 접근해야만, 말하자면 위원회에 어필하는 거시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학부형 측면에서 나는 건의하는 거요.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고 많은 학부형 중에 누가 아느냐는데 그 방법은 네가지일 것 같아요. 대의원, 각 학급 대의원에서 선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여기서 그런 걸 지적하고, 그 다음에 3항중에 시·군단위 연합회 구성, 이 기능이 다르다보면 교육자들이 행정하는 것이 교육행정이죠. 그렇죠?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 위원 김응복

교육행정 빼놓고 뭐가 있어요. 바로 일선 학교,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게 바로 학교, 각급학교의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아, 그분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시군단위로 연합회 작성해서 그분들네들을 상대로해서 지금 책임 자문위원회구성한다는 것이, 어때요 국장님, 그게 기능별로 차질이 있어서 되지 않을거요?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제가 아.....

● 위원 김응복

아니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럼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응복

예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김위원님.....

● 위원 김응복

아니.....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앞으로 이 학교위원 자문협의회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 위원 김응복

예 그런 방향으로 몰고가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국장님도 시인하시죠?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예 시인합니다.

● 위원 김응복

예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요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예

● 위원 김응복

그 다음에 기능면에서 감시기능면에서 그 말하자면 학교운영 자문위원회에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적극적인 면에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문이라는 게 뭡니까? 자문이라는 게,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문에 응하는 동시에 건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건의, 바로 이 건의하는 그 기능을 살려서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자는 겨, 감시하자는 겨, 지금 내가 다 얘기 못해서 그렇치 폐교해서 학교운영 모순성 진단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거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해야 해요? 그런 것을 암암리에 감시하고 건의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겨, 마 그런걸 가지고 기능이 다르다고 못한다고 그러세요.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답변을 그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간접적인 감시기능 역할은 있으나 표면적으로 우리가 .....

바로 감사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 위원 김응복

건의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려서 학교장에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여하자는 겨.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응복

그것이 도덕교육이 됐든, 요즘 국민학교 선생은 그건 언론보도의 잘못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지만은 아이들 성폭력했다고 해서 뭐 자모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낯이 뜨거워서 어떻게 틀지를 못했어요. 이런 점, 저런 점, 아 폭력교사가 뭡니까 자기가 간수를 못해서 그렇죠. 그 여선생 등이나 슬슬 문대고, 얼마나 많아요. 일선학교 촌학교 선생 혼자 내려가, 이러면 내가 욕먹을지 모르지만은 에티게트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런데서 좀 건의 비슷하게 해서 방지하자는 얘기여 그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몰고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 감시적인 기능을 표면화해서 운영하자면은 학교에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응복

거부감보다도 앞으로 학교교육에 시시비비는 사실은 장학을 이런 제도를 하면 제도하에 기관에서 관여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법 이상으로 어떻게 거시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부형들은 아니 교육을 가리키는 내자식 가리키는 게 시원찮고 안된다는 데야 어떻게 햐 선생 여기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대책운동 당하면 어떻할 겨, 그런 것이 법 이상으로 힘이 있다 이거여. 바로 내가 느낀점이 이점여, 이점을 하여튼 감시를 해줘야죠.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교장과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교사에 대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응복

국장님.....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러나 노골적으로 감시기능을 표면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 위원 김응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항에 빠트린 게 있어요. 그건 중점적으로 학부모교육을 이렇게 하도록 재교육을 선정, 의식화교육 여러가지 교육을 하도록 그 예산편성에 보면은 25만부니, 몇만부니 그래요. 나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이러한 임원, 교육자 각급학교에 자문위원을 상대로 해서 말하자면 감시기능을 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까지도 시켜서 얘기하는 조항이 5항에 들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부를 망라해서 학부형 교육을 의도적으로 좀 하자 이거여.

제 건의는 이겁니다. 하여간.....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5항에 답변을 못들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 김응복

하여튼 하나씩 둘은 빼놓고.....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워낙 많다 보니까 뺀것 같습니다.

● 위원 김응복

제 질문에 대해선 소홀하신데.....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병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 위원 박병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설치되는 직업반, 시험을 보고 들어간 학생하고 안보고 무시험으로 들어간 학생을 대비한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직업반에 기왕에 들어 갈 학생들은 시험을 보든 무시험으로 들어가든 다 직업을 가질수 있도록 뭔가 학교에서도 강구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서 시험을 볼테니 너희가 와서 시험을 봐라" 이럴때에 직업반에 있는 아이들이 가서 시험을 보면 전부가 낙방입니다.

그리고 인문계 그대로 배운 아이들은 그대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안가고 시험을 응시를 하면 그 아이들은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볼때는 직업반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가리킬 때, 실기지도만의 수업을 탈피해서 시험을 봤을 때도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소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줘야 되 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거고, 또 그 다음에 이 생활지도관계, 현재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외생활에 한한 문제로써는 이날서부터 내려온 강령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지 교육계에서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구출을 해 보자. 이런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회화 학교화 돼야 한다. 이거 아주 참 좋은 말씀인데 이거 자체가 교육계에서 주체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각학교에서 교외생활지도하는 형태는 그거 비밀리에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양반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다니면서 교외생활지도를 하고 들어가고 계신가 또 좀 자세히 알려면 경찰순경들 한테도, 그런 방면의 계원들 한테도 자세히 알아보세요. 우리가 서면보고 그 계원들의 어떤 구두보고 뭐 이런걸 가지고 안이하게 있을 게 아니라 교육계에서 교외생활지도를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뭔가 강구대책을 해 주시면 이런 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그다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 위원 김광수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충수업에 관해서 좀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역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희망학과에 한해서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의 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에 많을 때는 그래도 지도교사들의 수당이 괜찮은데 적은 학교 이거 뭐 청주시라든가 시소재 학교는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읍의 학교는 괜찮다고 보지만은 면에 있는 학교같은데에 보충수업을 할 적에 학생들이 몇명이 안돼기 때문에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몇 안되는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해서 배울려고 하는 의욕은 있는데 그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대로 보충수업이 안되는 그런 데에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보충수업을 역으로 말해서 보다 적극화해서 지금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교외생활문제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보충수업을 더 적극화 해서 학생들에게 어느 기준이 있어서 한 학생에 얼마씩, 또는 교사에 지급하는 것도 한시간에 얼마, 이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보충수업 받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비를 더 받고 선생님들에게 더 많이 지급을 해 준다면은 보다 더 효과적인 보충수업이 되지 않겠는가 또 이 사교육비도 좀 줄어들테고 또 학교 교외생활문제도 어떻게 볼것 같으면 시간을 늘리고 하면은 이런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중등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이렇게 묻고요.

또 한가지는 도덕성회복이라든가 문제학습에 관해서 청소년지도 문제에 관해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년차별로 통계치가 지금 줄고 있는가, 안줄고 있는가 또 지역간의 유형과 사고 경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김광수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수업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학교실정에 따라서 약간의 수당지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열의가 적지 않느냐, 또 제대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수업시간 배당을 받고 시

간에 들어갈 때는 최선을 다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교단에 서면은 그런 잡념없이 지도내용에 대해서 충실을 기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교사의 인격, 체면, 여러가지로 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소 좀 과부담이 되더라도 좀더 높게 징수를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일괄해서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없고 지역별로 학교장 협의회에 이 문제가 건의돼 가지고 지역실정에 또는 학교실정에 알맞는 그런 수준을 책정을 해서 보충수업비를 징수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지도 문제에 있어서 사고사항이 년차별로 또는 지역별로 증감형태가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통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정은 현격한 증가는 없습니다.

거의 매년 비슷한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분 있어요?

예 시간이 얼추 됐습니다마는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춘응

예

● 의장 김영세

이상일위원께서 질문하신 체육특기자 계열별 진학제도에 대한 제도상의 체육특기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나는 이건 원칙적으로 잘못 됐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체육특기자를 계열별로 진학을 시켜서 그 선수를 보람되게 육성하고 우리 지역에 체육면도, 선수들도 향상을 시킨다. 그뜻에 동감은 하지만 그 제도 자체에서 물론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그 다음에 그 받는 학교에서 선수 재질을 보고 자기네 선수 티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은 다시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할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애들이 이걸 무작정 그냥 정해놓고 그냥 선택의 기회도 안준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언론이 무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한 계열별 진학제도의 원칙에는 동감을 하되 그 제도가 좀 보완을 요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말을 참고로 하셔서 될 수 있다면은 이것을 더 보완해서 일차적으로 선수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네들에게 선택의 기회도 주는 것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타당한 일이 아닌가 또 기본권에도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딴 양해로 의견을 제시해도 좋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춘응**

예

● **의장 김영세**

답변은 굳이 이야기를 안해 줘도 좋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춘응**

연구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죠?

(장충호위원 거수)

예

● **위원 장충호**

시간이 많이 가지않을까 삼가를 했는데 질의가 끝나는 모양인데 질의문만 제가 중등교육국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덕성회복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도록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말하자면 참 명심보감이라든지 나중에 사서삼경이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사서삼경을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 충효 이외에 정치, 경제, 여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상당한 한문지식을 가지고 본 사람도 물론 요즘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속이 깊은 뜻은 이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충·효하더라도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뜻은, 깊은 뜻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져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필요한거 학교가 필요한 거는 바로 그런점에 있다고 봅니다.

책만가지고서 뭐 한다는 것은 학교고 선생이고 필요없죠. 그래서 효도, 말하자면 어떻게 효를 하는지 효다 그거를 여러가지 연구를 해서 실제 아이들을 깊이있게 가르쳐줘야하는 나라에 충효하는 것도 꼭 목숨을 갖다 바치는 게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법을 입법하는 그 근본적인 입법취지 그 입법취지를 알고 법을 집행해야만이 올바른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태여 이 사서삼경까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의욕이 뭐라할까 과다하다 할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거고, 가만히 명심보감이라든지 또 부모은중경같은 거 알기 쉽게 하는 것도 또 깊이깊이 이렇게 새겨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춘응**

장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부다 동원이 되고 학생과 선생님이 가슴과 가슴, 마음과 마음, 손과 손이 서로 접하는 그런 가운데서 감화를 줄수 있는 자료를 개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요즘 학생들이 사단칠정 같은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치해서 그렇게 감화를 줄수 있는 자료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등교육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질문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집행청의 입장에서 관계공무원들 휴식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수고하시는데 이왕 진행된 거니까 이제 얼마 남은 시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이재희 교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독지가에 대한 미오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독지가에 대하여는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교육 유공자로 추천을 하거나 또는 송덕비를 건립하고 이분들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언론이나 이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송덕내용을 학교 연역지로 기록해가지고 영구히 보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거를 소홀히함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말씀하신 독지가 예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은 다수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관계로 이 문제는 좀더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제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번으로 질의하신 예산편성이라는 걸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는데, 그 이에대한 운영방안과 1억원이상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시설사업비 집행내역은 교육비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연차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으로써 사업 완공을 위해서 계속 투자가 불가피하거나 사업이 추가시행을 통하여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교육여건개선사업, 또는 교단지원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집행을 한다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적기집행이 곤란하며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확보등 예산을 동일목적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예산운영의

비능률성이 초래되는 결과를 가져옴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교육감의 승인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의 사용범위는, 당해 교육청 예산잔액을 당해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억원 재정집행내역을 배부해 드릴테니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의 기본운영비및 교육과정운영비 배분은 '94년 7월달에 저희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규모별로 총 60개 학교를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기본운영비및 교육과정운영비및 집행실적을 분석을 해서 배분한 내용입니다.

이건 배분비율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봐가지고 동비율에 의해서 예산차이는 분류하여 편성은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기본운영비및 교육과정운영비는 세세항으로 분류하기 위한 성질별 분류이지 새로운 과목의 신설은 아닙니다.

동일과목간에는 전형절차 없이 집행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 비율을 지켜야 할 성질은 아닙니다.

예산집행은 전권을 학교장 재량으로 위임을 하고 있으므로 교재교구의 확보는 학교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감사나 또는 장학지도를 통해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학생교육에 직접 관련있는 교구구입비등 교육과정운영비로의 집행, 증액되도록 지속적인 저희들의 노력과 지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필수시설이 부족함에도 현장시설에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현황을 보면은 필수시설인 보통교실은 저희들이 기준수를 보조해서 100% 확보하고 있고 특별교실, 특수활동실 관리실및 보건위생시설등은 기준수의 60%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를 연차적으로 학교실정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시설인 강당, 체육관 등은 전체 기본적인 교육시설에 비하면 1% 수준에 못미치는 현상입니다.

농촌지역및 도심지 공동화지역의 학급감소, 과대학교로의 학교시설여건 부적합등으로 특별교실 등을 전체학교에서 100% 확보하기는 어려운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교육시설도 필수시설의 100% 완수후에 확충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

문에 일정률의 비율에 따라서 현장시설도 보유를 해서 균형있는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덧붙임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풍위원께서 질의하신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등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상 교사는 보통교실, 특별교실, 특수활동실, 관리실, 보건위생실 등으로 구분이 돼서 본청에서는 연도별로 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교실 전체를 감안해서 작성을 하고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등 보건위생실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측에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요전에 신문지상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5.5%씩 내고 있는 비용부담을 7%로 1,2%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운 사정을 더받는 연금으로다가 충당을 할까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저희로써는 답변을 더 확실하게 드릴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면 관리국장소관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하십시요.

(이재희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 위원 이재희

교육의 독지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의 이양남할머니 장례식에는 마땅히 본청 국간부가 와서 조문을 하고 누가 있더라도 교육감 조사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내년 1주년 추도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한다고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걸 참고를 해서 교육감님이 참석하시고, 조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원 예산실적에 대한 걸 보았는데 여기서 좀 의문이 가는 것은, 같은 교육장 소속하에 있는 청주교육청인데 신축단가가 어떤것은 3천, 청주 수곡국민학교는 신축교실 3,200만원인데 또 가경동중학교는 4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천에는 남천국민학교 부실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신축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50%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데, 이 수리는 대개 신축의 어느정도까지 들어가야 효과적인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오며는 아주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승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도 일부는 수정이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천 남천국민학교는, 이게 좀 별관을 수리를 하는데 별관은 남향이고, 본관은 서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고 별관이 앞으로 아래층에는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다가 급식소를 차린다고 그러는데 남향인 그 교실에는 급식소를 세우고 서향인 교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차라리 다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지시를 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덧붙여 또하나 교육감님, 국,과장님 다 계셔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내무부는 서울의 그 남산의 외인아파트를 70년대 20억 드린 거를 1,500억원을 들여가지고 남산 복원사업으로 폭파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천국민학교는 작년에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18개 교실의 개·보수비용이 나왔는데 이게 필요없다고 예산을 반환을 하고 금년에 보수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기에 고대 말씀드린 대로 별관이 남향이고 본관이 서향여, 그러면 빨리 이런데는 본관을 남향으로 바꿔져야 하는 공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엄청난 착오가 있었는데 정정할 그런일은 없는지 묻고, 이상입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이재희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단가, 청주교육청의 단가가 달른거는 그건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층의 지금 건물 있는 거를 4층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다시 기초를 해서 올린다든지 하는 게, 단가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천국민학교 보수비 책정은 이게 반도 안된다고, 신축비의 반도 안된다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 노후도에 따라서 원칙으로 보수는 50% 이상이 넘어가면 보수를 하지 않고 개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50%이하라 보수가 이루어 지게 되는 겁니다.

● **위원 이재희**

아니 그게 지금 3억 2,990만원은 보수비로 18개로 나누면 교실당 단가가 보수비가 1,800만원 들어가는데, 내년도 급식소 보수는 별도로 또 개정을 하고 있다 이거여, 그럼 이거보다도 더 많으면은 신축되는 초부터 금년에 그 4천만원에서 8을 곱하면 3,600인데 3,600의 절반인 1,800보다도 높이가 더 높게 책정이 되는데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이거는 저희들이 제천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을 우리가 믿고 이걸 해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하며는 그거는 안 ……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천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이러한 사업내용을 갖고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 위원 이재희

아, 글쎄 내용은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상급관청이다. 이거요.

상급관청이면 그 하급관청에서 올라온 거에 대한 타당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으면 더 이걸 승인을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서 어차피 계획서가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결재를 하는 마당에서 이런게 지적이 됐어요.

● 관리국장 신재철

남천국민학교 보수공사는 하도 말썽이 많은데라 저희 직원을 일부러 파견까지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러한 비용이 든다해서 승인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이, 일부러 제가 이건 안되겠다. 나가서 확인을 해라 해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시켜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 위원 이재희

차라리 신축하는 게 더 안낫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데 6년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보수비를 주었더니, 아 개축비를 주었더니 못하겠다고 반입을, 반납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데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주는 돈으로도 못하느냐, 그랬더니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후에 보수를 한다고 이걸 올려놉니다.

그래, 어떤 행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느냐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를 갖고 저는 문책을 하라고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랬다가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내용인데 일관성있는 행정을 제천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런 어려운 저희들 입장에 서있어요.

● 위원 이재희

지역 교육위원이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리를 해가지고 남향교실을 급식소로 쓴다면 본관에서 별관의 급식소마는 다른 교실을 이용하는 것을 별도로 지시를 할 수 없는지.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작년에 제대로 착공이 안됐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죠. 국장님께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시고, 이위원하고 앞으로 개별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세요.

● 관리국장 신재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보충질의,

(김광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김광수위원

● 위원 김광수

지금 제천의 이재희 교육위원님이 지역교육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축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줬더니,그걸 안하고 올해와서 다시 돈 타간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싶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개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 위원 김광수

그렇다면 책임을 지야지요. 책임을 지우야죠.

● 관리국장 신재철

그 문제는 이미 행정적으로.....

● 위원 김광수

개축을 하라고 상당한 예산을 줬는데 필요없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도로 하겠다는 그런 교육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어디 이런거가 어디있어요. 그럼 그냥 쓰면 그냥 됐다는 것은 이거 한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아 저희들이 사유를 받고 다했죠.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정체계가 일관성이 있게 거의.....

● 위원 김광수

이거는 그 교육청에서 안일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교육청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낼수가 어디있어요.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볼적에 개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보라고 해보라고 했는데요. 그 필요없다고 하는 그러한 안일무사한 공무원이 어디있습니까? 교육감님이 이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안일무사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정인영

그 문제는 보다 정확한 진상을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예, 권혁풍위

원님.

● 위원 권혁풍

학교시설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특별교실이 1,342교실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족이고, 고등학교가 469개가 부족한데 이는 학교당, 학교당 고등학교가 몇개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당 평균 2,3개의 특별교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어쨌든 특별교실이 태부족인 상탭니다.

간신히 교실은 확보가 된 상태인데 이렇게 특별교실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전일제 특활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이런 교실도 특별교실도 없는데서 어떻게 전일제 특별활동을 하겠습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없는 활동은 이건 우리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시설에 권장시설의 투자율, 비율이 먼저 교육감님의 권장시설 투자율을 10%를 보고 넣으신 것 같은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기초실에 먼저 투자를 해서 권장시설이 10%라면 이를 5% 인하하여 나머지는 기초시설에 보다 집중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전일제 특활이라든가 특별활동을 좀더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돼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가 ?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 자체교실은 시설관리기준령이 바뀌어서 학교로 이 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실이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문제는 권장시설을 5%로 낮춘다 하는 거는 정책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지 못하겠고 앞으로는 이 문제는 특별교실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어떻게 이해 됐습니까? 권위원님 그러면 보충질의 더이상 없으시죠.

(권혁풍위원 "예"하고 말함)

예, 됐습니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주교육장.

(청주교육장 발언대로 나옴)

● 청주교육장 전태식

청주교육장 전태식입니다.

이상일 교육위원님이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학생수용 문제로써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 내년 3월 1일, 교동국민학교를 이전한다 해도 지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주해온 학생들의 수용문제와 또한 교동국민학교로만 학생수용이 문제가 없는지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는 '95년도 3월 1일 개교 예정인 수곡국민학교는 아파트 준공과 관련하여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창신국민학교와 인접해 있어서 학구문제로 주민들이 진정등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용암동으로 전입해온 학생들을 우선 용암동 학구인 청남국민학교와 운동국민학교로 각각 수용했다가 내년 3월 1일 교동국민학교로 학구를 조정할 계획이며, '94년 11월 22일 현재 청남국민학교의 203명, 운동국민학교의 39명, 총 242명이 전학을 하여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29일 완공하여 이전 개교하는 교동국민학교는 관리실을 포함해서 50실을 신축하여 전입해오는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과밀학급이 예상되지만 '96년에 36학급인 2개 국민학교를 용암지구에 신설하게 되면 용암택지내에 예상되는 5,200여명의 국민학교 학생들의 수용에 차질이 없을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수곡국민학교 학구문제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36학급 규모의 수곡국민학교는 산남 1의 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과 과대학교인 창신국민학교와 산남국민학교를 분리하여 학생을 수용코자 신설되므로 내년 3월 1일, 수용을 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학구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남국민학교 학구인 수곡동 63동에서 70동까지의 80동 1,460세대 인구 152명을 줄여서 학생은 597명을 수곡국민학교로 조정을 하는데에 이곳 주민들을 수용하겠습니다.

창신국민학교의 학교인 개신동 8동 8개통 1,232세대에 4,222명은 학생이 378명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수곡국민학교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반대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창신국민학교보다 수곡국민학교가 통학거리가 3백내지 4백미터가 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과 기존의 학교에서 전학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부담심리 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향후 학구조정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구조정문제로 여러차례 수곡국민학교의 홍보와 주민들의 설득,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94년 11월 28일, 어제 3시에 개신동 8개통 학부모 34명과 교육청에서 네사람, 창신국민학교 교장외 세사람 등이 창신국민학교에서 수곡국민학교의 통학구역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의견은 개신동 8통 800통 지역이 1년내지 2년전에 이주, 정착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한번 전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학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고학년은 제자리에서 졸업을 하

고 저학년은 옮겨가는 안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안은 기존의 학생들은 창신에서 다니고 앞으로 신입학하는 학생 120여명에 대한 것은 수곡국민학교로 가는 안도 의견을 제시한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위반자에 대한 환원조치 등의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수곡국민학교에 갈 수 있도록끔 학구조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됐을 때에, 학부모들의 걱정은 통학거리가 멀고 인도가 개설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도시설의 위험소지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시청에 인도개설 보도블럭을 설치,포장해 줄 것과 가드라인을 설치해 줄 것을 공문으로 시행,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 수곡국민학교에 좋은점을 계속 홍보하여 많은 학생이 이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끔, 국민학교 통학지역을 내년 1월 20일까지 청주시 각 통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94년 12월까지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의견을 들어서 학생수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만한 수용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뭐 보충질의.....

(이상일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 **위원 이상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동국민학교만으로는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95년후에 용암지구에 2개의 국민학교를 더 신설할 계획으로 있죠?

● **청주교육장 전태식**

예, 용정국민학교하고 용암국민학교입니다.

● **위원 이상일**

학교 부지는 책정이 돼있죠?

● **청주교육장 전태식**

말일이예요.

● **위원 이상일**

그러면 앞으로의 그쪽에 대한 학생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 **청주교육장 전태식**

예, 5,200명은 무난히 수용이 됩니다.

● **위원 이상일**

그 다음 25일 그 창신국민학교하고 수곡국민학교 학구조정때문에 공청회를 한거로 알고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

● **청주교육장 전태식**

지금 말씀드린 통학거리가 멀다. 교통의 위험성이 있다. 한 1년내지 2년전에 한번 전학한 경험이 있는데 또 보낼 수가 있겠느냐, 요런 말씀들이 의견이 있으시면서, 반대로 전학년을 옮겨가는 거, 그 다음에 고학년 놔두고 저학년 어린이 가는 거, 또 하나는 기존의 학생들은 놔두고 1학년 120명만 옮겨가는 안, 이러한 등등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

다.

앞으로 충분히 접촉을 해서 좋은 학구운영 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영세

내가 청주시 출신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의를 해야겠어요.

에, 우선 투자순위가 지금 시급한 것은 용암동 택지개발지역이지 이 수곡동 산남동에는 아직 아파트가 다 완성이 안됐어요. 그러면은 아직 충원도 안되는 학교가 미리 된 거 아니냐, 그래 투자순위가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수곡국민학교 모집정원이 다 차겠느냐, 지금 학구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쪽에 아파트 전혀 안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파트 준공이 안돼 있어요. 이렇다면은 오히려 그 투자순위의 완전히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청주교육장 전태식

예, 지금 수곡국민학교에는 산남 제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 59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월과 5월 전에 입주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신국민학교하고 산남국민학교는 과대과밀 학교입니다.

산남국민학교는 60학급 2,210명, 창신국민학교는 61학급 2,740명입니다.

그래서 산남국민학교에서는 이미 570여명의 학생이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학년 초에 개교일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니까 산남국민학교는 이러한 민원이 없어요?

● 청주교육장 전태식

예, 거기는 더 보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왜그러냐하며는 시청각실 생기지, 또한 급식소가 생기지 산남국민학교, 급식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동도 떠가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면 내년에 수곡국민학교 전수 인원이 다 차게 되겠습니까?

● 청주교육장 전태식

창신국민학교에서 한사람도 안준다 라고 그러면 1,200명이 모집인원이 될 것이고, 창신국민학교에서 일부 120여명을 준다고 하면 1,300명이 늘것입니다.

● 의장 김영세

창신국민학교 학부형들은, 지금 학생들은 전학을 하지말고 .....

뽑아달라.

● 청주교육장 전태식

뭐 그거와 관련한 것도 있고, 저학년만 데리고 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은 상당히.....

● 의장 김영세

또하나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명이 말이죠. 산남국민학교하고 수곡국민학교가 교명이 바뀐것 같아요. 그리고 산남국민학교는 오히려 수곡동에 소재해 있고, 산남동에 소재한 이 산남국민학교가 저, 수곡국민학교로 되어 있어요. 교명이, 그래 이것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지명이 각기 위치가 교명이 혼돈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느끼지 않으세요?

● 청주교육장 전태식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산남국민학교에는 우체국, 지서, 모든 기관이 산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남 주민들이 왜 우리가 수곡이지 산남으로 되느냐, 이거 고쳐주시오, 수곡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오고간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산남국민학교에는 졸업생들이 3회 배출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고 아직 저희들 감독청인 도교육청에도 의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차 좋은 결과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건 조금 검토할 과제가 산남동에 있는 학교는 수곡국민학교로 되고, 수곡동에 있는 학교는 산남국민학교가 돼 있어요. 이거는 지명상으로 바꿔줘야 돼요. 졸업생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청주교육장 발언대로 나옴)

그럼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기타 다른 말씀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휴식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금번 제43회 임시회는 다른 회기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건수의 의안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질의, 의결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당초 제출된 4건의 의안 이외에 추가로 제출된 4건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회의였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되는 의안이 신중하고 계획성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각종 안건이 집회공고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3시 48분 산회)** 이상으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폐회)**

○ 출석위원 : 10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7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상찬,	시설과장 박성근.	

(별첨1)

議 事 日 程(案)

第 43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1994.11.25 -11.29.(5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4.11.25(금) 11 : 00 14 : 00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5.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제안설명 6.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제안설명 7. 영동도서관이전계획안 제안설명 8.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9. '94.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0. '9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제1차 본회의 산회 】 ※ 소위원회활동 o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회 기 11.25 -11.29 (5일간)
11.26(토) - 11.27(일)	【 본회의 휴회 】 ※ 소위원회활동 o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11.26)	

議 事 日 程(案)

第 43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1994.11.25 -11.29.(5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1.28(월) 11:0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제2차 본회의 산회 】 ※ 소위원회활동 ㅇ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1.29(화) 11:00	【 제3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2.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3.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의결 4.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의결 5. 영동도서관이전계획안 의결 6.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7. '94.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의결 8. '9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 의결 9.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10. 기타 안건 처리 【 제3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별첨2)

의안번호	제 47-1 호
의 결 년 월 일	1994. 11 . 29 . (제 47 회)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1994. 11 . 17 .

법무담당부서심사필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1

제출년월일 : 1994. 11. 1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산업기자재의 공동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충북공업고등학교 (청주시 가경동 666번지)에 추가로 설치함 (안 별표).

□ 개정근거

교육부 교육기관 설치승인 (지기 12200-887, '94. 11. 3.)

□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ㅇ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ㅇ 교육부 교육기관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 덧붙임

○ 예산조치상황

구 분	항 목	금 액	비 고
국 고	기자재구입	734,185,000원	
자체예산	운 영 비	13,830,000원	'95. 예산에 계상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충북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된 공동실습소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설 치 학 교	위 치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1동 322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79
	충북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666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교육부 교육기관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 덧붙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명칭및위치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명칭및위치

명 칭	설치학교	위 치
(	생 략	)
(생 략)	(생	략)
	(신설)	(신 설)

명 칭	설치학교	위 치
(현	행과 같음	)
(현행과	(현행과	같음)
같음)	충북공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66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충북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된 공동실습소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승 인 서

사본

충청북도교육감

지기 12200-887

과기 81330-786('94.9.7)로 제출한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승인 신청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함.

1994. 11.3 .

교 육 부 장 관

승 인 사 항

1. 설치목적 : 공업계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들에게 최신첨단 산업기자재의 공동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 신장

2. 명 칭 :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3.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666(충북공업고등학교 구내)

4. 시설규모(계획) : 건물 1,032㎡(CAD 외 3개소)

5. 개관예정시기 : 1995년 10월경. "끝"

(별첨3)

의안번호	제 43-2 호
의 결 년 월 일	1994. 11 . 29 . (제 43 회)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1994. 11 . 17 .

법무담당부서심사필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2

제출년월일 : 1994. 11. 1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 충청북도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토지 합병으로 번지를 변경함.

○ 증평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증평도서관을 설립함.

○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774호, '94. 8. 3.)에 의거 해당 시에 소재한 도서관 및 야영장의 주소를 변경함.

□ 주요골자

○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번지중 '613-8'을 '38-6'으로 함 (안 별표1).

○ 증평도서관을 신설함 (안 별표1).

○ 중원도서관의 위치중 '중원군'을 '충주시'로 함 (안 별표1).

○ 부칙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별표 1]의 위치난중 '중원군'을 '충주시'로, '제천군'을 '제천시'로 함 (부칙안 제2항).

□ 개정근거

- ㅇ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 (교육기관의 설치)
- ㅇ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 (설치 승인)
- ㅇ 교육부 교육기관 설치 승인 (지기 12200-887, '94. 11. 3.)
- ㅇ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등)
- ㅇ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 774호)

□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ㅇ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ㅇ 증평도서관 설립계획서 : 덧붙임
- ㅇ 교육부 증평도서관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 덧붙임
- ㅇ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휴관일)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별표1]의 위치난중 "중원군"을 "충주시"로 하고, "제천군"을 "제천시"로 한다.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도 서 관 명	위 치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북 청주시 사직2동 38 - 6
충주학생도서관	충북 충주시 성내동 182
중원도서관	충북 충주시 주덕면 신중리 130 - 3
제천도서관	충북 제천시 화산동 103
청원도서관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81 - 3
보은도서관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390 - 1
옥천도서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3
영동도서관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7 - 25
진천도서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옵내리 350 - 2
괴산도서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59 - 12
증평도서관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44 - 2
음성도서관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
금왕도서관	충북 금왕읍 무극리 53
단양도서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1033 - 1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1), (2)

□ 증평도서관 설립계획서

□ 교육부 증평도서관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 (1)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7조 (생략)	제1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휴관일) ①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2. 매월 17일 ②기타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월요일로 한다. 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휴관일)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 제17조 (생략)	제9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별표1]의 위치난중 "중원군"을 "충주시"로 하고, "제천군"을 "제천시"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명 칭	위 치
충청북도중앙도서관	····· ···613-8
(생 략)	(생 략)
중 원 도 서 관	···중원군 ·····
괴 산 도 서 관	(생 략)
(신 설)	(신 설)
(생 략)	(생 략)

[별표 1]

명 칭	위 치
·····	····· ···38-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충주시 ·····
·····	(현행과 같음)
증 평 도 서 관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44-2번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2)

(부칙 제2항에 의거 개정되는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1조 ~ 제15조 (생략)

[별표 1]

<table>
<tr><th>명 칭</th><th>위 치</th></tr>
<tr><td>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td><td>(생 략)</td></tr>
<tr><td>중 원 학 생 야 영 장</td><td>. . . . 중원
군 . . . . . .
. . . . . .</td></tr>
<tr><td>제 천 학 생 야 영 장</td><td>. . . . 제천
군 . . . . . .
. . . . . .</td></tr>
<tr><td>(생 략)</td><td>(생 략)</td></tr>
</table></td><td>제1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별표 1]

<table>
<tr><th>명 칭</th><th>위 치</th></tr>
<tr><td>. . . . . .</td><td>(현행과 같음)</td></tr>
<tr><td>. . . . . .</td><td>. . . . 충주
시 . . . . . .
. . . . . .</td></tr>
<tr><td>. . . . . .</td><td>. . . . 제천
시 . . . . . .
. . . . . .</td></tr>
<tr><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able></td></tr>
</table>

증평도서관 설립계획서

1. 설립사유

괴산군에는 읍지역이 괴산읍과 증평읍이 있으며, 괴산읍에는 도서관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증평읍은 괴산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8,327명의 학생과 31,939명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임.

2. 목 적

문화시설이 없는 증평읍에 도서관을 설립하여 증평지역의 학생들에게 좋은 면학 공간을 확보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 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함.

3. 명 칭 : 증평도서관

4.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44-2번지

5. 시설면적

o 부 지 : 992㎡

o 건 물 : 1,038.51㎡

- 지하 56.25㎡, 1층 483.75㎡, 2층 498.51㎡

6. 시설현황

구 분	열람실	서 고	시청각실	관리실	기 타	비 고
수 량	4 실 (390㎡)	1 실 (144.6㎡)	1 실 (42㎡)	2 실 (90㎡)	(371.91㎡)	

7. 연간예상 이용자수 : 75,000명

8. 착 공 일 : 1994. 7. 6.

9. 준공 예정일 : 1994. 12. 31.

10. 현재공정 : 골조공사 완료, 벽바르기 및 문틀공사 중

11. 열 람 석 : 200석

12. 개관 예정일 : 1995년 1월

13. 정원 확보계획

구 분	인 원	확 보 계 획	비 고
행 정 직	1	자체책정	교육행정 6급
사 서 직	2	〃	사서 7급, 9급
기 능 직	2	자체조정	기능직 10등급
계	5		

14. 소요재원 확보계획

- ㅇ 부　　지 : 충청북도교육청 소유 (증평국민학교 관리)
- ㅇ 건 축 비 : 798,421천원 (국비 220,000천원, 도비 578,421천원)
- ㅇ 운 영 비 : 94,871천원 ('95. 당초예산에 확보)

15. 설립방법

충청북도교육청 소유 토지에 증평출장소가 건물을 신축(내부시설 및 도서 포함)한 후 충청북도교육청에 기부채납 함.

16. 지 적 도 : 별 첨

17. 건물평면도 : 별 첨

증평도서관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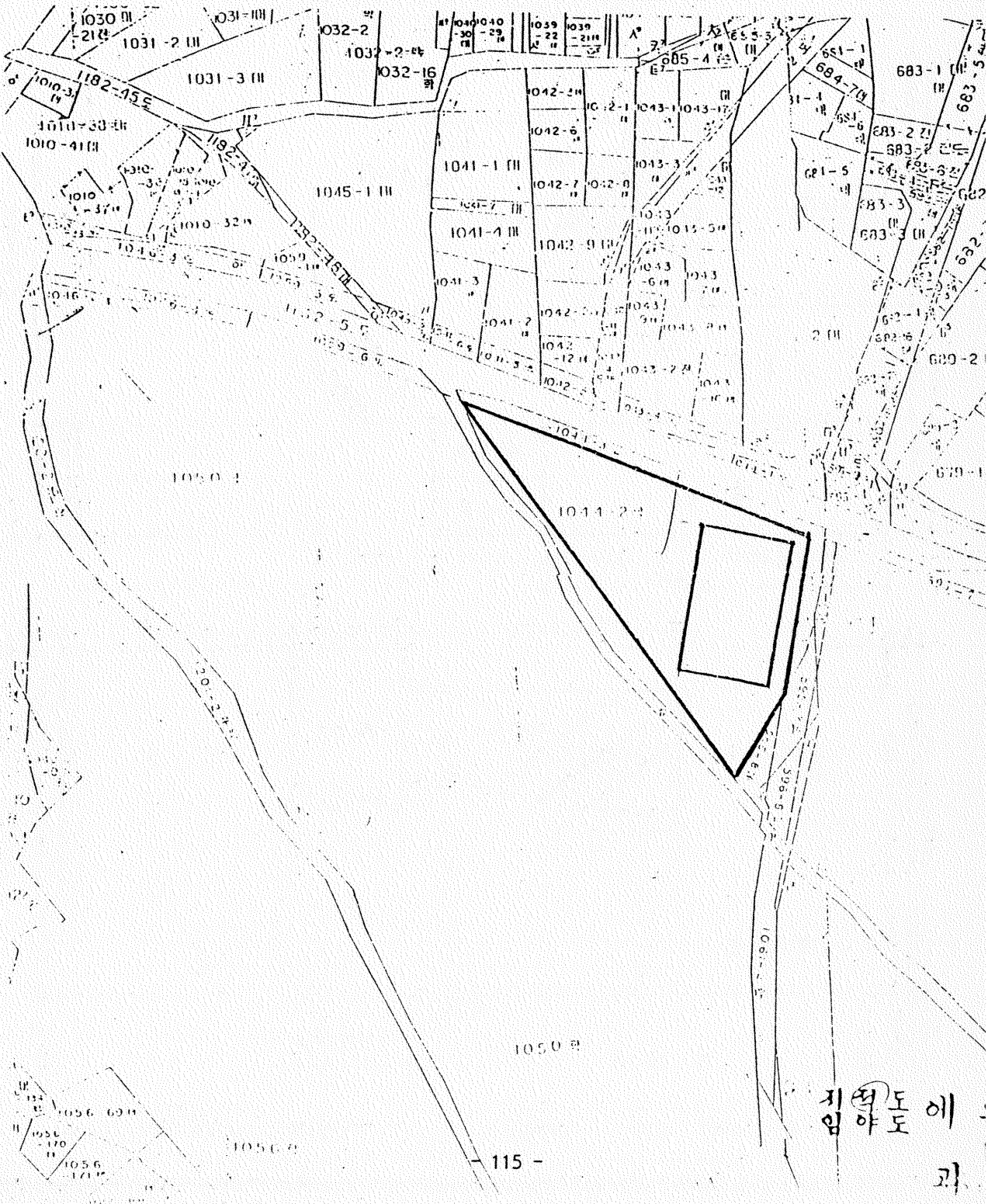

지적도에
임야도에

증평 도서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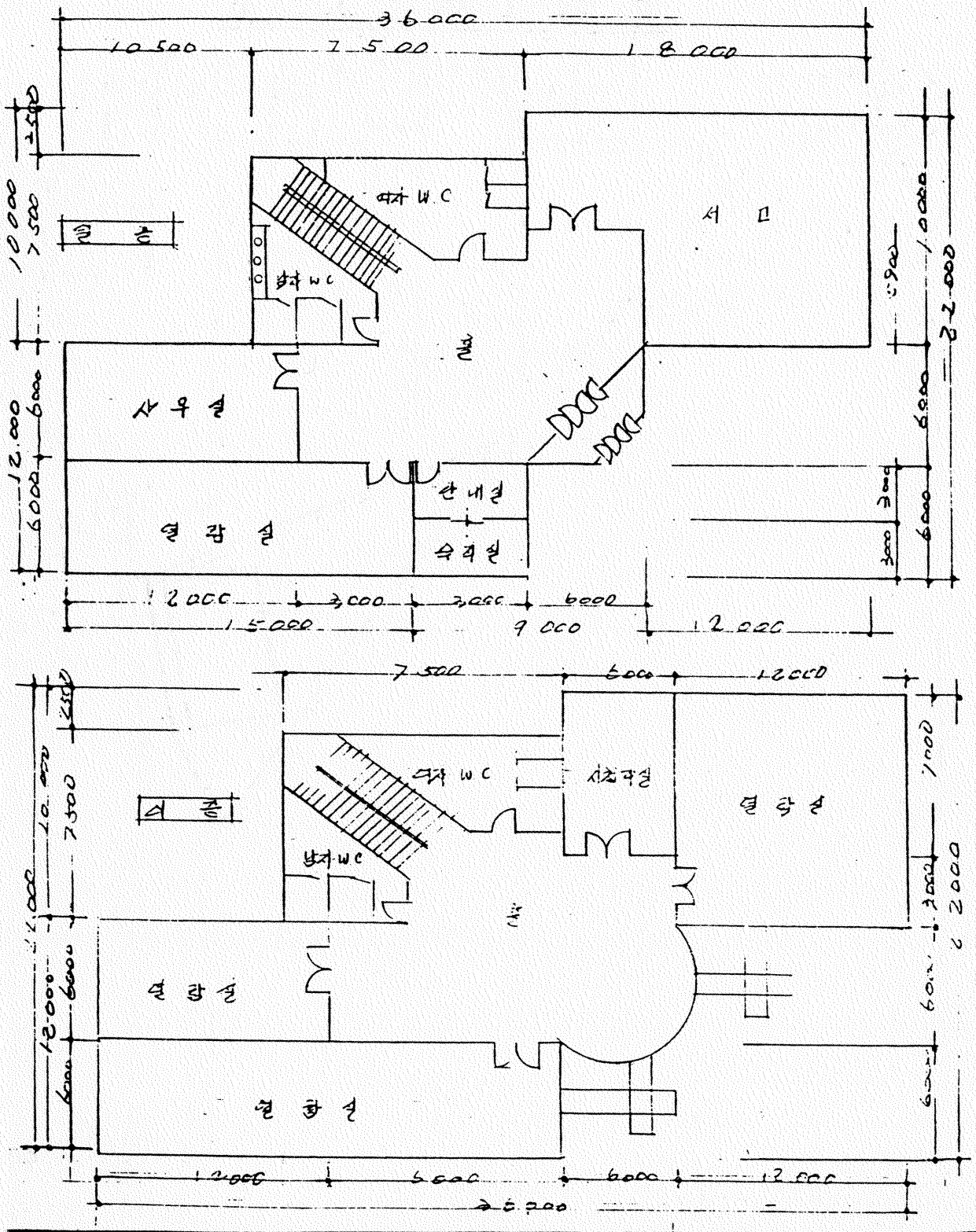

승 인 서

지기 12200-887 충청북도교육감

시회 01600-1134('94.9.29)로 제출한 증평도서관 설치승인 신청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함.

1994. 11. 3.

교 육 부 장 관

승인사항

1. 설치목적 :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교육.문화활동 공간 확충

2. 명 칭 : 증평도서관

3.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44-2

4. 시설규모(계획) : 부지 992㎡, 건물 1,038.5㎡, 열람석 200석

5. 개관예정시기 : 1995년 1월경. "끝"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교육기관의 설치) ①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감이 제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시·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여야 한다.

□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충청북도 충주시등의 설치) ①충청북도의 충주시·제천시·중원군 및 제천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충청북도에 충주시 및 제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 할 구 역
충 주 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충청북도 충주시 일원과 중원군 일원
제 천 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충청북도 제천시 일원과 제천군 일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와 군(이하 "폐지시·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이하 "신설시"라 한다)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별첨4)

의안번호	제 43-5 호
의 결 년 월 일	1994. 11 . 29 . (제 43 회)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1994. 11 . 27 .

제천도서관 이전계획안

의안 번호	4기-5

제출년월일 : 1994. 11. 2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이전 목적 및 사유

o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지식·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설로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o 현재의 제천도서관은 제천시 소유 "제천문화회관"의 3,4층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회관의 각종 행사시 소음이 심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현관 사용이 통제되는 등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이 어려우므로,

o 제천도서관을 '95 . 3. 1. 폐교되는 청전국민학교 부지에 이전 신축하여 제천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제천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이전시기 : '95. 10월중(예정)

3. 위치

o 이전위치 : 충북 제천시 청전동 470번지 (현 청전국교 부지)

o 현 위 치 : 충북 제천시 화산2동 103번지 (제천문화회관 3,4층)

4. 기존도서관 활용계획

o 제천시에서 '95년도 예산으로 매입토록 협의가 이루어져 제천시에 매각 예정

5. 현 도서관 시설현황

o 부　　지 : 제천시 소유

o 건　　물 : 1,190㎡

o 시설현황

구　　분	실수	면　　적(㎡)	좌 석 수	비　　고
열 람 실	3	673	420	
사 무 실	1	66		
휴 게 실	1	46.2		
계단, 기타		404.8		화장실, 계단, 창고 등
계		1,190.0	420	

6. 이전 도서관 시설계획

o 부　　지 : 2,600㎡ (현 청전국교 부지)

o 건　　물 : 2,561.43㎡(1층 : 1,389.19㎡, 2층 : 1,172.24㎡)

o 시　　설

구 분		실 수	면 적(㎡)	좌석수	비 고
열람실	일반	1	485.06	150	
	참고	1	272.75	98	
	청소년	1	222.75	130	
	아동	1	270.68	95	
	접자자료	1	79.12	17	
	시청각자료	1	55.86	17	
	컴퓨터정보	1	104.63	30	
	계	7	1,490.85	537	
시청각실		1	125.35		
집회·전시실		2	100.80		
음악감상실		1	62.00		
체력단련실		1	57.89		
사무실		1	117.70		
당직실		1	36.00		
전기·기계실		1	99.97		
계단·기타			470.87		
계			2,561.43	537	

7. 정원 운용계획

구 분	현 정 원	소요정원	비교증감	비 고
행정직	3	3	·	기 존 정 원 활 용
사서직	2	2	·	"
기능직	5	5	·	"
계	10	10	·	

8. 소요재원 확보계획

o 총 소 요 예 산 : 14억원

o '9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 8억원 계상

o '9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 6억원 계상 예정

9. 이전 후 기대효과

o 제천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

o 제천 지역의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

o 도서관이 수영장과 같은 구내에 있어 이용자들이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

10.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

o 교육부 승인(교육기관 이전)

o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개정

11. 기타 참고사항

o 위치도 1부.

o 지적도 1부.

o 현 도서관 평면도 1부.

o 이전 도서관 평면도 1부.

o 도서관 매입 관련 공문사본 1부.

도서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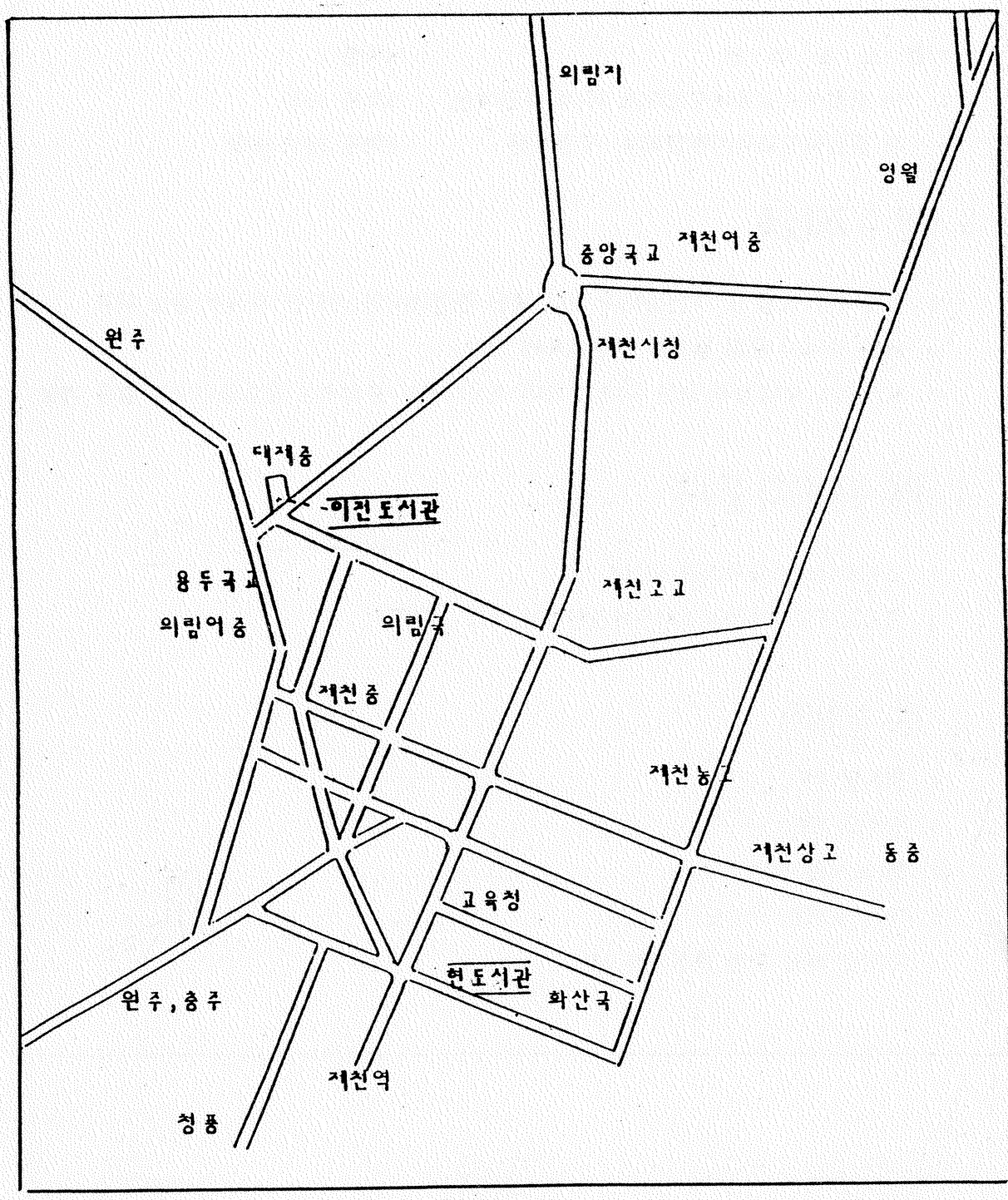
외림지
엉월
중앙국교
제천여중
원주
제천시청
대제중
의천도서관
용두국교
제천고교
의림여중
의림국
제천중
제천농고
제천상고
동중
교육청
현도서관
화산국
원주, 충주
제천역
청풍

이전 도서관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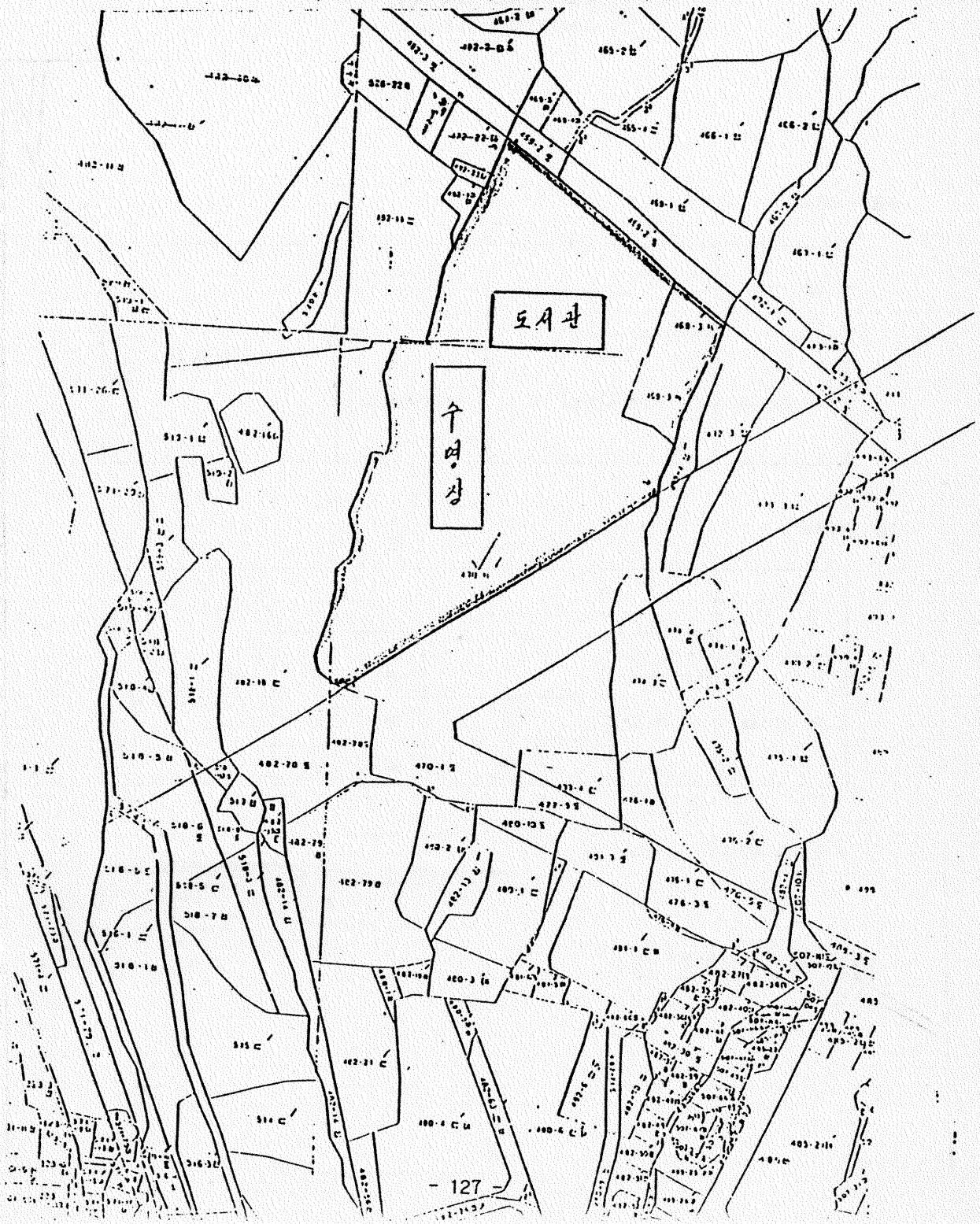

한 도서관 평면도

4층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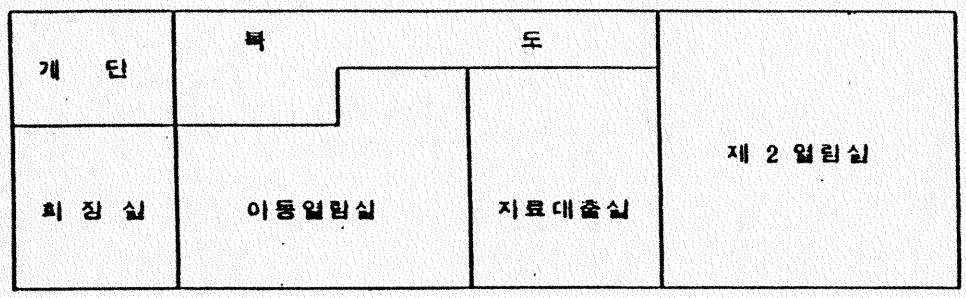

3층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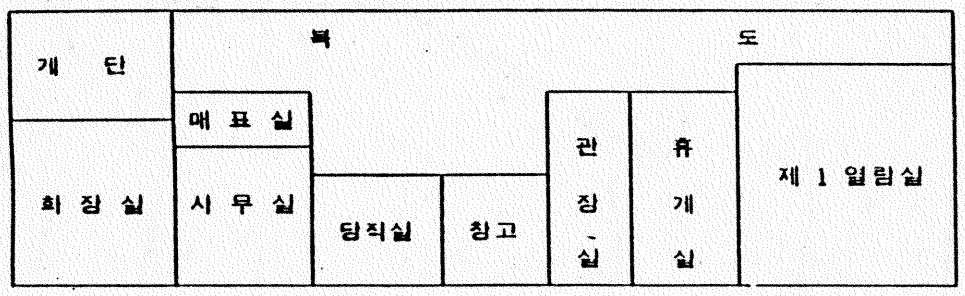

* 3,4층 연건평 1,190㎡ 임

1,2층은 "제천문화회관" 임

이진 도서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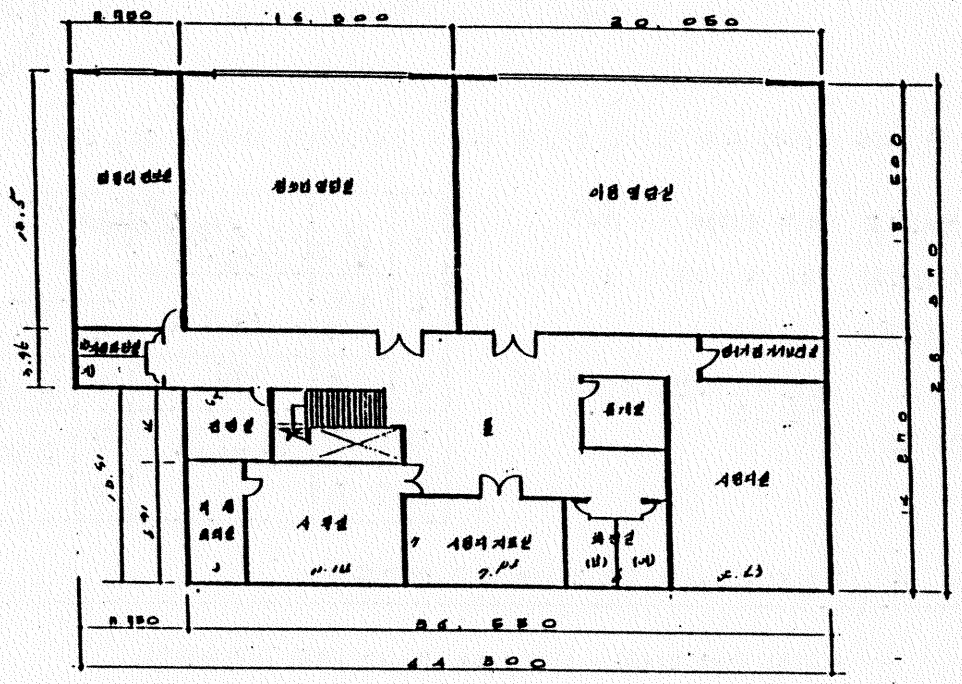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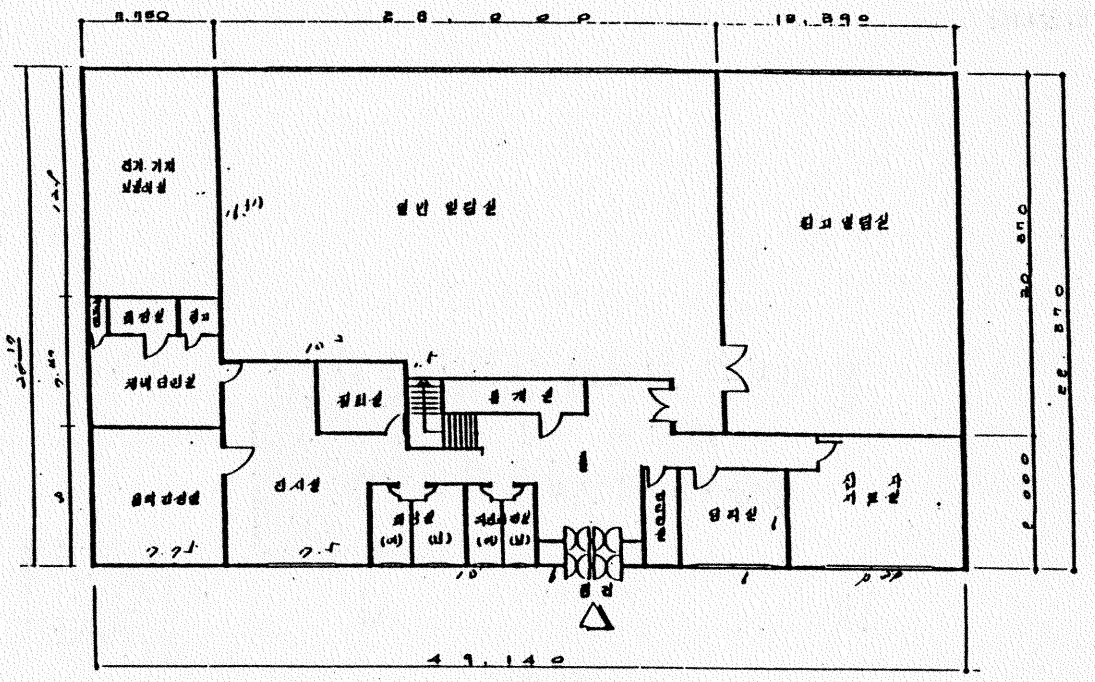

제 천 시

사본

우 (390 - 100) 충북 제천시 청전동 110 / 전화(0443) 40-6273 (행) 273 / 전송 45-0971

문서번호 회계 13330 - 610

시행일자 '94. 9 . 23. (년)

(경유)

수 신 충청북도제천교육청교육장 관리과장

참 조

선결	교육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94.9.26	결재·공람	교육장
	번호	2733		관리과장
처리과	관리과			경리계장
담당자				

제 목 제천학생도서관 매입협의에 따른 의견통보

1.귀청 관리 81450 - 1399 (94. 9. 12)호와 관련됩니다.

2.제천시 문화회관 3,4층에 위치한 귀청소유 제천학생도서관 매입협의건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형편상 95년도 본예산에 반영후 매입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본 사본은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1994 년 월 일

충청북도제천교육청교육장

제 천 시 장

(별첨5)

의안번호	제 43-6 호
의 결 년 월 일	1994. 11. 29. (제 43 회)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1994. 11. 29.

보은도서관 이전계획안

의안 번호	436

제출년월일 : 1994. 11. 2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이전 목적 및 사유

o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지식·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설로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o 현재의 보은도서관은 보은읍 외곽지역에 위치한 구 보은교육청 건물로서 건물이 낡고 구조가 부적합함은 물론, 인근 도로에 조명시설도 없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o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늘어나는 이용희망자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이 어려우므로,

o 보은도서관을 보은읍 내 중심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보은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은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이전시기 : '95. 10월중(예정)

3. 위 치

o 이전위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4번지 (현 삼산국민학교 부지)

o 현 위 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67 - 1번지

4. 기존도서관 활용계획

o 매각처분하여 이전신축비 일부에 충당

5. 현 도서관 시설현황

o 부 지 : 3,706㎡

o 건 물 : 808㎡

o 시설현황

구 분	실수	면 적(㎡)	좌 석 수	비 고
열 람 실	3	367	180	
서 고	1	108		
자 료 열 람 실	1	20		
사 무 실	1	62		
휴 게 실	1	20		
화장실(남 · 여)	2	30		
계단, 기타		201		
계		808	180	

6. 이전 도서관 시설계획

o 부　　지 : 1,650㎡

o 건　　물 : 1,650㎡(1층 : 495㎡, 2층 : 495㎡, 3층 : 495㎡, 지하 : 165㎡)

o 시　　설

구　　분	실 수	면 적(㎡)	좌석수	비　　고
열 람 실	4	1,060	500	일반열람실 1
서　　고	2	100		학생열람실 남·여 1
사 무 실	1	56		아동열람실 1
화 장 실	3	50		
숙 직 실	1	40		
자료열람실	1	40		
향토연구실	1	40		
기 계 실	1	40		
계단·기타		224		
계		1,650	500	

7. 정원 운용계획

구　　분	현정원	소요정원	비교증감	비　　고
교육행정직(5급)	0	1	△ 1	교육부 승인 및 자체 조정
교육행정직(6급이하)	1	2	△ 1	"
사 서 직	1	2	△ 1	"
기 능 직	2	5	△ 3	"
계	4	10	△ 6	

8. 소요재원 확보계획

- o 총 소 요 예 산 : 10억원
- o '9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 1억 2천만원 계상
- o '9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 5억원 계상
- o '9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 3억 8천만원 계상 예정

9. 이전후 기대효과

- o 보은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
- o 보은 지역의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
- o 도서관 규모의 확대로 많은 이용자에게 활용기회 부여

10.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

- o 교육부 승인(교육기관 이전)
- o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개정

11. 기타 참고사항

- o 위치도 1부.
- o 지적도 1부.
- o 현 도서관 평면도 1부.
- o 이전 도서관 평면도 1부.
- o 삼산국민학교 교지 현황 1부.

도 서 관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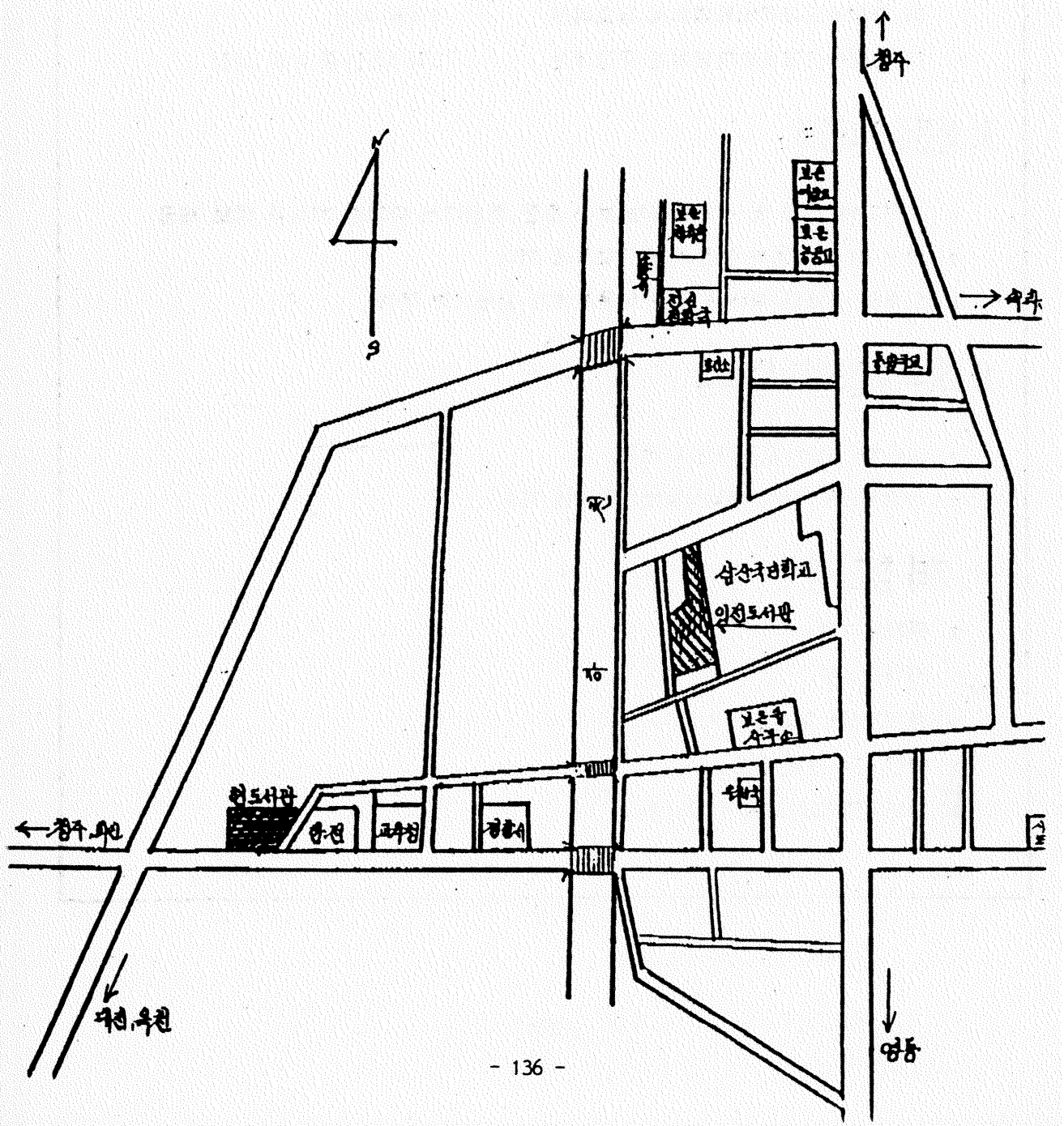

이전 도서관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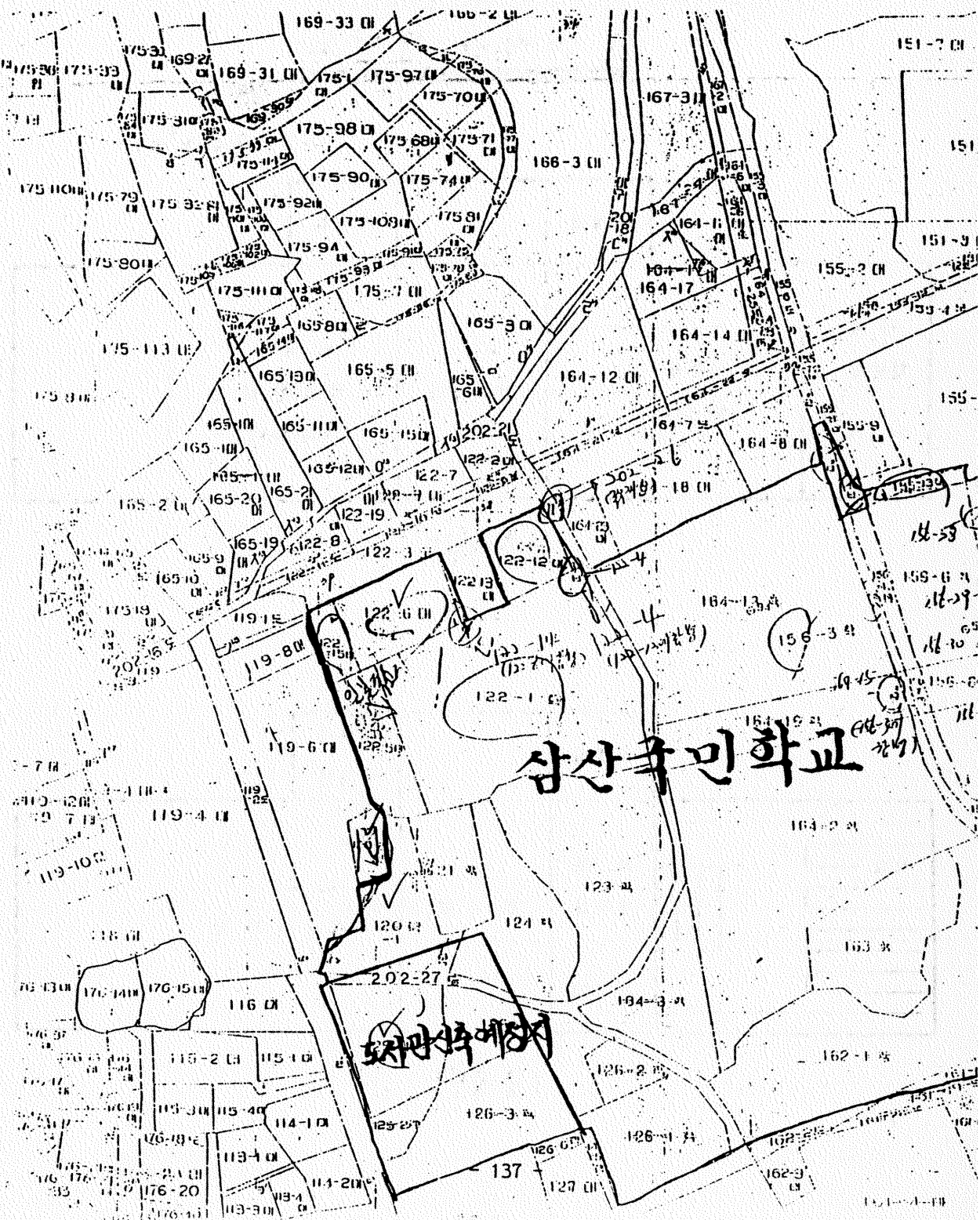

현 도서관 평면도

단위 :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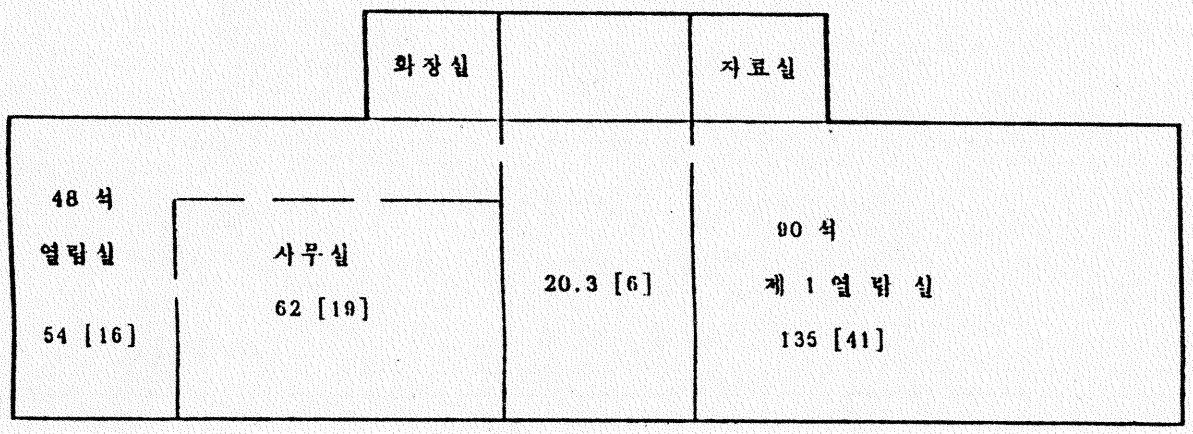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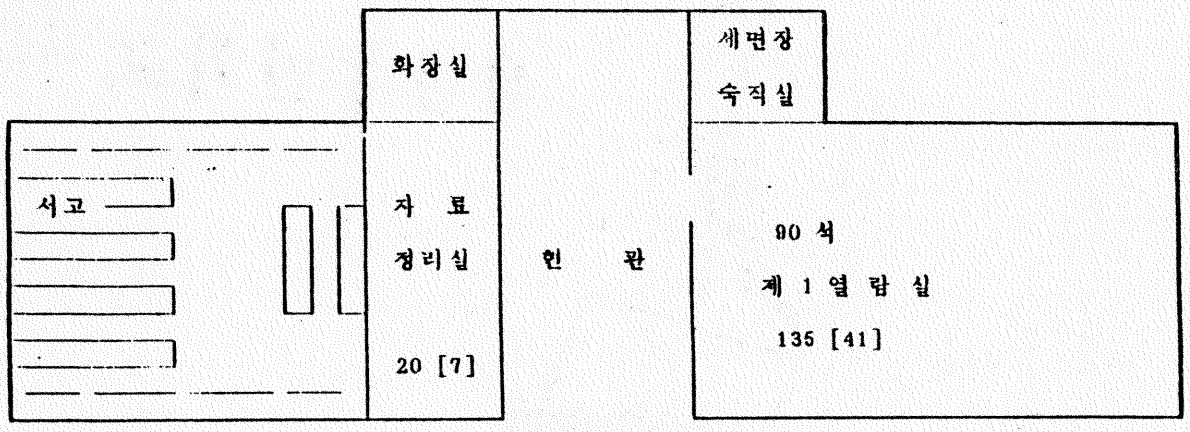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이전도서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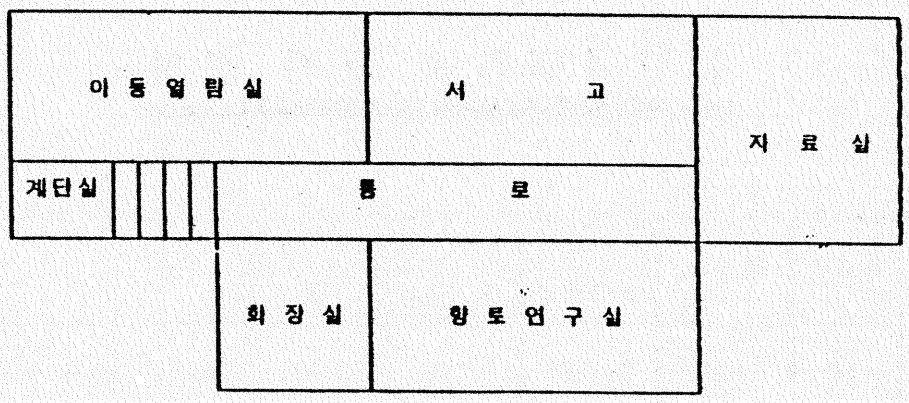

3 층 평 면 도 (150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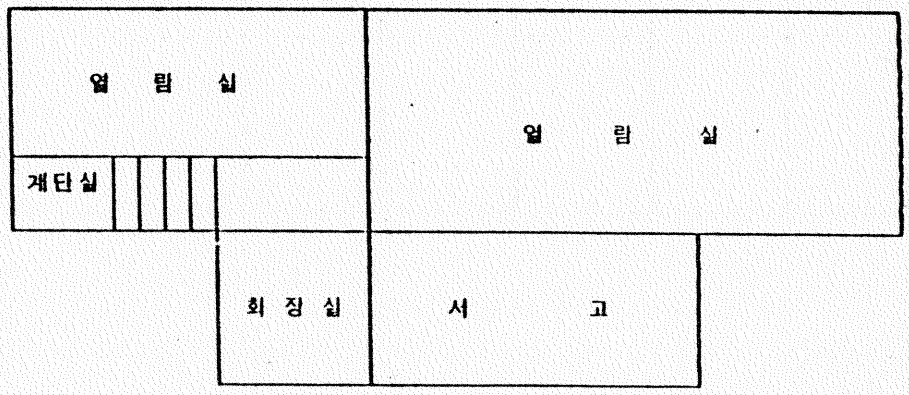

2 층 평 면 도 (150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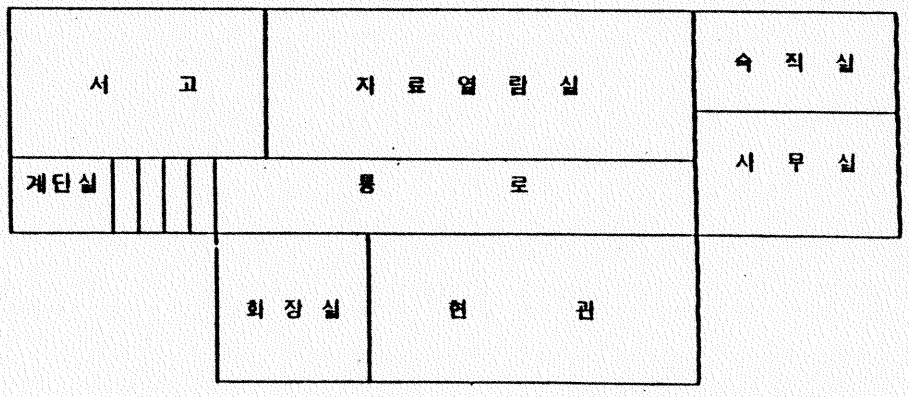

1 층 평 면 도 (150 평)

삼산국민학교 교지 현황

학 교 명	학급수	학생수	학 교 부 지 (㎡)			비 고
			교사부지	체 육 장	계	
삼산국민 학 교	24 (25)	994 (994 명)	16,072	7,310	23,382	도서관 신축부지는 교사부지 중의 일부임. (테니스장 및 기타)

(별첨6)

의안번호	제 43-7 호
의 결 년 월 일	1994. 11. 29. (제 43 회)

영동도서관이전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1994. 11. 22.

영동도서관 이전계획안

의안 번호	43-1

제출년월일 : 1994. 11. 2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이전 목적 및 사유

o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지식·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설로 평생교육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o 현 도서관은 구교육청 청사 일부로 규모가 작고 건물의 노후가 심하며 구조가 부적합하고

o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늘어나는 이용희망자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이 어려우므로,

o 영동도서관을 이전신축하여 영동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영동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이전시기 : '95. 11월중(예정)

3. 위 치

o 이전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 (현 영동농공고등학교 실습지)

o 현 위 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7 - 25

4. 기존도서관 활용계획

o 매각처분하여 이전신축비 일부에 충당

5. 현 도서관 시설현황

o 부 지 : 258.3㎡

o 건 물 : 320㎡

o 시설현황

구 분	실수	면 적(㎡)	좌 석 수	비 고
열 람 실	2	99	122	
서 고	1	25		
자 료 열 람 실	1	105		
화 장 실		18		
계단, 기타		73		
계		320	122	

6. 이전 도서관 시설 계획

o 부　　지 : 5,200㎡

o 건　　물 : 1,650㎡(1층 : 561㎡, 2층 : 528㎡, 3층 : 363㎡, 지하 : 198㎡)

o 시　　설

구　　분	실 수	면 적(㎡)	좌석수	비　　고
열 람 실	4	1,060	500	
서　　고	3	100		
사 무 실	1	50		
화 장 실	3	60		
숙 직 실	1	40		
자 료 실	1	40		
향토연구실	1	40		
기 계 실	1	40		
계단 · 기타		220		
계		1,650	500	

7. 정원 운용계획

구　　분	현정원	소요정원	비교증감	비　　고
교육행정직(5급)	0	1	△ 1	교육부 승인 및 지체 조정
교육행정직(6급이하)	1	2	△ 1	〃
사 서 직	1	2	△ 1	〃
기 능 직	1	5	△ 4	〃
계	3	10	△ 7	

8. 소요재원 확보계획

- o 총 소 요 예 산 : 10억원
- o '9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 5억원 계상
- o '9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 5억원 계상 예정

9. 이전후 기대효과

- o 영동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
- o 영동 지역의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
- o 도서관 규모의 확대로 많은 이용자에게 활용기회 부여

10.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

- o 교육부 승인(교육기관 이전)
- o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개정

11. 기타 참고사항

- o 위치도 1부.
- o 지적도 1부.
- o 현 도서관 평면도 1부.
- o 이전 도서관 평면도 1부.
- o 영동고등학교 부지 현황 1부.

도서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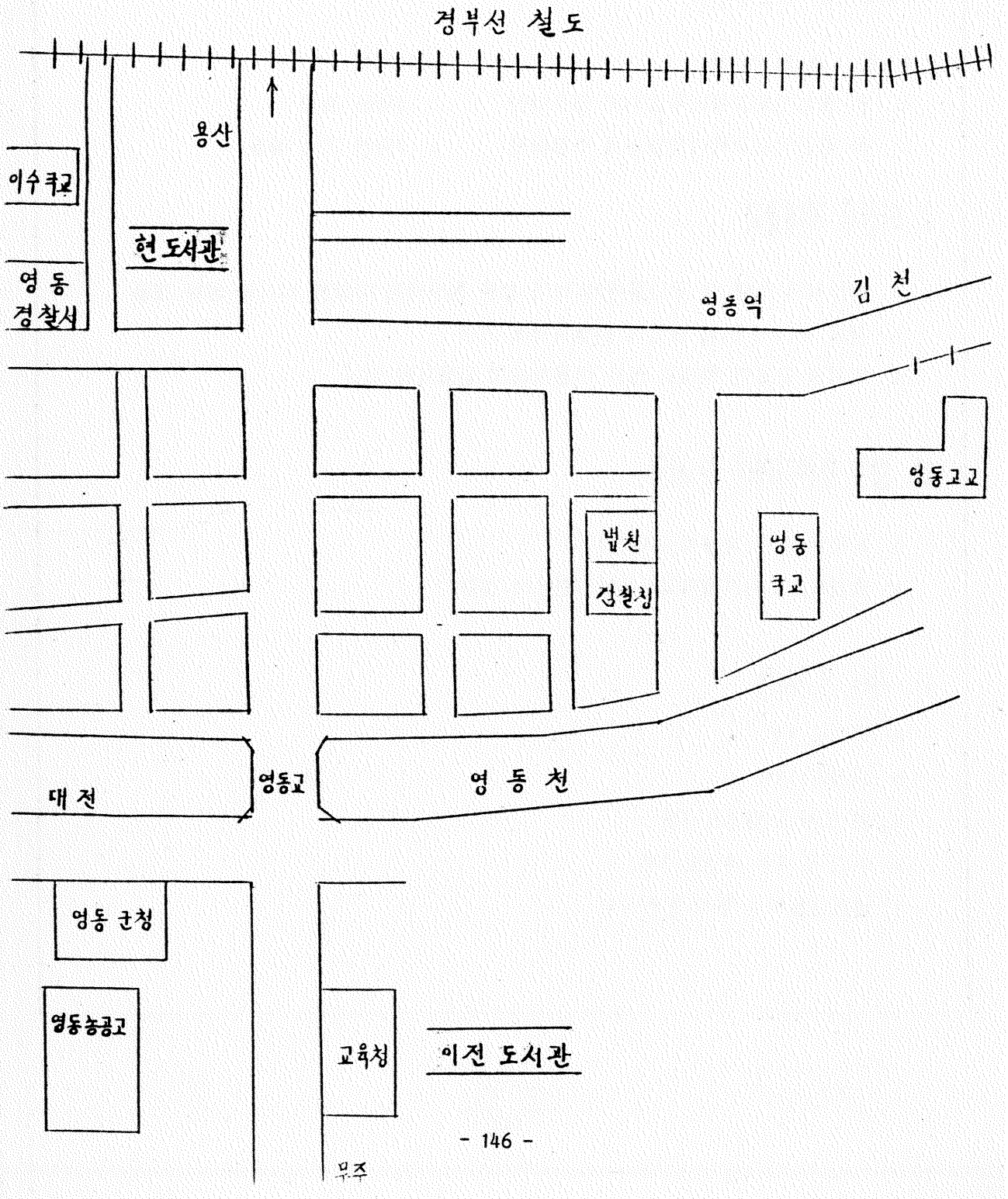
경부선 철도
용산
이수국교
현도서관
영동
경찰서
영동읍
김 천
영동고교
법원
검찰청
영동
국교
대 전
영동교
영 동 천
영동 군청
영동농공고
교육청
이전 도서관
무주

이전 도서관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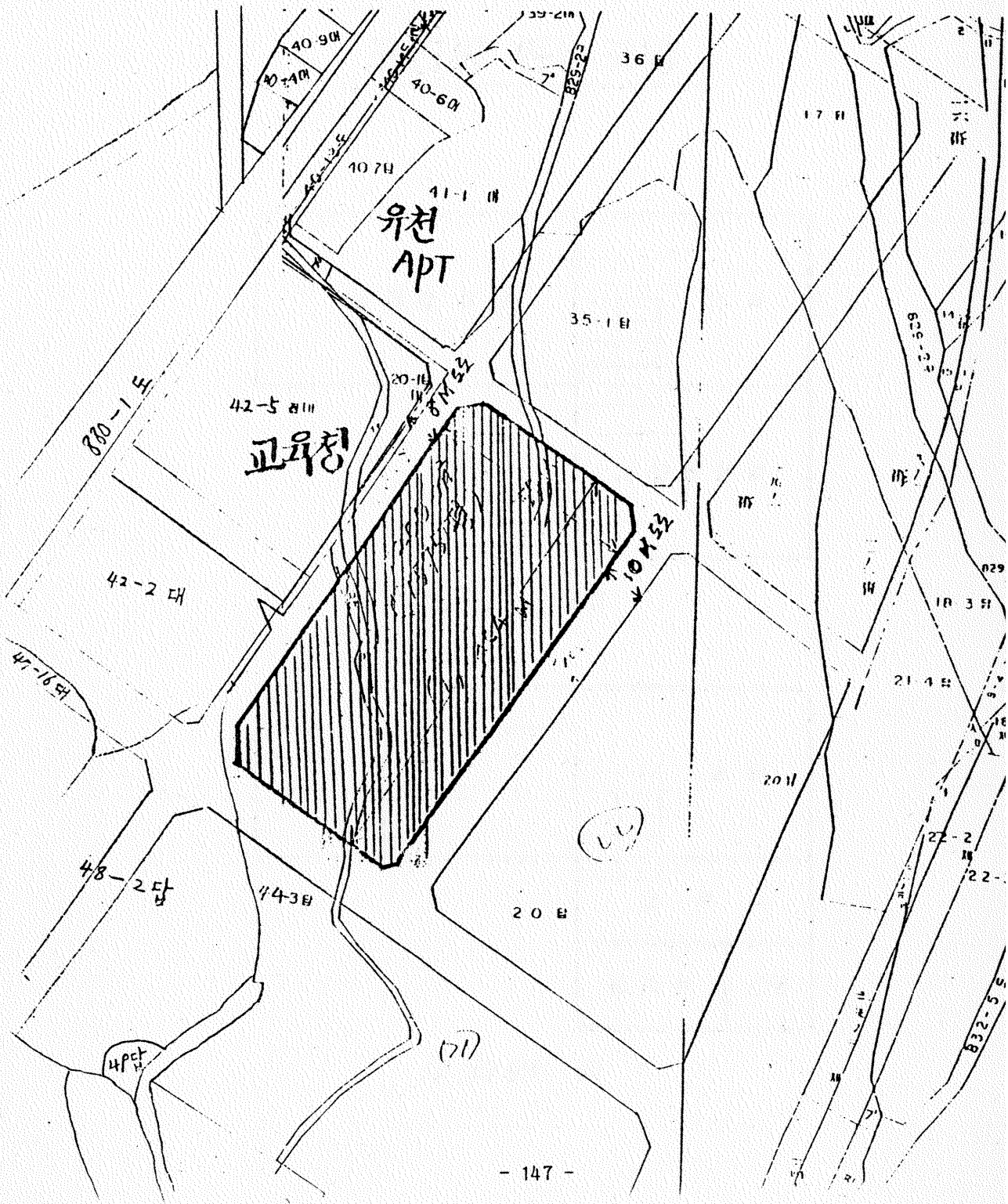

유천
APT
교육청
880-1 도
42-5 전대
42-2 대
47-16 대
48-2 답
44-3 답
20 답
35-1 답
36 답
17 답
18-3 답
21-4 답
20 답
40-9 대
40-4 대
40-6 대
40-7 답
41-1 대
20-1 답
8M 도로
10M 도로

현도서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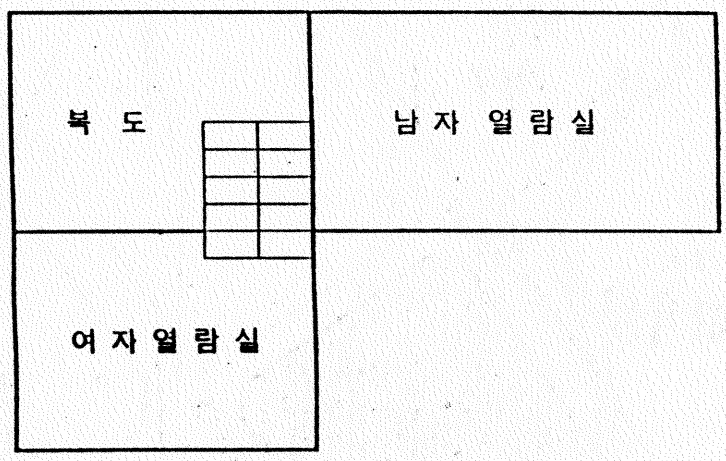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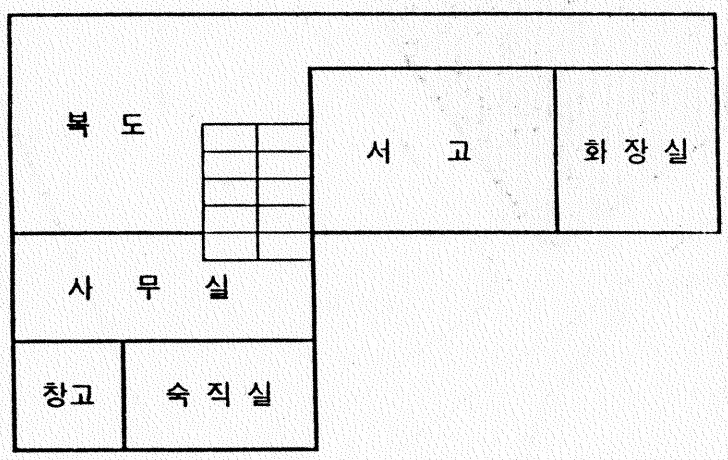

1 층 평면도

이전도서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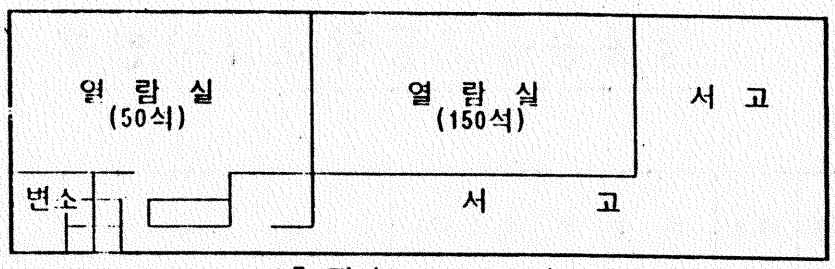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1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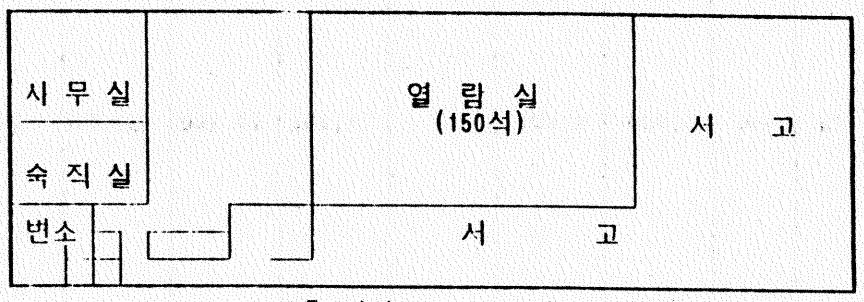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6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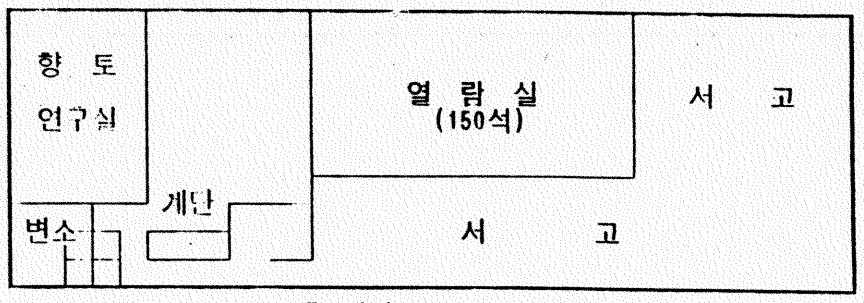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70평

영동농공고등학교교지현황

	학급수	학생수	기준면적(㎡)			현황(㎡)			비고
			교사부지	체육장	실습지	교사부지	체육장	실습지	
영동농공고등학교	13	460	6,700	4,400	.	11,202	27,180	251,710	실습지부지 251,710㎡ 중 5,200㎡ 를 신축도서관부지로함

(별첨7)

의안번호	제 43-7 호
의 결 년 월 일	1994. 11. 29. (제 43 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4. 11. 17.

법무담당부서 심사필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

제출년월일 : 1994. 11. 2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학교신설, 학과개편, 학교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 폐지, 택지개발지구의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도·농복합형태의 시·군 통합으로 인한 교명 및 주소가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ㅇ 신설 학교 (청주시 충북공업고등학교외 3교) : 덧붙임
- ㅇ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변경 학교 (제천시 제원고등학교) : 덧붙임
- ㅇ 학교이전으로 주소변경 학교 (청주시 교동국민학교) : 덧붙임
- ㅇ 소규모학교 통·폐합
  - 본교에서 분교장개편 학교 (제천시 대전국민학교외 9교) : 덧붙임
  - 본교폐지 학교 (제천시 청풍고등학교외 3교) : 덧붙임
  - 분교장폐지 학교 (충주시 성남국민학교 동신분교장외 27교) : 덧붙임
- ㅇ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 폐지 (제천시 청전국민학교) : 덧붙임
- ㅇ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 (충주시 연수국민학교) : 덧붙임
- ㅇ 도·농복합형태의 시·군 통합 (중원군, 제천군) : 덧붙임

□ 제안근거

- ㅇ 교육법 제82조 및 교육법 제85조
- ㅇ '95. 국·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 ㅇ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제4, 774호, '94. 8. 3.) 제4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ㅇ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 : 덧붙임
- ㅇ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ㅇ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ㅇ '95.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계획안 및 소규모국민학교 통·폐합 기준 : 덧붙임
- ㅇ 예산상황 : 해당없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로 인한 위치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청풍고등학교는 1995학년도 재학생의 졸업학년도까지 존속한다.

[별표 1]

고 등 학 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청주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북대동 869번지
충북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 316-2번지
청주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동 534번지
충북예술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27번지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27번지
금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15-4번지
충북체육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1동 808번지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1동 322번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79번지
충북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666번지
충북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동 663-9번지
충주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58번지
충주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060번지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26-1번지
충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72번지
충주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453번지
주덕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면 신중리 130-3번지
제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163-1번지
제천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80번지
제천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45번지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고명동 765번지
제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82-3번지
제천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팔송리 360번지
충북과학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4-23번지
미원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218-2번지

명 칭	위 치
부강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997-1번지
보은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16-2번지
보은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171-2번지
보은농공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00번지
옥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15-4번지
청산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33-1번지
옥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47번지
옥천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영동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2-7번지
황간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431번지
학산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07-3번지
영동농공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60-2번지
진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90번지
광혜원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520번지
진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662-1번지
진천농공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
괴산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01번지
증평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8번지
목도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60번지
증평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천리 620번지
음성고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03-7번지
금왕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03번지
단양고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324번지
단산고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311번지
단양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58번지

[별표 3]

중 학 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청주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8번지
주성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 133번지
청주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2동 6-3번지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천동 229-5번지
청주남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곡동 124-3번지
청주동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47-5번지
청주중앙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261-174번지
서원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486-3번지
봉명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2동 1305번지
청운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운동 73-48번지
가경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753-1번지
율량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주중동 581-6번지
남성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 219-15번지
용암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73BL)
충주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192번지
충일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1083-4번지
충주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369-1번지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32-2번지
충주중앙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1088번지
수안보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51번지
주덕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면 신중리 130-3번지
신니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산 16-1번지
노은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368번지
앙성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172번지
가금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361-7번지

명 칭	위 치
중원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07-1번지
산척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718-2번지
제천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5-1번지
제천동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21번지
제천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71-1번지
의림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9-2번지
청풍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 6번지
수산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609번지
한수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22번지
백운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570번지
봉양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장평리 864-1번지
송학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00-2번지
미원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81-3번지
문의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라 108-2번지
부강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500번지
오창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창리 151-4번지
내수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번지
가덕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수곡리 255번지
현도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256-3번지
옥산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77-3번지
보은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30번지
보덕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27번지
원남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53번지
회인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130번지
속리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87번지
내북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5-1번지
보은여자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16-2번지

명 칭	위 치
옥천중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3번지
청산중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33-3번지
이원중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559번지
안내중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289번지
동이중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672번지
옥천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55-2번지
영동중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1번지
용문중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104번지
황간중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526-1번지
상촌중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467번지
학산중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07-3번지
진천중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462번지
광혜원중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512번지
덕산중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66번지
이월중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5-55번자
백곡중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476-1번지
진천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343번지
괴산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62번지
괴산북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25번지
증평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천동 600번지
연풍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488번지
목도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60번지
청천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55번지
증평여자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8번지
송면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191번지
장연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562번지
칠성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240번지

명 칭	위 치
감물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산 85번지
음성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74-3번지
음성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30-3번지
무극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3-2번지
대소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613-7번지
삼성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31-1번지
감곡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890-3번지
단양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222번지
단성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79-1번지
매포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18번지
가곡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35번지
단산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311번지
영춘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496-1번지
영춘중학교 별방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별표 4]

국 민 학 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48번지
교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 (72BL)
석 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석교동 10번지
중 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동 4번지
청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운동 127번지
한 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1동 560번지
덕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동 656번지
남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 219-1번지
서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977번지
우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137번지
모 충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모충동 372번지
용 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용담동 186번지
용담국민학교 현양원분교장	충청북도 청주시 월오동 71-1번지
운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운천동 543-7번지
청 주 내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2동 61번지
창 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351번지
사 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2동 38-4번지
강 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비하동 121-1번지
내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곡동 12번지
서 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촌동 184번지
현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현암동 89번지
금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213-1번지
복 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709-4번지
봉 명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1동 205번지
흥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운천동 865번지

명 칭	위 치
덕 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260-10번지
북 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주중동 428번지
운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운동동 430번지
봉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2동 2141번지
산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곡동 322번지
율 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동 1034번지
가 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752번지
풍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1172번지
새 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천동 200번지
수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곡동 산남(2)택지개발지구내(12BL)
충주교현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339-1번지
충주남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109번지
충주삼원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1-1번지
충주예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383-1번지
단 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513-19번지
목 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577-1번지
달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410-1번지
남 한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924번지
충주성남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293번지
충주대림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81번지
충주중앙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연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232번지
세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147번지
세성국민학교 공이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448-1번지
수 안 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 598번지
수 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수회리 672번지
수회국민학교 팔봉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264-1번지

명 칭	위 치
대 소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569-15번지
이 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889번지
매 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매현리 480번지
주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면 신중리 72번지
덕 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면 제내리 265-1번지
용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245-3번지
동 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126번지
노 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535-2번지
노은국민학교 수룡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554-1번지
수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
앙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258-1번지
앙성국민학교 영죽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264-4번지
강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89-2번지
능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1-5번지
가 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212-1번지
창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산 22-2번지
가 흥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582-8번지
금 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294-2번지
오 석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226-3번지
동 량 국 민 학 교	충청부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426-1번지
동량국민학교 서운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서운리 155번지
대 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17번지
산 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282-1번지
산척국민학교 석천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203번지
엄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460번지
추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455-6번지
목 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명 칭	위 치
소 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199번지
소태국민학교 덕은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229번지
야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487번지
야동국민학교 하남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 645-1번지
동 명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68번지
의 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186번지
남 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2동 255-12번지
남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1번지
화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1동 606번지
홍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396-1번지
두 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436번지
명 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동 48-1번지
제천중앙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625번지
용 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택지개발지구내
금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294번지
금성국민학교 장선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98번지
청 풍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44-3번지
청풍국민학교 금산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산 8-3번지
수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내리 168-2번지
수산국민학교 추동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도전리 175번지
수산국민학교 대전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218번지
덕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25번지
덕산국민학교 월악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596번지
유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606번지
송 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53번지
백 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600번지
화 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84-1번지

명 칭	위 치
봉 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연박리 921번지
봉양국민학교 봉남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마곡리 540번지
왕 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미당리 757번지
공 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공전리 265번지
송 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64번지
입 석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609-2번지
낭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108-1번지
낭성국민학교 갈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 341-1번지
낭성국민학교 산동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277-1번지
미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98-3번지
미원국민학교 용곡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용곡리 291번지
미원국민학교 종암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종암리 387번지
금 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306-1번지
기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기암리 251-1번지
가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125번지
행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29-1번지
상 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351-1번지
남 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33번지
신 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 411번지
동 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 361-1번지
두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번지
남 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55번지
갈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43-1번지
문 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228번지
문의국민학교 소전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소전리 653-2번지
도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번지
현 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548-1번지

명 칭	위 치
현도국민학교 노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538번지
옥 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622-4번지
부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32-3번지
외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294번지
강 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48-1번지
강 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60-1번지
상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242-1번지
만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
옥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23번지
옥산국민학교 호죽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300-3번지
금 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223번지
소 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오 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가 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각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28-3번지
유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북 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10-2번지
석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344번지
대 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28번지
내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71번지
비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비상리 200번지
수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263-1번지
수성국민학교 입동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 425-1번지
구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265번지
삼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3번지
삼산국민학교 동정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동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명 칭	위 치
종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54번지
학 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9-1번지
중 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408번지
수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수정국민학교 법주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210번지
수정국민학교 북암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하판리 43번지
수정국민학교 삼가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140번지
속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관 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94번지
세 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575-2번지
탄 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63번지
사 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151번지
보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35-5번지
삼 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
판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536-1번지
송 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192-4번지
수 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35번지
회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249번지
회 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내 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19번지
내북국민학교 이원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209번지
내북국민학교 이식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84번지
내북국민학교 아곡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46-2번지
산 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52-2번지
장 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317번지
죽 향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83번지
삼 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번지

명 칭	위 치
군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79번지
군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83번지
동 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72-1번지
동이국민학교 우산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833-1번지
안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16번지
삼 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청정리 510-1번지
안 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 171번지
학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34번지
청성국민학교 묘금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 19-1번지
능 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화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295-1번지
청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4번지
청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675-1번지
이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14-7번지
지 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대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군 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51번지
증 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641번지
증약국민학교 대정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77번지
영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4번지
이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부 용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화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44-1번지
용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213번지
구 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41-1번지
황 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67-1번지
용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황간면 용암리 642번지

명 칭	위 치
노 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700번지
추 풍 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375-1번지
매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천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공수리 463-2번지
상 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57-1번지
상촌국민학교 황학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301번지
양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21번지
미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697-3번지
용 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760번지
학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738-1번지
학산국민학교 봉산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산리 563-1번지
범 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48-1번지
양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93-2번지
심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초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진천상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7-1번지
진천삼수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3-1번지
진천삼수국민학교 매산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65-1번지
성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79-2번지
이 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2-4번지
학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97-7번지
금 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79번지
옥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59-2번지
한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18-3번지
한천국민학교 두촌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번지
초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93번지
구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236-1번지

명 칭	위 치
구정국민학교 오상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290-1번지
문 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변 봉죽리 297번지
문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8-1번지
백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144번지
백곡국민학교 성대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498-2번지
만 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79번지
상 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30-18번지
괴산명덕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35번지
괴산명덕국민학교 제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289번지
동 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485번지
신 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469번지
감 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81-1번지
장 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49번지
장 풍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285-3번지
광 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연 풍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번지
오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204-1번지
칠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311번지
외 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문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94번지
청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7-1번지
청천국민학교 신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44번지
송 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16-2번지
덕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80번지
어 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 287-1번지
청 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번지
백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428번지

명 칭	위 치
백봉국민학교 장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401번지
증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죽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죽리 308번지
삼 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도 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보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화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452번지
백 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1-1번지
소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54번지
목 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90번지
추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575-1번지
세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세평리 214번지
수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번지
남 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6번지
남신국민학교 덕생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94번지
평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15번지
무 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86번지
용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번지
오 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233-2번지
쌍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413번지
소 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68번지
대 장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374번지
원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371번지
원남국민학교 문암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593번지
하 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433번지
맹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94번지
대 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번지

명 칭	위 치
부 윤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392번지
삼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08-1번지
능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203번지
청 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352-7번지
생 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51-1번지
생극국민학교 관성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3번지
오 생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번지
감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489-2번지
상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344번지
오 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2-1번지
원 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159번지
단 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05번지
단양국민학교 노동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264번지
상 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번지
금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107번지
단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08번지
가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대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91번지
장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가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국민학교 보발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11-1번지
대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220-1번지
영 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640번지
영춘국민학교 의풍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별 방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동 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06번지
어 상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1리 456-1번지

명 칭	위 치
선암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리 69번지
매포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리 271번지
도담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1리 63번지
가평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181-2번지
적성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59번지
대가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191번지

참 고 사 항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골자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법 제82조 및 제85조

○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부칙

□ '95.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계획안 및 소규모국민학교 통·폐합 기준
(분교장개편, 본교폐지, 분교장폐지)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골자

1. 신설학교 (4교)

명 칭	위 치	개교연월일	신 설 사 유
충북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666번지	'95. 3. 1.	-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기능·기술인 양성
용암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동택지개발지구내 (73BL)		
수곡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곡동 산남(2) 택지개발지구내(12BL)		- 택지개발지구내 학생수용, 2부제수업 해소 및 과대학교 분리
용두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택지개발지구내		

2.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 변경학교 (1교)

학 교 명	구 분	학 교 명 칭	변경연월일	변 경 사 유
제원고등학교	변 경 전	제 원 고 등 학 교	'95. 3. 1.	- 전문 기능인 양성 - '95학년도 부터 보통과 폐지
	변 경 후	제 천 공 업 고 등 학 교		

3. 학교이전으로 인한 주소변경 (1교)

학 교 명	구 분	위 치	이전연월일	이 전 사 유
교동국민학교	이전전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 180번지	'95. 3. 1.	균형적인 학교재배치로 쾌적한 교육환경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 도모
	이전후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동택지개발지구내 (72BL)		

4. 소규모학교 통·폐합

가. 본교에서 분교장개편 학교 (10교)

개편전명칭	개 편 후 명 칭	위 치	개편연월일
대전국민학교	수산국민학교 대전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218	'95. 3. 1.
갈산국민학교	낭성국민학교 갈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341-1	
산동국민학교	낭성국민학교 산동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277-1	
묘금국민학교	청성국민학교 묘금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19-1	
황학국민학교	상촌국민학교 황학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301	
봉산국민학교	학산국민학교 봉산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황산리563-1	
매산국민학교	삼수국민학교 매산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465-1	
덕생국민학교	남신국민학교 덕생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94	
보발국민학교	가곡국민학교 보발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711-1	
의풍국민학교	영춘국민학교 의풍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760	

나. 본교폐지 학교 (4교)

명 칭	위 치	폐지연월일	폐 지 사 유
청풍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 6번지	'95. 3. 1.	-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 - 교육의 내실화 도모 - 인력 및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
양화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623		
선림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92-3		
부상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698		

다. 분교장폐지 학교 (28교)

명 칭	위 치	폐지연월일	폐지사유
성남국민학교 동신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 447-10	'95. 3. 1.	-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
성남국민학교 종인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510-30		

명 칭	위 치	폐지연월일	폐지사유
강천국민학교 단암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412-1	'95. 3. 1.	- 교육의 내실화 도모 -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동량국민학교 하천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336		
청풍국민학교 양평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21-7		
선림국민학교 도기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340-2		
유덕국민학교 복평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833-2		
봉양국민학교 명암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명암리 605-4		
봉양국민학교 학전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옥전리 180		
강내국민학교 저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200-3		
만수국민학교 공북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337		
관기국민학교 적암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149		
관기국민학교 소여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470-1		
안내국민학교 용촌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160		
청성국민학교 신서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심매리 667		
청산국민학교 대월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173-1		
청산국민학교 예곡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150		
추풍령국민학교신안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리 63		
미봉국민학교 구강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76		
초강국민학교 금호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397		
감물국민학교 이담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640		
송면국민학교 삼송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530		
백봉국민학교 운곡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 209-2		
소수국민학교 광신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 219		
무극국민학교 사정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949		
대강국민학교 황정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193		
별방국민학교 유암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253		
어상천국민학교금당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79		

5.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 폐지 (1교)

명 칭	위 치	폐지연월일	폐 지 사 유
청전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번지	'95. 3. 1.	- 제천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로 폐교

6.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 (1교)

학 교 명	구 분	위 치	사 유
연수국민학교	부 여 전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개발지구 지적정리로 지번부여
	부 여 후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232번지	

7. 도농복합형태의 시·군통합으로 주소변경 학교

구 분	지 역 별		시행연월일	사 유
공 포 전	충 주 시 중 원 군	제 천 시 제 천 군	'95. 1. 1.	-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774호, '94. 8. 3.) 제4조,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거 중원군을 충주시로, 제천군을 제천시로 변경하고자 함.
공포후 폐 지	충 주 시 중 원 군	제 천 시 제 천 군		
공포후 설 치	충 주 시	제 천 시		

○ 중원군 → 충주시로 주소변경 학교 : 국 28(10)교, 중 8교, 고 1교, 계 37(10)교

○ 제천군 → 제천시로 주소변경 학교 : 국 16(6)교, 중 6교, 고 2교, 계 24(6)교

※ ( )은 분교장수로 본수에 미포함.

< 별표 1 >

고등학교 신·구대비표

현 행		변 경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청 주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869번지	.....	.....
(생	략)	.....	.....
충북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동 663-9번지	.....	.....
(신	설)	충북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666번지
(생	략)	.....	.....
제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82-3번지	.....	.....
제 원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팔송리 360번지	제천공업고등학교	.....
청 풍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번지	(삭	제)
(생	략)	.....	.....

< 별표 3 >

중학교 신 · 구대비표

현 행		변 경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청 주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8번지	.....	.....
(생	략)	.....	.....
남 성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 219-15번지	.....	.....
(신	설)	용 암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73BL)
(생	략)	.....	.....

< 별표 4 >

국민학교 신 · 구대비표

현 행		변 경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주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48번지	.....	.....
(생	략)	.....	.....
교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 180번지	.....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 (72BL)
(생	략)	.....	.....
새 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천동 200번지	.....	.....
(생	략)	.....	.....
(신	설)	수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곡동 산남 (2) 택지개발지구내 (12BL)
(생	략)	.....	.....
충주성남국민학교 농 신 분 교 장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 447-10번지	(삭	제)
충주성남국민학교 송 인 분 교 장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510-3번지	(삭	제)
(생	략)	.....	.....
연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택지개발지구내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232번지
(생	략)	.....	.....

현 행		변 경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강천국민학교 단암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412-1	(삭	제)
(생	략)	.....	.....
동량국민학교 하천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336	(삭	제)
(생	략)	.....	.....
청전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6	(삭	제)
(생	략)	.....	.....
(신	설)	용두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택지개발지구내
(생	략)	.....	.....
양화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623번지	(삭	제)
(생	략)	.....	.....
청풍국민학교 양평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623	(삭	제)
(생	략)	.....	.....
대전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218번지	수산국민학교 대전분교장	.....
(생	략)	.....	.....

현 행		변 경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선 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92-3번지	(삭	제)
선 림 국 민 학 교 도 기 분 교 장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340-2번지	(삭	제)
(생	략)	.....	.....
유 덕 국 민 학 교 복 평 분 교 장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833-2번지	(삭	제)
(생	략)	.....	.....
봉 양 국 민 학 교 명 암 분 교 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명암리 605-4번지	(삭	제)
봉 양 국 민 학 교 학 전 분 교 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옥전리 180번지	(삭	제)
(생	략)	.....	.....
갈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 341-1번지	낭 성 국 민 학 교 갈 산 분 교 장	.....
산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277-1번지	낭 성 국 민 학 교 산 동 분 교 장	.....
(생	략)	.....	.....
강 내 국 민 학 교 저 산 분 교 장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200-3번지	(삭	제)
(생	략)	.....	.....
만 수 국 민 학 교 공 북 분 교 장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337번지	(삭	제)

현 행		변 경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생	략)	.....	.....
관기국민학교 적암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149번지	(삭	제)
관기국민학교 소여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470-1번지	(삭	제)
(생	략)	.....	.....
안내국민학교 용촌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160번지	(삭	제)
(생	략)	.....	.....
청성국민학교 신서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667번지	(삭	제)
묘금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 19-1번지	청성국민학교 묘금분교장	.....
(생	략)	.....	.....
청산국민학교 대월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173-1번지	(삭	제)
청산국민학교 예곡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150번지	(삭	제)
(생	략)	.....	.....
부상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698번지	(삭	제)
(생	략)	.....	.....

현 행		변 경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추풍령국민학교 신안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리 63번지	(삭	제)
(생	략)	.....	.....
상촌국민학교 황학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301번지	(삭	제)
(생	략)	.....	.....
미봉국민학교 구강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76번지	(삭	제)
(생	략)	.....	.....
봉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산리 563-1번지	학산국민학교 봉산분교장	.....
(생	략)	.....	.....
초강국민학교 금호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397번지	(삭	제)
(생	략)	.....	.....
매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65-1번지	진천삼수국민학교 매산분교장	.....
(생	략)	.....	.....
감물국민학교 이담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640번지	(삭	제)
(생	략)	.....	.....

현 행		변 경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송면국민학교 삼송분교장 (생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530번지 략)	(삭 제)	.....
백봉국민학교 운곡분교장 (생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 209-2번지 략)	(삭 제)	.....
소수국민학교 광신분교장 (생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 219번지 략)	(삭 제)	.....
덕생국민학교 (생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94번지 략)	남신국민학교 덕생분교장	.....
무극국민학교 사정분교장 (생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949번지 략)	(삭 제)	.....
대강국민학교 황정분교장 (생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193번지 략)	(삭 제)	.....
보발국민학교 (생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11-1번지 략)	가곡국민학교 보발분교장	.....

현 행		변 경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별방국민학교 유암분교장 (생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253번지 략)	(삭 제)	
의풍국민학교 (생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략)	영춘국민학교 의풍분교장 ……	……
어상천국민학교 금당분교장 (생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79번지 략)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법

제82조(설립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

제85조(학교의 설립·폐지)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 또는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권자가 이를 행한다.

□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774호, '94. 8. 3.)

제4조(충청북도 충주시등의 설치) ① 충청북도의 충주시·제천시·중원군 및 제천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충주시 및 제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명칭	관 할 구 역
충 주 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충청북도 충주시 일원과 중원군 일원
제 천 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충청북도 제천시 일원과 제천군 일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와 군(이하 "폐지시·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이하 "신설시"라 한다)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폐지시·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신설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장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당시 폐지시·군의 조례·규칙은 각각 신설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95.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계획안 및 소규모국민학교 통·폐합 기준

□ 학교신설 계획안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택지개발지구내 대단위 주택건설로 인한 급격한 교육인구의 이동으로 2부제수업 해소 및 과대학교를 분리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기능·기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95. 국·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국민학교는 청주 1개교, 제천 1개교, 중학교는 청주 1개교, 고등학교는 청주 1개교의 신설요인 발생.

□ 소규모국민학교 통폐합 기준 [근거 : 시·도교육청 행정과장 회의자료('94. 3.23.)]

○ 본 교

- 학생수 50명이하 학교 : 단계적으로 전학교 통폐합
- 학생수 51 ~ 100명이하 학교 : 단계적으로 통폐합 또는 분교장개편
- 학생수 101 ~ 180명이하 학교 : 통폐합 또는 분교장개편 추진
- 학생수 180명이상 학교 : 지역실정에 따라 통폐합 추진 가능

○ 분교장

- 특수지역을 제외한 전 분교장은 단계적으로 통폐합

○ 우리도 기본원칙 : 1面 1校 유지

(별첨8)

의안번호	제43-8호
의결 년월일	1994. 11. 29. (제43회)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6 회 변 경 계 획 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4. 11. 23.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43-3

제출년월일 : 1994. 11. 2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상기관 : 제천교육청

○ 변경 내역

- 취 득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토 지	86,178.9	18,209,804	86,338.9	18,258,764	160.0	48,960
건 물	115,968.65	57,507,136	115,968.65	57,507,136	0	0
공 작 물	159 식	6,439,231	159 식	6,439,231	0	0
계		82,156,171		82,205,131		48,960

- 처 분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토 지	194,971.5	9,688,649	194,971.5	9,688,649	0	0
건 물	27,038.2	1,644,685	27,038.2	1,644,685	0	0
공 작 물	93 식	93,047	93 식	93,047	0	0
계		11,426,381		11,426,381		0

- 유상사용허가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토 지	736,611.87	128,577	736,611.87	128,577	0	0
건 물	23,629.35	137,524	23,629.35	137,524	0	0
공 작 물	12 식	1,360	12 식	1,360	0	0
계		267,461		267,461		0

- 무상사용허가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토 지	11,690.0	11,690.0	0
건 물	1,133.1	1,133.1	0

□ 제 안 근 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 변경계획안 내역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 변경계획안 내역

제천교육청

(단위:㎡/천원)

구분	재산별	기관명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사유	비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취득	토지	의림여중	사유지 매입			160.0	48,960	160.0	48,960	ㅇ학교시설 결정 부지	

의림여자중학교 토지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취득금액 (천원)	사 유
사유지	제천시 하소동	42 - 1	답	23.0	7,038	학교시설결정 부지
		42 - 2	전	137.0	41,922	
	소 계			160.0	48,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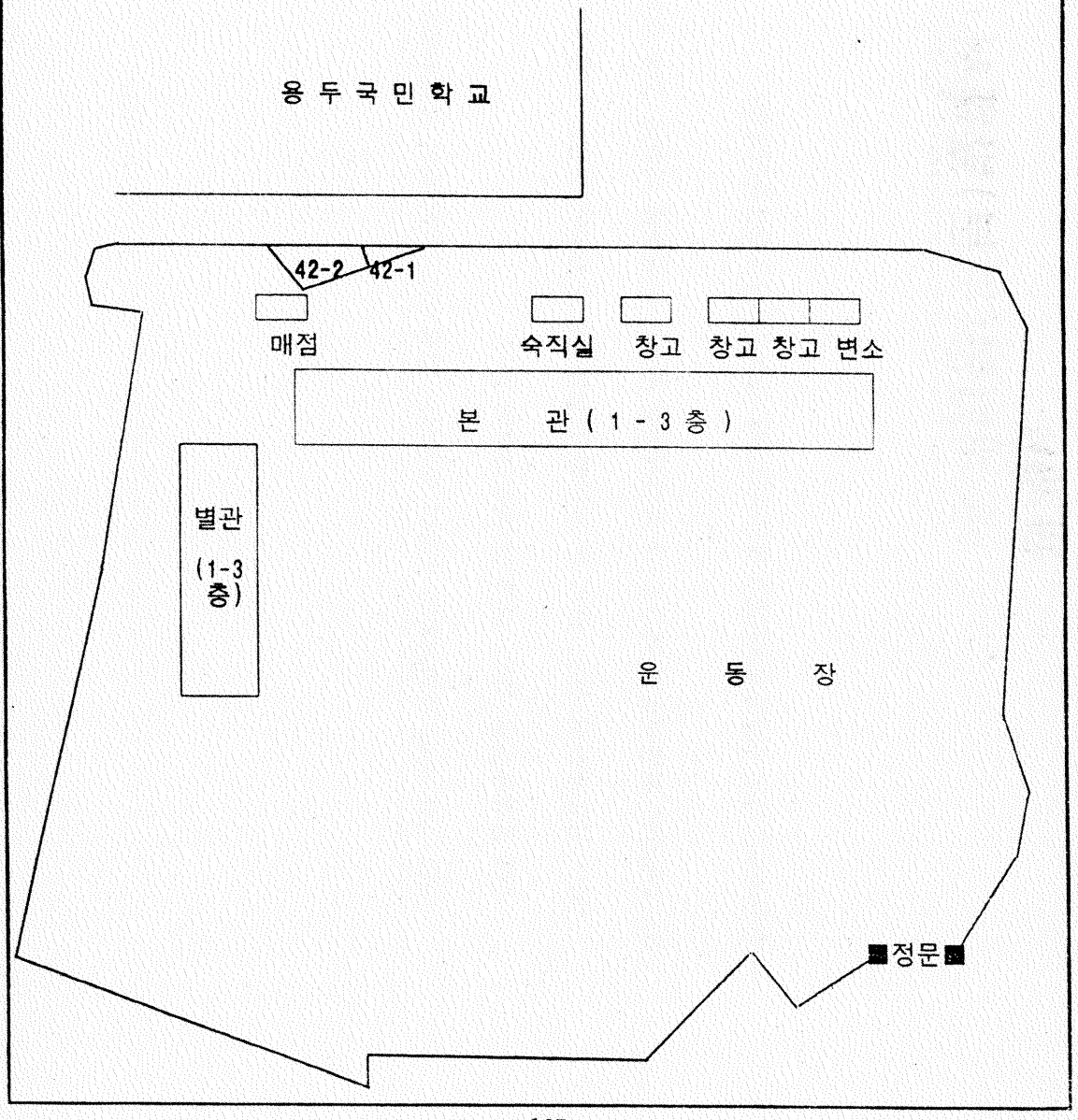

관계법령(부분)발췌서

o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별첨9)

의안번호	제 43-4 호
의 결	1994. 11. 29.
년 월 일	(제 43 회)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1994. 11. 17.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44-4

제출년월일 : 1994. 11. 1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편성한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국가부담수입 14억 5,008만 7천원, 전입금수입 2,000만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67억 9,410만 4천원, 주민부담수입 3,992만원 등, 총 △52억 8,409만 7천원의 세입재원으로,
- 본청 3억 7,557만 4천원, 지역교육청 △61억 6,039만 6천원, 예비비 5억 72만 5천원의 세출예산을 추가하여,
- 총 5,048억 5,267만 5천원의 규모로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94년도 충청북도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 예 산 안 : 별 책

□ 참고자료

- '9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 책